

월 · 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1

현안분석

-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
-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기획

-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경제적 영향 외

정책흐름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외
- 사회보험 적용 · 징수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위한 '회계참여'제 도입 시급하다 · 임향순

현안분석 06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 · 정재호
27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민희철

기획 45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68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경제적 영향 외

정책흐름 83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99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외
108 사회보험 적용 · 징수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

재정통계 113 OECD 국가의 총조세 세입 변동 추이

이런의견 저런생각 117 미시적 처방에 쏠린 부동산 대책 외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위한 '회계참여' 제 도입 시급하다



임 향 순
한국세무사회 회장

부실회계 또는 분식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한 예는 결코 적지 않다. 가깝게는 대우그룹이나 동아건설의 부실회계를, 그리고 멀리는 미국의 엔론 사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회계 분야의 최대 이슈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의미하는 '회계 투명성' 이었다.

오늘날 '회계'는 세무신고나 주주총회의 결산보고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의 인상을 위한 정책결정이나 근로자·기업 간의 임금교섭에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회계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사적 계산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이해관계를 갖는 수많은 경제주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이처럼 '회계'는 경영자에게는 경영성과의 분석·평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성과의 분석·평가와 투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 여부 또는 보존조치의 필요 여부 등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이바지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상법에서는 상인(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제표 등의 상업장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적 기업형태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필요기관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재무제표 등의 회계 관련서류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규정 아래에서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외형에 따른 신뢰 등을 이유로 회사라는 기업형태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법규상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어려워

그리고, 회사 가운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주식회사이고, 또한 그 가운데 대다수가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다. 결과적으로 상법의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인 셈이다.

현재 기업들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는 물론이고 감사 또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는 이사와 감사 모두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상법상 감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계에 무지한 사람도 감사로 선임될 수 있다.

동일한 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참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첫째,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고

둘째, 회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셋째,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능도 질적인 향상을 이루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작성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고, 게다가 비전문가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부실회계 또는 분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와 이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그리고 채권자 보호에 대한 치명적 결함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 법 자체에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물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는 까닭에 이러한 논의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가족형의 폐쇄적 특징을 가지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회계투명성 위한 사전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상법상의 회계감사는 경영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서류를 사후적으로 감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은 결함 때문에 사후적인 감사만으로는 감사의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 사실이고 보면, 바로 여기에서 재무제표 등의 회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그 정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전적·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성이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 관련 법제가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2005년에 상법에서 회사 부분을 따로 떼

내어 새롭게 '회사법'을 제정하면서 '회계참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식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에서 도입한 '회계참여'의 자격과 주요 직무를 보면 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② 회계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세무사·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이 제한되고 ③ 이사(또는 집행임원)와 공동으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함과 동시에 ④ 당해 재무제표 등을 이사와는 별도로 보존하고 ⑤ 주주 및 회사채권자에 대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의기관이다.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회사와 독립된 위치에 있는 제3자인 회계전문가가 이사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으며, 제3자인 회계전문가의 개입을 통하여 회계서류의 작성 시점부터 사전에 그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회사와 독립된 회계전문가 참여

또한, 회계참여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따른 노고의 경감과

함께,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신뢰성 높은 회계서류를 작성하면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고가 정확하게 공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조달을 좀 더 쉽고 유리하게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금리의 우대나 여신금액의 확대 또는 연대보증채무의 면제·경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여신제공에 있어서 최우선 조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지 등의 부동산담보였으나, 근래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토지 등 부동산담보 이외에도 변제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의 현금흐름(cash flow)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금융기관으로서는 여신기업의 정확한 재무제표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三井住友銀行이나 商工中金을 비롯한 많은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가 일본세무사회연합회가 공표한 ‘중소회사회계기준적용에 관한 체크 리스트’를 세무사가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리하게 융자를 해 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융자를 하거나 제3자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日 금융기관, 회계참여가 작성한 재무제표 첨부시 우대조치

게다가 中小企業金融公庫나 商工中金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은 앞으로 회계참여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준별하여 융자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이 없는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회계참여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 강조되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회계참여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확립이고, 회계처리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 컴플라이언스체계의 확립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회계참여제도는 컴플라이언스체계의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회계참여’ 도입 위한 상법 개정작업 서둘러야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의 적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주식회사 모두에 요구되는 사회적 요청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회계참여제도라고 생각하며, 시급히 그 도입에 관한 상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①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고, ② 회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③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능도 질적인 향상을 이루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만 회계참여제도는 도입에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의 규모나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를 원하는 기업에 한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회계참여는 정관에 그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들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KIF**

현안분석

-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 :
지역별 학급 및 교원당 학생 수 변화를 중심으로
정재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민희철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 : 지역별 학급 및 교원당 학생 수 변화를 중심으로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cheung@kjpf.re.kr)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인구학령의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가 지역별로
교육환경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특히 지식과 기술이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제 발전에 큰 몫을 하였다. 그러므로 교육재정을 담당하는 정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세부담이 상당히 높아 재정확대에 부담이 있고 또한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더욱더 관심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20년 내에 학령인구는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육재정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도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투자액은 증가하여 현재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과잉 투자로 낭비하지 않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학령인구의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가 지역별로 교육환경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정부에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당 학생 수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교육지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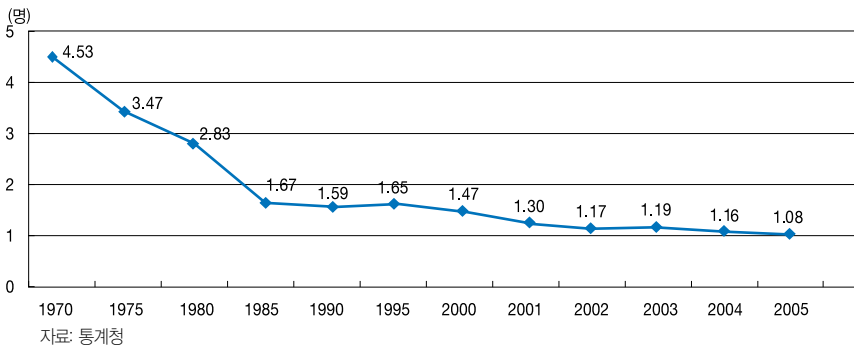
II.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별 교육환경 변화 추정

1. 인구변화 전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고, 또한 저하 속도가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르게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자녀수가 1970년 4.53명에서 1983년에는 대체출산력 수준인 2.08명으로 낮아졌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¹⁾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고, 또한 저하 속도가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르게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림 1] 합계출산율 추이



2005년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05년 4,829만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4,93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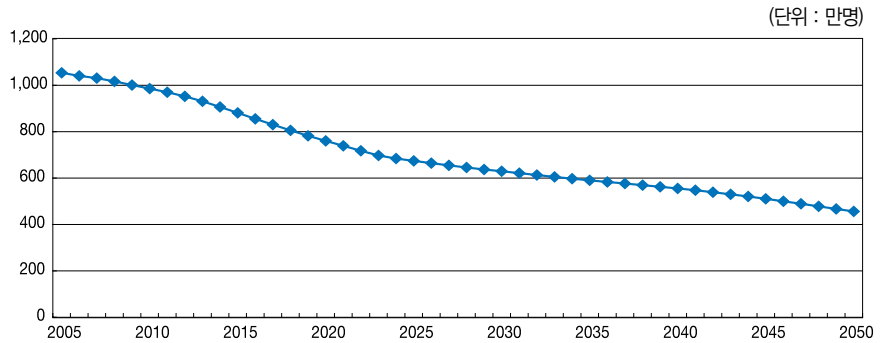
이러한 총인구의 변화는 6세부터 21세 사이의 학령인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2005년 현재 1,054만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년 뒤인 2025년에는 674만명으로 약 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43년에는 현재보다 학령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평균 자녀수를 의미하며, 대체출산력은 장기적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력 수준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별, 계층별로
 차이가 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하여도 그 한계
 효과는 크지 않고,
 과목별로 다르다.

[그림 2] 우리나라 학령인구(6~21세) 변화 추계



2.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가. 기존 연구

학급당 학생 수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양분되어 있다. Hanushek(2003) 등은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하여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쟁을 촉발시킨 Hanushek(1986)은 기존의 33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Krueger(2003) 등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학급당 학생 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별, 계층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Mosteller(1995), Krueger(1999), Piketty(2004)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보다는 유·초등학교에서 더욱 효과가 있으며,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에서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소수인종에게 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zear(2001)는 토지가격이 비싸 학교 신설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아도 효율성은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정 학급규모는 소득수준이 높아 토지가격이 비싼 곳에 사는(교육열이 높고 가정환경이 좋은) 고소득층보다 작아야 교육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하여도 그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크지 않고, 과목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Ferguson and Ladd(1996)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기준으로 학생 수가 28명 혹은 25명으로 감소하여도 별 영향이 없지만 19명으로 감소

할 때 그 효과가 있고 읽기보다는 수학에서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학급당 학생 수 축소만으로 학업성취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 등의 학습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Murnane and Levy(1995), Betts and Shkolnik(1999), Cohen et al(2002) 등은 교사들의 수업방식에 대한 변화 없이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소보다는 교사의 학습방법 개선에 교육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연구한 논문도 있다. 소위 Maimonides' Talmudic rule로서 Angrist and Lavy(1999)는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을 경우 새로운 학급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Hoxby(2000)에서는 25명, 그리고 Gary-Bobo and Mahjoub(2006)에서는 30명을 제시하고 있어 연구 결과간 편차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연구로는 장수명(2004)이 있으며, 위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장수명(2004)은 학급당 학생 수 축소의 효과는 인문계와 실업계, 지역과 과목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나. 학급당 학생 수 현황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 25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80년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51.5명, 중학교 65.5명, 그리고 고등학교 59.8명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런 과밀학급은 점차 해소되어 2005년 기준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1.8명, 중학교 35.3명, 그리고 고등학교 32.7명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이렇게 크게 감소한 데는 학급 수의 증가보다는 학생 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1980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약 566만명에서 2005년 약 402만명으로 164만명이나 감소한 반면 학급수는 11만개에서 12.6만개로 1.6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지난 25년간 학생 수가 46만명 감소하였지만 학급 수도 3.8만개에서 5.7만개로 1.9만개 증가하였고,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6만명이 증가하였고 학급 수도 2.6만개나 증가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 수 변화와 함께 학급 수 증가가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 25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과밀학급은 점차 해소되어 2005년 기준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1.8명, 중학교 35.3명, 그리고 고등학교 32.7명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경기의 학급당 학생 수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과 전북의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1〉 학생 수 및 학급 수 변천

(단위 : 만명, 만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80	2005	차이	1980	2005	차이	1980	2005	차이
학 생 수	566	402	-164	247	201	-46	170	176	+6
학 급 수	11	12.6	+1.6	3.8	5.7	+1.9	2.8	5.4	+2.6

자료: 『교육통계연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경기의 학급당 학생 수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과 전북의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으로 가장 적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에서는 경기와 인천의 학급당 학생 수가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의 학급당 학생 수가 29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남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경기의 학급당 학생 수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가장 적은 지역도 전남과 전북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29명이었다.

〈표 2〉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2005년)

(단위 :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33	35	34
부산	30	35	33
대구	34	37	34
인천	33	40	34
광주	35	38	34
대전	35	36	34
울산	33	38	35
경기	37	39	35
강원	26	32	30
충북	30	32	32
충남	27	31	30
전북	27	32	28
전남	24	29	28
경북	27	31	30
경남	30	35	31
제주	30	35	30
전국	31	35	32

자료: 『교육통계연보』

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로서는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나의 정책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보자.

정부에서 1997년 발표한 ‘한국교육비전 2020’에서는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목표를 초등학교 30명, 중·고등학교 35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목표치는 2005년에 이미 달성된 것으로 당시에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예상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현재 정부에서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0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으로 축소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전2030’에서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10년 30명, 2020년 27명, 그리고 2030년 23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이론적 학급당 학생 수에서 제시한 수치 중에는 30명과 25명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서 OECD 평균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OECD(2006)에 의하면 2004년 OECD 평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약 22명이고, 중·고등학교 평균은 약 24명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는 약 12명, 중·고등학교는 약 11명 적다.

OECD 회원국 중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15.7명이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스위스가 18.7명으로 가장 적었다.

정부에서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0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으로 축소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전2030’에서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10년 30명, 2020년 27명, 그리고 2030년 23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3〉 주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

(단위 : 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프랑스	22.6	24.1
독일	21.1	24.7
미국	24.3	21.0
영국	23.1	24.3
일본	28.6	33.8
한국	33.6	35.5
주요국 평균(한국제외)	24.5	25.6
OECD 전체 평균	21.4	24.1

주 : 주요국 평균은 한국을 제외하고 표에서 제시한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일본의 단순평균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OECD(2005)에 있는 수치이다.
 자료 : OECD(200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30명은 초중고 전체 평균으로 현재 학급 수를 유지할 경우 2010년이면 달성될 수 있어 학급 수의 추가적인 증가 없이 인구 감소만으로도 달성 될 수 있는 목표이다.

라. 학급당 학생 수 변화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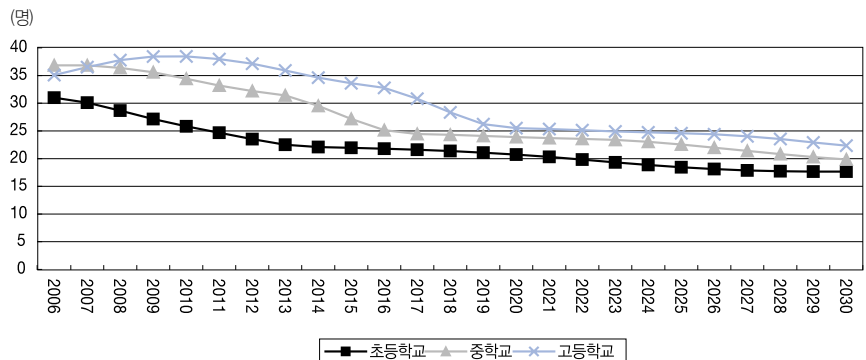
현재의 학급 수를 향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향후 인구변화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자²⁾. 우선 전국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5년 32명에서 2030년에는 18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과 ‘비전2030’ 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30명은 2007년이면 달성될 수 있고 2008년에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그리고 7~8년 후인 2013년에는 현재 OECD 평균인 22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비전2030’ 에서 제시하는 2030년 23명도 그 이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학급 수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인구감소로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이 빠르게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0년에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 되고, 학급당 학생 수 30명은 2013년에, 그리고 약 10년 후면 현재 OECD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중학교와 달리 조금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결과 학급당 학생 수도 2011년 38명을 정점으로 2030년에는 22명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 30명은 2017년에 도달하여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30명은 초중고 전체 평균으로 현재 학급 수를 유지할 경우 2010년이면 달성될 수 있어 학급 수의 추가적인 증가 없이 인구 감소만으로도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다.

[그림 3] 인구변화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 변화 추이



2) 본 분석에서는 2005년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 추계 결과를 이용하였다.

1) 지역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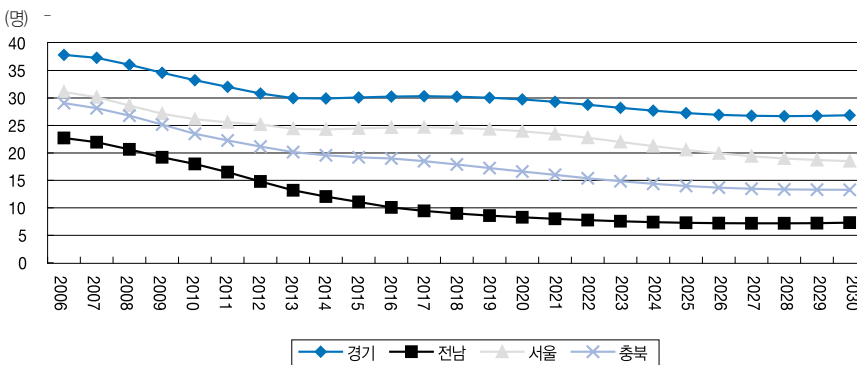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05년 기준 37명에서 2013년까지 30명으로 감소한 후 정체되다가 다시 감소하여 2030년 27명으로 추정된다. 2030년 학급당 학생 수 27명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전2030'에서 제시한 23명을 넘는 지역이며,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전남의 24명보다도 더 많다. 전남은 2024년에 학급당 학생 수가 7명으로 감소한 후 203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두 지역 간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학급 수에 대해 상반된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 대전, 광주 등은 학생 수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혹은 잠시 주춤하다가 감소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 수 감소 속도가 느렸다. 특히, 대전의 2030년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으로 경기 다음으로 많다. 반면, 충북, 경남, 제주 등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정도로 5~6년 안에 '비전2030'에서 제시하는 23명에 도달하여 2030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약 14~15명일 것으로 예측된다.

강원, 전북, 경북, 충남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5년 약 26~27명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강원, 전북, 경북은 2030년 약 10~11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충남은 감소 속도가 늦어 2030년 17명으로 이들 지역보다 약 6~7명 정도 더 많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05년 기준 37명에서 2030년 27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전남의 24명보다도 더 많다.

[그림 4]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 경기, 전남, 서울, 충북



2) 지역별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처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05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은 인천(40명), 경기(39명), 광주와 울산(38명) 등이다.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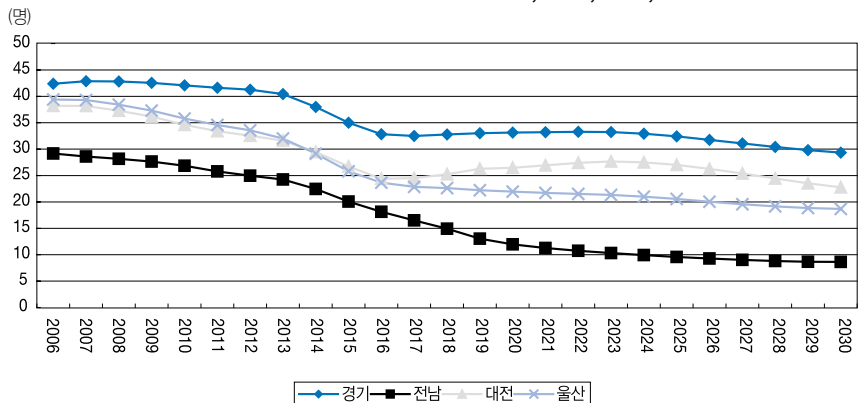
고등학교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9년까지 약간 증가하거나 혹은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감소한 후 큰 변화가 없이 2030년 학급당 학생 수가 29명으로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 20명보다 9명이나 많다. 따라서 경기도는 2030년 가까이 이르러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 도달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4명에는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유사한 수준에서 출발한 인천, 광주, 울산은 2030년의 학급당 학생 수가 19~21명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하다. 현재 OECD 평균인 24명에 도달하는 시기는 대전 2028년, 광주, 2026년, 서울 2025년, 인천 2021년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전남의 경우 2005년 학급당 학생 수가 29명으로 경기도의 2030년 학급당 학생 수와 동일하다. 전남의 학급당 학생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빠르게 감소하여 2015년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으로 전망되고, 2030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9명까지 감소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3분의 1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강원, 전북, 경북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5년 30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출발하여 2030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북 11명, 경북 12명, 강원 1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이 안 되는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5]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 경기, 전남, 대전, 울산



3) 지역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고등학교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9년까지 약간 증가하거나 혹은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는 2020년 이후 다시 약간 증가하다가 혹은 감소세가 주춤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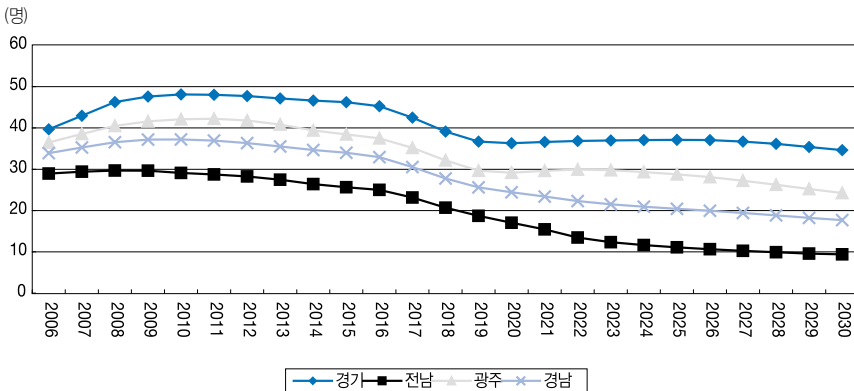
경기는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분된다. 특히 2030년 학급당 학생 수가 2005년의 35

명과 동일하여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인구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제시한 기준 혹은 현재 OECD 평균 등을 향후에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2030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미만으로, 대전(26명), 광주(24명), 서울(23명), 인천(22명), 울산(21명), 부산(20명) 등 대도시 지역이 거의 대부분 20명을 상회했다.

반면,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은 증가추세 없이 2012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남과 전북은 2005년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으로 가장 적는데, 감소 속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빨라 2030년 학급당 학생 수가 전남은 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경기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전북 11명, 경북 13명, 강원 15명 등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 22명보다 월등히 적었다.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난 25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05년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5.1명, 중학교 19.4명, 그리고 고등학교 15.1명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그림 6]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 경기, 전남, 광주, 경남



3. 교원당 학생 수 감소

가.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난 25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80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47.5명, 중학교 45.1명, 고등학교 33.3명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2005년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5.1명, 중학교 19.4명, 그리고 고등학교 15.1명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교원당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데는 학생 수 감소와 함께 교원 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 25년간 164만명 감소하였지만, 이와 함께 교원 수도 4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중학교 학생 수는 46만명 감소하였지만 교원 수는 거의 5만명



광주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는데 비해 전남은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6만명이 증가하였고 교원 수는 이보다 많은 6.5만명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원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생 감소도 영향을 미쳤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교원 수 증가가 교원당 학생 수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학생수 및 교원 수 변화

(단위 : 만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80	2005	차이	1980	2005	차이	1980	2005	차이
학생 수	566	402	-164	247	201	-46	170	176	+6
학급 수	11.9	16.0	+4.1	5.5	10.4	+4.9	5.1	11.6	+6.5

자료: 『교육통계연보』

초등학교의 교원당 학생 수를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경기와 광주의 교원당 학생 수가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남의 교원당 학생 수는 19명으로 가장 적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인천, 광주, 울산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3명으로 가장 적었다. 초·중학교에서 지역별 교원당 학생 수 차이는 10명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 지역의 교원당 학생 수는 16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14~16명 수준이었다. 다만 강원과 전남이 12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 광주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는데 비해 전남은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5〉 지역별 교원당 학생 수(2005년)

(단위 :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27	20	16
부산	24	19	15
대구	27	21	16
인천	26	23	16
광주	29	23	16
대전	27	21	16
울산	27	23	16
경기	29	22	16
강원	21	16	12
충북	23	17	15
충남	27	31	30
전북	21	16	13
전남	19	13	12
경북	21	16	14
경남	24	19	14
제주	24	19	14
전국	24	19	15

자료: 『교육통계연보』

‘비전2030’에서는 초등학교 교원당 학생 수만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치로 2010년 약 18명, 2020년 약 15명, 그리고 2030년 약 14명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교원당 학생 수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찾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할 경우 자연스럽게 교원당 학생 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연구하기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class size)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특정 기준에 비추어 어떠한 상황인지를 살펴보기가 어렵다.

정부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교원당 학생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97년에 발표한 ‘한국교육비전 2020’에서는 2020년 교원당 학생 수 목표를 초등학교 20명, 중·고등학교 18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이미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비전2030’에서는 초등학교 교원당 학생 수만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치로 2010년 약 18명, 2020년 약 15명, 그리고 2030년 약 14명을 제시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보자.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 중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OECD(2006)에 의하면 2004년 기준 OECD 평균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6.9명으로 우리나라의 29.1명과 약 12명 정도 차이가 있다. OECD 국가들 중 영국, 일본, 프랑스의 교원당 학생 수가 약 20명 정도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보다 적은 15명이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은 13.3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7.9명으로 약 4명 정도의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에 비해 그 차이가 작았다. 미국의 교원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유사하게 15.5명으로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았다. 독일, 영국, 일본이 14~15명 수준이고, 프랑스가 12.1명으로 적었다.

〈표 6〉 주요 OECD 회원국들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분포

(단위: 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프랑스	19.4	12.1
독 일	18.8	15.1
영 국	21.1	14.4
미 국	15.0	15.5
일 본	19.6	14.1
한 국	29.1	17.9
주요국 평균(한국제외)	18.8	14.3
OECD 전체 평균	16.9	13.3

주: 주요국 평균은 한국을 제외하고 표에서 제시한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일본의 단순평균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OECD(2005)에 있는 수치이다.
자료: OECD(2006).

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계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향후 인구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의 지역별 교원 수를 향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가장 아래 분석하였다.

우선 전국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교원당 학생 수는 2005년 24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30년에는 14명으로 예측되었다. 2010년 교원당 학생 수는 20명으로 '한국교육 비전 2020'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교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향후 4~5년 안에 영국, 프랑스,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8년 이후에는 현재 OECD 평균 수준이 되며,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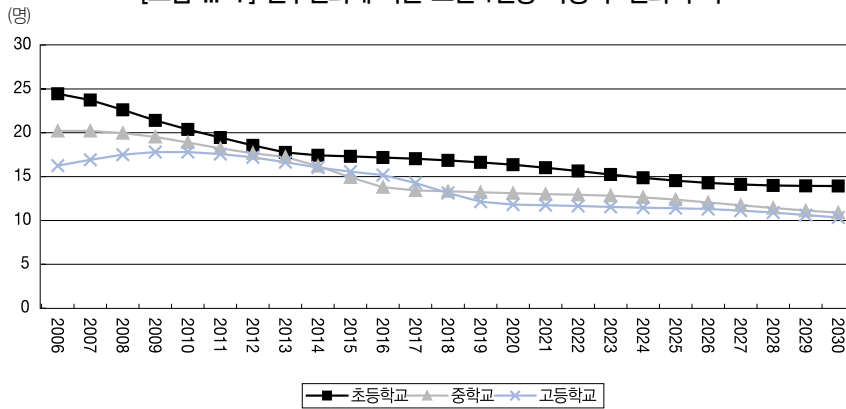
년에는 '비전2030'에서 제시하는 14명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교원당 학생 수에 대한 정책목표에 따라 몇 년 안에 교원 수 조정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의 교원당 학생 수는 2009년까지 유지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교원당 학생 수가 11명으로 예측되었다. 고등학교의 교원당 학생 수는 향후 4~5년간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2030년에는 10명으로 예측되었다. 즉, 현재 교원당 학생 수는 15명으로 OECD 평균인 13.3명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향후 4~5년 동안에는 그 차이가 벌어져 2011년 18명으로 정점을 이루다 2017년에 약 13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인구변화로 인해 향후 10년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현재 OECD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는 현재도 교원당 학생 수가 가장 많지만 2030년에도 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기, 서울, 대전, 부산 등은 한 동안 학생 수 감소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림 III-7] 인구변화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



1) 지역별 초등학교 교원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는 현재도 교원당 학생 수가 가장 많지만 2030년에도 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기, 서울, 대전, 부산 등은 한 동안 학생 수 감소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기, 대전, 광주, 서울은 2030년에도 교원당 학생 수가 15명을 넘는 지역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2030년에도 교원당 학생 수가 15명선을 넘어 '비전2030'에서 제시한 목표치 14명을 약간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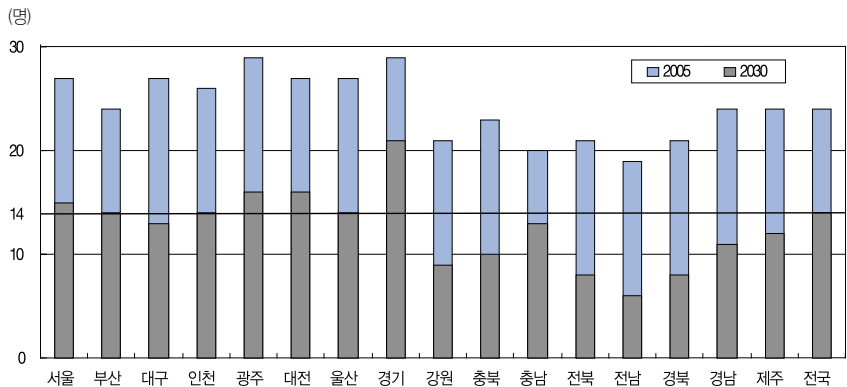
2030년 이후 교원당 학생 수가 10~15명인 지역은 부산을 비롯해서 대구, 인천, 울산, 충남, 충북, 경남, 제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교원당 학생 수의 변화 속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교원당 학생 수가 10명 미만으로 낮아지는 지역은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으로 예측되었다. 이들 지역은 현재도 교원당 학생 수가 20여명으로



중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약간 정체하다가 감소하는 유형을 보인다. 2005년 기준 교원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광주, 울산이고 그다음 경기도이다.

영국,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고 향후 5년 정도에 15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 지역은 '비전2030'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한다. 특히, 전남은 2030년 교원당 학생 수가 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교원당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2030년 경기의 교원당 학생 수가 21명으로 이들 지역보다 3~4배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적인 교원 수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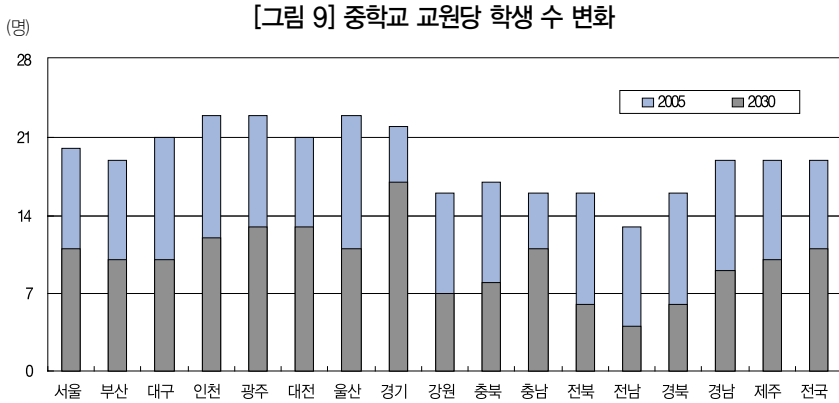
[그림 8] 초등학교 교원당 학생 수 변화



2) 지역별 중학교 교원당 학생 수

중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약간 정체하다가 감소하는 유형을 보인다. 2005년 기준 교원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광주, 울산이고 그 다음 경기도이다. 그러나 교원당 학생 수의 감소 속도는 경기도가 가장 느려 2030년 교원당 학생 수가 17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감소로도 OECD 평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지역이다. 울산은 감소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 2030년 교원당 학생 수가 11명으로 2005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다.

광주, 대전, 인천, 서울, 부산, 그리고 충남, 제주 등이 2030년 이후의 교원당 학생 수가 10~15명 사이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 반면,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충북 등은 2030년 이후 10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교원 정책은 경기 등과는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남의 교원당 학생 수는 2005년 13명에서 2030년에 4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전남의 교원당 학생 수는 현재 OECD 평균보다 낮고 향후에도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원 수급 정책에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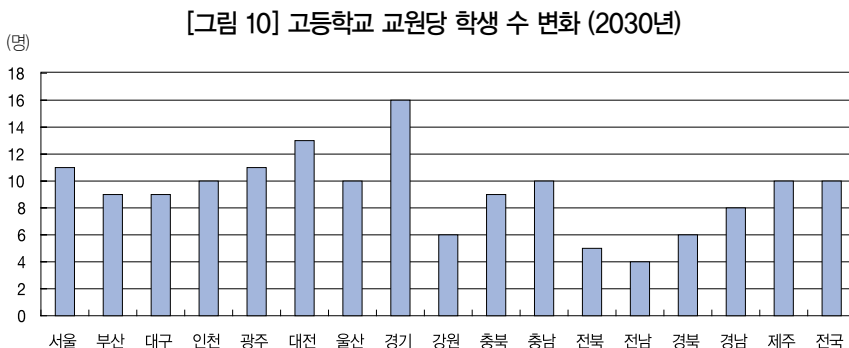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향후 4~5년간 증가하게 되어 초등학교와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경기는 2008년부터 교원당 학생 수가 22명으로 증가한 후 한동안 유지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분된다.

3) 지역별 고등학교 교원당 학생 수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향후 4~5년간 증가하게 되어 초등학교와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경기는 2008년부터 교원당 학생 수가 22명으로 증가한 후 한동안 유지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분된다. 특히, 2030년의 교원당 학생 수 16명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구감소만으로도 현재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기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교원이 계속해서 충당되어야만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어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반면, 2030년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으로는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충북 등을 들 수 있다. 인천, 울산, 충남, 제주 등이 1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전남 4명, 전북 5명, 강원과 경북 6명 등으로 현재 수준의 3분의 1로 감소하여 이들 지역의 교원 정책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지역은 향후 몇 년간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교원당 학생 수의 증가추세 없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 물리적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과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학생 수 감소로 특별한 교육투자의 증액 없이 물리적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교육재정의 투입은 과잉투자로 흐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III. 결론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를 연구한 기존 연구로는 한국개발연구원(2005)과 박종렬 외(2004)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학령인구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를 추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지역별 구분을 통해 지역별 차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지역별 차이를 교육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시설과 교원수급에 연계시켜 논의하였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그 성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학급당 학생 수는 60명을 넘었지만, 2006년에는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32명으로 감소하였다.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하기 위해 근래에도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시키기 위해 총 12조 2,797억원을³⁾ 책정하였다. 실질적으로 2004년에 보고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중간평가'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11조 5,264억원을 투입하여 1,130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14,679개의 학급을 증설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학급당 학생 수는 2001년 36.9명에서 2004년 33.3명으로 3.6명 감소되었다. 즉, 단순히 학급당 학생 수를 1명 감소시키기 위해 약 3.2조원의 재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0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으로 축소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30명은 초중고 전체 평균으로 현재 학급 수를 유지할 경우에도 2010년이면 달성될 수 있어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인구 감소만으로도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다. 앞서 단순히 계산한 3.2조원을 이용한다면 대충 10조원이 필요한 목표치이다.

물론 아직 물리적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과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학생 수 감소로 특별한 교육투자의 증액 없이 물리적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교육재정의 투입은 과잉투자로 흐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기존 연구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재정투자는 향후에도 필요하다. 인구 감소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경기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30년에

3) 세부적으로 학교신설 9조 9,200억원, 고교 추가신설 1조 6,350억원, 교실 증축 7,247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즉, 학교 하나를 신설하는 데 90억원(고교는 150억원), 교실 하나를 증축하는 데 5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도 초등학교 27명, 중학교 29명, 고등학교 35명으로 다른 지역과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대전, 서울, 광주 등도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감소 속도가 느려 이에 맞는 시설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여 특정 지역의 높은 토지매입비까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부담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⁴⁾도 있고, 높은 토지매입비용 등으로 이들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⁵⁾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면, 전남을 비롯해서 강원, 전북, 경북 등은 인구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30년 전남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7명, 중학교 9명, 고등학교 9명으로 2005년에 비해 약 3분의 1 정도 감소된다. 경기와는 약 20명의 차이를 보인다.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도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⁶⁾ 초등학교의 경우 적절한 학급당 학생 수는 20~25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학교간 통폐합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통폐합을 통해 학교 수를 줄일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결합한다든지 혹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는 수직적인 통폐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구감소를 이유로 일정지역에서 학교를 폐쇄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교원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 변화에 의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교원을 양성하여 충원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교원 양성체제는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중등교원은 사범대학 졸업자와 교직과정 이수자 등으로 양성되어 충원되는 반면, 초등교원은 국립대학인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양성된다⁷⁾. 여기서는 국가재정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초등교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은 교육대학, 교원대학⁸⁾, 사립대학 초등교육전공 등 다원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대학 졸업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초등교원의 83%가 교육대학 출신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대학은 지역별로 안분되어 전국적으로 11개 교육대학이 있다⁹⁾.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기준 총 6,015명으로 1990년의 3,220명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현재의 교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향후 4~5년 안에 영국, 프랑스,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8년 이후에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낮아져 '비전2030'에서 제시한 목표치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목표치를 감안한 장기적인 초등교원의 수급 계획 마련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교원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 변화에 의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교원을 양성하여 충원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4) 장수명(2004)에서는 서울의 학교 신설비 중 50~60%가 토지 매입비라고 밝히고 있다. 장수명(2004), 「학교용지 확보 및 용지비용 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육』

5) Lazear(2001)

6) Jackson(1990)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이하의 과소 학급은 학생들간 인성 교류 및 건전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화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7) 현재의 교원 양성정책에 대해 초등과 중등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양성 수준을 학부 혹은 대학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논쟁이 활발하지만, 이는 본고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다.

8) 한국교원대학교는 유치원, 초등, 중등 교사를 모두 양성하고,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된다.

9)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11개 교육대학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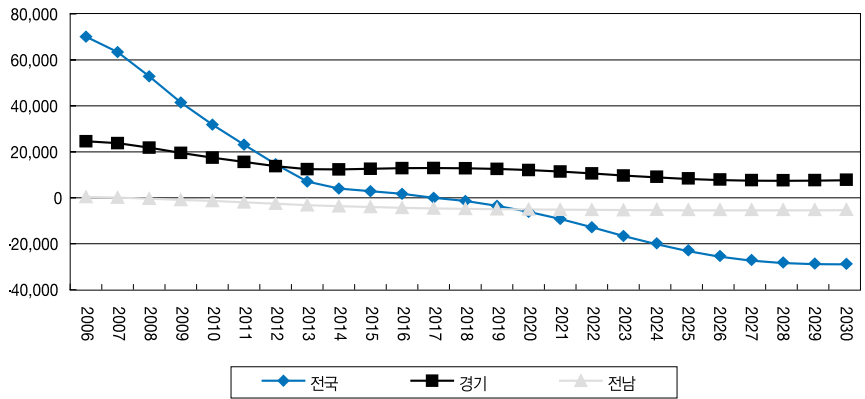


출산을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규모의 확대 없이도 학생 1인당 투자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재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자본지출에 대한 과잉투자로 낭비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지출이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급하다.

다음 그림은 현재 OECD 평균 수준인 17명을 달성하기 위해 부족한 교원 수 추이를 나타낸다¹⁰⁾. 예를 들어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 2009년에는 현재보다 4만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하지만 2014년에는 4천여명만이 필요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OECD 평균을 달성하기 위한 교원 수는 전국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그림 11] 현재 OECD 평균 교원당 학생 수 기준 부족 교원 수 추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 광주의 교원당 학생 수는 2030년 16명으로 예측되는 반면 전남은 6명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일 지역 내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의 교원당 학생 수는 2030년에도 '비전2030'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원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은 교원당 학생 수가 10명 미만이 되기 때문에 교원의 감축 등 지역별 조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투자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를 보조하는 행정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무직원에게 대한 투자는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지난 25년간 교사는 4만 9천명 증가한 데 비해 사무직원은 오히려 1천명이 감소하였다. 도서관 사서, 학생 상담전문가, 영양사, 사무보조원 등 비교육 전문인력과 보조원층원은 학생들에게 교육적·비교육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습방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산을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규모의 확대 없이도 학생 1인당 투자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자본지출에 대한 과잉투자로 낭비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지출이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KIPF

10) 교원당 학생 수 17명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교원 수에서 현재(2005년)의 교원 수를 차감한 인원 수로 매년 증원해야 하는 교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 김영철 외, 『한국교육 비전 2020』, 연구보고 RR 97-7, 한국교육개발원, 1997.
- 박종렬 외,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육체제 전망과 과제』, 현안연구 OR 2004-9,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4.
- 장수명 외, 『고등교육 재정지원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2004-62, 한국교육개발원, 2004.
-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비전2030 - 함께 가는 희망 한국』, 2006.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Ⅱ)』, 한국개발연구원, 2005.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Angrist, J. and V. Lavy, “Using Maimonides Rule to Estimate the Effect of Class Size on Scholastic Achieve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4, No.2, 1999, pp. 533~75.
- Betts J, and Shkolnik, J., “The Behavioral Effects of Variations in Class Size: The Case of Math Teacher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Vol. 21, No. 2, 1999, pp. 193~213.
- Ferguson, R. and Ladd, H., “How and Why Money Matters: Analysis of Alabama Schools,” *Holding Schools Accountable*,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6, pp. 265~298.
- Gary-Bobo, R. and M. Mahjoub, “Estimation of Class-Size Effects, Using ‘Maimonides’ Rule; The Case of French Junior High Schools,” CEPR Discussion Paper, No. 5754, 2006.
- Hanushek, Eric., “The Failure of Input-Based Schooling Policy,” *Economic Journal*, Vol. 113, 2003, pp. F64~F98.
- Hanushek, Eric., “The Economic of Schooling: Production and Efficiency in Public School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4, No. 3, 1986, pp. 1141~1177.
- Hoxby, C., “The Effects of Class Size on Student Achievement ; New Evidence



- from Population Vari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5, 2000, pp. 1239~1285.
- Krueger, Alan, “Experimental Estimates of Education Production Functi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4, No.2, 1999, pp. 497~532.
- Krueger, Alan, “Economic Considerations and Class Size,” *Economic Journal*, Vol. 113, 2003, pp. F34~F63.
- Lazear, Edward, “Educational Produc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6, No.3, 2001, pp. 777~803.
- Mosteller, F., “The Tennessee Study of Class Size in the Early School Grades,” *Future of Children*, Vol. 5, No. 2, 1995, pp. 113~127.
- Piketty, T. “Should We Reduce Class Size or School Segregation? Theory and Evidence from France,” PSE Jourdan, ENS, Paris, France, 2004.
-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민희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min@kjpf.re.kr)

I. 도입

이 연구는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기혼여성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 이후 첫 출산에 이르는 간격 및 첫 출산에서 두 번째 출산에 이르는 간격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출산의 지연으로 인한 출산활동의 위축은 여성이 일생에 걸쳐 출산하는 총 자녀 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변동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¹⁾ 인구학자들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양(quantum)효과와 속도(tempo)효과로 나누고, 출산의 지연, 즉 속도효과로 인해 기간출산율인 합계출산율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Bongaarts and Feeney 1998).

최근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출산율의 하락 중 단순히 출산의 지연으로 인한 효과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왜냐하면 출산 지연효과의 정도가 합계출산율 하락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을 잠시 미루는 것일 뿐 일생에 걸쳐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출산지연으로 인한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단기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의 출산율 동향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현재 유럽 각국의 합계출산율이 속도(tempo)효과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으므로, 미래에 약간이나마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obotka 2004).

1) "처음 출산을 변동의 70%는 코호트 출산율의 양의 변동에 의한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출산시기와 같은 속도의 변화에 따라 출산율이 변동한다. 미국의 경우 가경 여성 1인당 자녀의 수에 변화가 없었다 할지라도 출산시기가 빨라짐으로써 높은 출산율의 시기인 베이비붐 시대를 수박에 없었고, 자녀의 수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출산시기가 늦어지면서 베이비붐 이후에 출산력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명백한 사실은 몇 명을 출산했느냐보다, 언제 출산이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시기 이래 기간출산율의 변동을 이끌어 온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코호트 출산율의 속도의 변화인데, 속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요인은 첫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의 변화이다"(Ryder 1980; 은기수(200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2003년도 출산력 자료를 사용하여, 첫 출산 및 두 번째 출산 간격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Heckman and Walker(1990)를 따라서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을 결정하는 모형을 동시에 추정하였으며, 또한 일정비율의 부인들은 출산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하는 모형을 고려하였다.

우리나라의 출산간격에 관한 최근 연구로서는 은기수(2001)와 이삼식 외(2005)가 있다. 은기수(2001)는 1997년도 출산력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연령 및 결혼연도가 결혼부터 첫 출산에 이르는 간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결혼연령에 따른 첫 출산간격의 차이는 미미하나, 최근 결혼코호트일수록 첫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삼식 외(2005)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사용하여 출산 및 결혼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였다. 은기수(2001)가 결혼부터 첫 출산에 이르는 간격만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첫 출산으로부터 두 번째 출산,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출산까지의 간격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는 다수의 미혼 여성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혼으로부터 결혼으로의 이행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출산간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 전 취업경험, 자연유산경험 등의 변수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은기수(2001) 및 이삼식 외(2005) 두 연구는 모두 출산간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집중하였으나, 여성 임금 또는 남편의 소득 등 경제적 변수의 역할을 분석하지 못하여서, 이들 변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도 출산력 자료를 사용하여, 첫 출산 및 두 번째 출산 간격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Heckman and Walker(1990)를 따라서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을 결정하는 모형을 동시에 추정하였으며, 또한 일정비율의 부인들은 출산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하는 모형을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한 모형 및 출산중단 확률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특히 매월노동통계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도별, 학력별, 연령별 총급여액 및 임금자료를 활용하여 임금 및 소득변수가 출산의 지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출산력 자료에서는 과거 소득 및 취업활동에 대한 미시자료가 제대로 수집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변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Heckman and Walker(1990)는 스웨덴 여성의 출산간격을 연구하면서 연도별-성별 급여 및 임금의 집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미시자료 대신 집계변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금 및 급여액 자료는 학력별로 구분된 자료로서 단순히 연도별 자료를 사용한 것에 비하여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장래소득 및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데 교육수준이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같은 임금 및 급여액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 경제주체 간의 이질성은 학력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간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듀레이션(duration)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혼 후 첫 출산에 이르는 기간을 T_1 , 첫 출산 후 두 번째 출산에 이르는 기간을 T_2 라고 할 때, 듀레이션 모형에서는 T_1 과 T_2 를 각각 특정한 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외 출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결혼 이후에야 출산의 가능성(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다른 외적 변수(covariates)들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Z 에 대한 T_1 , T_2 의 조건부 분포를 고려하게 된다. 또한 듀레이션의 분포는 확률밀도함수나 누적분포함수로 먼저 설정하기보다 위험함수(hazard function)로 먼저 정의한 후, 이로부터 확률밀도함수나 누적분포함수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적 변수 Z 에 대한 듀레이션 T 의 조건부 분포가 와이블(Weibull)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위험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h_j(t|Z_j) = \exp(\delta_j + \gamma_j \cdot \ln(t) + Z_j \beta_j), \quad j=1 \text{ 또는 } 2 \quad (1)$$

여기서 γ 는 이른바 듀레이션 의존성(duration dependence)을 나타내는 계수, 즉 위험함수가 듀레이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파라미터이다. 출산간격을 분석하는 맥락에서는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반대로 낮아지는지를 나타낸다. γ 가 양수일 경우 양(+)의 듀레이션 의존성 나타낸다고 말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음(-)의 듀레이션 의존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γ 이 0일 경우 위험함수는 듀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며, 이 경우 듀레이션의 분포는 와이블 함수의 특수한 경우인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가 됨을 보일 수 있다. 위험함수를 설정한 후에는 확률밀도함수, 누적분포함수 및 생존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최우추정법으로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외 출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결혼 이후에야 출산의 가능성(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II.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200개 조사지역의 가구특성 및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임신 및 출산 행태, 피임 행태, 인공임신중절, 가족 및 자녀가치관 등을 다루고 있다. 2003년 조사 자료에는 모두 7,308명의 기혼부인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1960년 이후에 태어나서 1979년 이후에 결혼한 총 4,295명의 여성들에 대한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1979년 이후 결혼한 여



출산경험이 없는 경우 첫 출산
간격이 조사시점에서 오른쪽으로
절단된 형태를 갖는다.
절단된 기간의 평균값은
2.981년이고 표준편차는
3.838년이다.

성만 포함한 것은 매월노동통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력별, 연령별, 성별 임금자료가 1979년부터 제공되기 때문이다.²⁾

우선 <표 1>을 통해 출산간격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본다. 특기할 것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첫 번째 자녀의 출생년월과 마지막 자녀의 출생년월만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 첫 출산까지의 간격은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출산간격은 경우에 따라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조사시점까지 두 번 출산한 여성의 경우에는 마지막 출산과 첫 출산의 간격이 곧 두 번째 출산간격을 의미하지만, 조사시점까지 출산 경험이 3번 이상인 경우, 마지막 출산과 첫 출산의 간격은 두 번째 출산 간격보다 훨씬 큰 값을 갖게 된다.

<표 1>에서는 조사시점 현재까지 출산횟수에 따라 관찰값을 네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정의되는 출산간격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출산경험이 없는 경우 첫 출산 간격이 조사시점에서 오른쪽으로 절단된(right censored) 형태를 갖는다. 모두 352개의 관찰값이 있으며, 절단된 기간의 평균값은 2.981년이고 표준편차는 3.838년이다. 1회 출산 부인에 대해서는 첫 출산이 이미 이루어져, 첫 출산 간격이 절단되지 않고 잘 정의되었으나, 두 번째 출산간격은 오른쪽으로 절단된 형태를 갖는다. 첫 출산 간격의 평균은 1.835년으로 출산횟수 2회 이상 여성에 비해 첫 출산간격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관찰값 2,557개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2회 출산 부인에 대해서는 마지막 출산이 곧 두 번째 출산을 의미하므로 첫 출산간격 및 두 번째 출산간격 모두 절단되지 않고 관찰되었다. 첫 출산간격의 평균은 1.197년, 두 번째 출산간격은 2.897년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회 이상 출산한 여성은 모두 541명이 포함되었다. 첫 출산간격은 평균 1.091년으로 2회 출산 여성의 1.197년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1회 출산 여성의 1.835년에 비해서는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출산간격에 대한 기초통계량

조사시점 현재까지 출산횟수	결혼~첫 출산 간격	첫 출산~마지막 출산 간격	오른쪽 절단 (right censored)		관찰값의 수
			결혼~조사시점 간격	첫 출산~조사시점 간격	
0	-	-	2,981 (3,838)	-	352
1	1.835 (1,830)	-	-	5,435 (5,047)	845
2	1.197 (0,821)	2,897 (1,589)	-	-	2,557
3+	1,091 (0,720)	6,664 (2,932)	-	-	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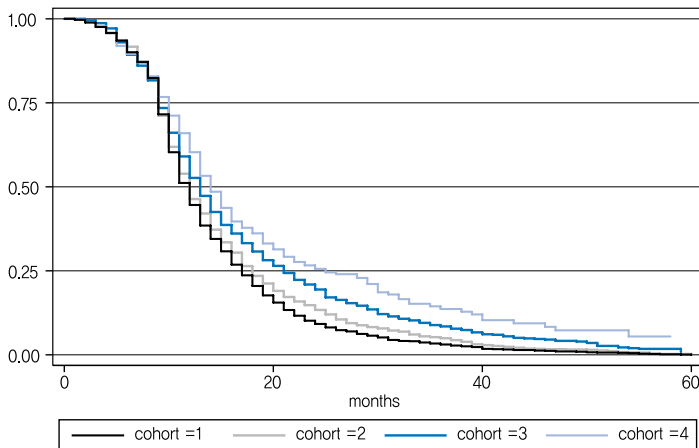
2) 1960년 이후 출생이나 1979년 이전에 결혼하였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된 여성은 모두 17명 있었다. 여기에는 1960년 출생-1977년 결혼 여성 3명, 1960년 출생-1978년 결혼 여성 8명, 1961년 출생-1977년 결혼 2명, 1961년 출생-1978년 결혼 3명, 1962년 출생-1977년 결혼 1명이 포함되었다. 이들 여성에 대해 1979년 임금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에 포함하여 추정하는 경우도 결과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예측할 수 있듯이, 출산간격은 세대별 또는 출생코호트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1]은 아래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첫 출산간격에 대한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생존함수를 출생코호트별로 추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코호트1은 1960년~1964년생, 코호트2는 1965년~1969년생, 코호트3은 1970년~1974년생, 코호트4는 1975년~1979년생, 코호트5는 1980년~1985년생을 나타낸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생존함수가 바깥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코호트별로 75%의 여성이 첫 출산을 끝내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코호트1의 경우 약 17개월 정도이지만, 코호트4의 경우 26개월 정도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같은 내용을 위험함수의 형태로 보여준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위험함수가 아래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세대에게 출산지연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 코호트별 위험함수의 모양은 대체로 20개월까지는 위험률(hazard rate)이 증가한 후 감소하여 40개월 부근에서 최저에 이르렀다가, 55개월 부근에 최고점을 이루고 다시 감소하는 모양을 보인다. 대체로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위험률이 증가하는 형태이나, 단조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위험함수가 아래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세대에게 출산지연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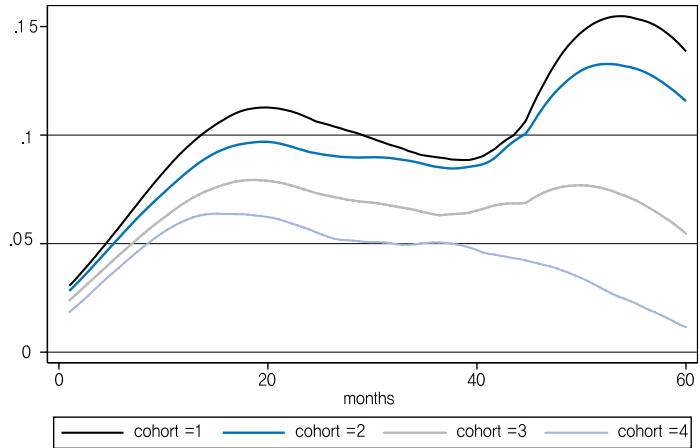
[그림 1] 결혼 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Kaplan-Meier Survival Function)





출산간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제 변수로는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남편의 수입을 들 수 있다.

[그림 2] 결혼 후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함수 (Kaplan-Meier Hazard Function)



출산간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제 변수로는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남편의 수입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출산력 자료에서는 과거 소득 및 취업활동에 대한 미시자료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자료 대신 매월노동통계 자료의 연령별, 학력별, 연도별 남성 월급여총액과 연령별, 학력별, 연도별 여성 시간당 임금을 이용하였는데, 표본의 개별 여성 및 그 남편의 학력수준 및 연령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학력 및 연령의 월급여총액과 임금자료를 대신 사용하였다. 또한 연도별로 물가수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실질 임금 및 실질급여를 사용하였다. 첫 출산간격을 설명하는 데는 결혼시점의 임금 및 급여총액을, 그리고 두 번째 출산간격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첫 출산시점의 임금 및 급여총액을 이용하였다.

그 외 설명변수에 대한 정의 및 기초통계량은 각각 <표 2>와 <표 3>에 정리하였다. 대도시 거주 여부는 현재 거주지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특별시, 광역시 거주를 의미한다. 여기서 현재 거주지는 조사시점에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시간의 순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다만 다른 변수에 비해 거주지가 자주 바뀌지 않는다는 것과 거주지를 바꾸더라도 거주지의 규모를 바꾸는 것은 더욱 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남편의 장남 여부와 첫 자녀의 딸 여부는 한국의 특수한 가족상황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각각 남편이 장남인 경우와 첫째 자녀가 딸인 경우를 나타낸다. 첫 자녀의 딸 여부는 첫 출산이 이루어진 후에만 알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출산간격을 설명하는 변수로서만 사용되었다. 그 외에 부인 형제·자매 수와 남편

형제·자매 수는 각각 부인과 남편의 형제·자매 수를 나타내며, 혼인연령과 첫 출산연령은 각각 부인의 혼인연령과 첫 출산연령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코호트2~코호트5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각 출생코호트별 더미변수이다.

첫 출산간격을 설명하는 데는 결혼시점의 임금 및 급여총액을, 그리고 두 번째 출산간격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첫 출산시점의 임금 및 급여총액을 이용하였다.

〈표 2〉 설명변수의 정의

변수이름	설명
남성 월급여 총액	연도별, 학력별, 연령별 남성 월급여총액(십만원: 2000년도 기준)
여성 시간당 임금	연도별, 학력별, 연령별 여성 시간당 임금(천원: 2000년도 기준)
대도시 거주 여부	현 거주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이면 1, 아니면 0
남편 장남 여부	남편이 장남이면 1, 아니면 0
첫 자녀 딸 여부	첫번째 자녀가 여아이면 1, 아니면 0
남편 형제·자매 수	남편의 형제·자매 수
부인 형제·자매 수	부인의 형제·자매 수
혼인연령	부인의 혼인연령(세)
첫 출산연령	부인의 첫출산연령(세)
코호트2	부인이 태어난 해가 1965년~1969년
코호트3	부인이 태어난 해가 1970년~1974년
코호트4	부인이 태어난 해가 1975년~1979년
코호트5	부인이 태어난 해가 1980년~1984년

〈표 3〉 설명변수의 기초통계

변수이름	관찰값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도시 거주 여부	4295	0.434	0.496	0	1
남편 장남 여부	4295	0.277	0.448	0	1
첫 자녀 딸 여부	3943	0.487	0.500	0	1
남편 형제·자매 수	4295	4.543	1.676	1	12
부인 형제·자매 수	4295	4.645	1.665	1	12
혼인연령	4295	24.733	3.071	15.25	40
첫 출산연령	3943	25.868	3.160	16.333	41
코호트2	4295	0.309	0.462	0	1
코호트3	4295	0.260	0.439	0	1
코호트4	4295	0.093	0.291	0	1
코호트5	4295	0.009	0.095	0	1



출산을 하지 않는 부인이 많이 존재하는 실제 자료와 출산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실증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 출산으로 또는 두 번째 출산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일부 부인이 출산을 중단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모형의 추정 및 결과

1. 기본모형

배우자가 있는 부인 중에도 일부는 불임 등의 외부적 요인 또는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는 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는 출산을 하더라도 하나의 자녀만을 갖고 출산을 멈추는 경우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출산으로의 이행에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앞에서 제시한 와이블 분포를 이용한 듀레이션 분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라미터의 범위에서 모든 부인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결국에는 출산을 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³⁾ 따라서 출산을 하지 않는 부인이 많이 존재하는 실제 자료와 출산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실증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 출산으로 또는 두 번째 출산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일부 부인이 출산을 중단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⁴⁾ 이를 위해서 생존함수(S)를 아래와 같이 변형하여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p_j 는 출산이 중단된 부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출산중단 비율을 추정함으로써 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S_j(t_j|Z_j; \Theta_j, \mu_j) = p_j + (1 - p_j) \exp\left(-\int_0^t h_j(s|Z_j) ds\right) \quad (2)$$

$$= p_j + (1 - p_j) \exp\left(-\exp(\delta_j + Z_j \beta_j) \frac{1}{\gamma + 1} t^{\gamma + 1}\right), j=1, 2$$

$$p_j = \frac{1}{1 + \exp(-\mu_j)}, j=1, 2 \quad (3)$$

모형의 추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가 첫 자녀의 출생년월과 마지막 자녀의 출생년월만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료의 누락 없이 첫 출산 및 두 번째 출산간격을 연구하려면 일반적인 듀레이션 분석에서 사용되는 로그우도함수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조사시점 현재까지 출산횟수가 3회 이상인 관찰값을 2번째 출산간격에 대한 추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3회 이상 출산 여성의 경우 두 번째 출산간격이 첫 출산과 마지막 출산 사이의 기간보다 작다는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우선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들의 집합을 $\Theta_j = (\beta_j, \gamma_j, \delta_j)$, $j=1$ or 2 , 조사시점까지 출산횟수를 *stat*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t_1 은 결혼 후 첫 출산까지 간격, t_2 는 첫 출산부터 마지막 출산까지 간격에 대한 실제 관찰값이라 하고, 윗쪽 바(upper bar)가 붙은

3) 엄밀하게는 $\gamma > -1$ 일 경우에 해당한다.

4) 물론 이 실증모형에서는 출산중단이 자발적인 것인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구별하지는 않는다.

변수는 각 출산간격이 오른쪽으로 절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로그우도함수는 데이터 Z_1, Z_2 그리고 추정할 파라미터인 θ_1, θ_2 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S 및 f 는 각각 생존함수 및 확률밀도함수이다.

$$\begin{aligned} \ln L = & \sum_{stat=0} \ln S_1(\bar{t}_1|Z_1 : \theta_1) + \sum_{stat=1} [\ln f_1(t_1|Z_1 : \theta_1) + \ln S_2(\bar{t}_2|Z_2 : \theta_2)] \\ & + \sum_{stat=2} [\ln f_1(t_1|Z_1 : \theta_1) + \ln f_2(t_2|Z_2 : \theta_2)] \\ & + \sum_{stat=3} [\ln f_1(t_1|Z_1 : \theta_1) + \ln (1 - S_2(\bar{t}_2|Z_2 : \theta_2))] \end{aligned} \quad (4)$$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들에 대한 관찰값(stat=0)들은 θ_1 의 추정에만 사용되며, stat=1,2,3인 경우에는 θ_1, θ_2 모두의 추정에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stat=3인 경우 두 번째 출산간격은 첫 출산부터 마지막 출산까지 기간보다 작다는 조건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우도함수를 이용하여 최우추정법으로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패널(I)에는 경제적 변수를 위주로 비교적 적은 수의 핵심적인 외부변수들만을 포함시킨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패널(II)은 결혼연령 및 첫 출산연령을 추가한 모형이며, 마지막 패널(III)에서는 기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 모두에 대해 남성 월급여총액에 대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추가하여도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성 월급여 증가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효과의 크기는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첫 출산 및 두 번째 출산 모두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모형에서 여성임금의 계수는 첫 출산의 경우 -0.07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1,000원 증가할 경우 출산의 위험률이 종전의 약 100분의 93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두 번째 출산에 대한 효과도 계수가 -0.088로 첫 출산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여성의 임금 증가가 출산 및 이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의 가능성 모두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남성 월급여와 여성 임금이 개인별 변수가 아니라 연도, 학력, 연령 그룹 내의 평균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월급여 및 임금은 개인의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만약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이 늘어나는 경우 연령의 효과가 급여 및 임금의 효과로 잘못

여성의 임금 증가
출산 및 이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의
가능성 모두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종전의 첫출산 위험률이 10%라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1,000원 증가할 경우 위험률이 9.3%가 됨을 의미한다.



모든 조건이 같은
두 부인이 있을 경우,
결혼 이후 출산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째 패널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결혼연령 및 첫 출산연령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는데, 이 모형에서도 남성 월급여와 여성 임금의 효과는 마찬가지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남아선호 경향이 반영되는 결과로서 첫 자녀의 성별이 두 번째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첫 자녀가 딸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두 번째 출산의 가능성이 뚜렷이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 거주 여부는 첫 출산에 대해서는 별로 유의하지 않으나 두 번째 출산은 유의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형제·자매 수, 남편이 장남인지 여부 등은 예상과 같이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형제·자매 수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유전적 요인, 문화적 요인, 출산 및 양육 보조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모형을 이용하여 각각의 효과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산중단 가능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μ 에 대한 추정치가 의미하는 바는 첫 출산의 경우 2%, 두 번째 출산의 경우 9%의 부인이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γ 는 첫출산 및 두번째 출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나서, 양의 듀레이션 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출산의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뜻으로서, 모든 조건이 같은 두 부인이 있을 경우, 결혼 이후 출산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2. 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 고려된 모형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란 부인의 유전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과 같이 개인에게 고유한 특성으로서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자료를 통해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부인은 유전적인 이유로 다른 부인들보다 자녀의 수태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첫 출산 및 두 번째 출산이 다른 부인들보다 평균적으로 늦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자녀 생산력(fecundity)의 개인적 차이를 통제하는 것이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하는 주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듀레이션 분석에 추가적으로 개인의 이질성을 모형화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듀레이션 의존성을 편의(bias) 없이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Wooldrige 2001, Lancaster 1991). 예를 들어 첫 출산을 준비하는 부인들 중에서 자녀를 쉽게 갖는 유전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먼저 출산을 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출산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출산 위험률은 이미 출산을 마친 사람들보다 낮을 것이다. 따라서 이질성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표 4〉 기본모형 추정결과

I				
	첫 번째 출산		두 번째 출산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δ	-0.087	0.041	-1.581	0.064
γ	0.432	0.014	0.986	0.026
β				
남성 월급여 총액	0.006	0.003	0.004	0.003
여성 시간당 임금	-0.074	0.013	-0.088	0.017
대도시 거주 여부	0.006	0.030	-0.126	0.037
첫 자녀 딸 여부			0.096	0.036
코호트2	0.057	0.038	0.233	0.045
코호트3	0.052	0.046	0.066	0.055
코호트4	-0.104	0.075	0.078	0.116
코호트5	0.053	0.251	-0.258	0.479
μ	-3.909	0.118	-2.301	0.061
출산중단확률	0.020		0.091	
log likelihood	-13184.849			
II				
	첫 번째 출산		두 번째 출산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δ	-0.670	0.153	-2.216	0.227
γ	0.438	0.014	0.997	0.026
β				
남성 월급여 총액	0.002	0.004	0.002	0.003
여성 시간당 임금	-0.122	0.018	-0.136	0.024
대도시 거주 여부	0.009	0.030	-0.126	0.037
첫 자녀 딸 여부			0.092	0.036
연령	0.030	0.007	0.030	0.010
코호트2	0.103	0.040	0.287	0.049
코호트3	0.155	0.053	0.170	0.066
코호트4	-0.037	0.084	0.244	0.126
코호트5	0.299	0.261	0.026	0.491
μ	-3.877	0.117	-2.288	0.061
출산중단확률	0.020		0.092	
log likelihood	-13172.436			
III				
	첫 번째 출산		두 번째 출산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δ	-0.999	0.166	-2.679	0.242
γ	0.442	0.014	1.008	0.026
β				
남성 월급여 총액	0.002	0.004	0.003	0.003
여성 시간당 임금	-0.105	0.018	-0.107	0.024
대도시 거주 여부	0.021	0.030	-0.109	0.037
남편 장남 여부	0.056	0.036	0.031	0.044
첫 자녀 딸 여부			0.092	0.037
남편 형제자매수	0.031	0.010	0.038	0.011
부인 형제자매수	0.034	0.009	0.062	0.011
연령	0.027	0.007	0.024	0.010
코호트2	0.124	0.040	0.305	0.049
코호트3	0.190	0.053	0.207	0.066
코호트4	0.090	0.084	0.304	0.128
코호트5	0.386	0.262	0.142	0.491
μ	-3.890	0.117	-2.292	0.061
출산중단확률	0.020		0.092	
log likelihood	-13139.029			



여성 임금은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 모두를 유의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도 기본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입장에서는 듀레이션 의존성이 없더라도, 마치 음(-)의 듀레이션 의존성이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듀레이션 의존성에 편의가 발생하는 문제를 이질성을 통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실증모형에 이질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개인의 이질성이 v 라는 하나의 변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위험함수에 직접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h_j(t|Z_j) = \exp(\delta_j + \gamma_j \ln(t) + Z_j \beta_j + v_k) \tag{1'}$$

그러나 이질성은 연구자가 관찰할 수 없으므로, v 를 확률분포로 간주하고 그 분포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모형과 함께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형의 최우추정을 용이하게 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진 EM 알고리즘 (Heckman and Walker 1990, Heckman and Singer 1982, Lancaster 1990)을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⁶⁾

아래에서는 기본모형에 이질성을 포함하여 확장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선 γ 의 크기가 기본모형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기본모형에서는 첫 출산의 γ 가 0.432이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1.351로 크게 증가하였다.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양(+)의 듀레이션 의존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개인의 이질성이 고려되지 않은 모형에서는 음(-)의 편의가 발생한다는 앞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월급여는 기본모형에 비하여 유의성이 조금 높아졌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표 5>에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통제변수를 추가한 결과에서도 남성 월급여의 유의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여성 임금은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 모두를 유의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도 기본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본모형에서는 대도시 거주 여부가 두 번째 출산에 대해서만 유의한 지연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질성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첫 출산에 대해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추정된 출산중단 확률은 첫 출산의 경우 1.3%, 두 번째 출산은 8.2%로 기본모형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6)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 v 의 분포가 유한한 받침(support)을 갖는다고 가정할 때, 그 분포 $m(v)$ 은 $\{I_{ik}, v_{ik}\}_{k=1}^K$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로그우도함수 $\mathcal{L} = \sum_{i=1}^N \ln(\sum_{k=1}^K \pi_{ik} \pi_{ik})$ 를 최대화하는 파라미터 $\{I_{ik}, v_{ik}\}_{k=1}^K, \theta_1, \theta_2, \mu_1, \mu_2$ 를 쉽게 찾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EM 알고리즘이 알려져있다. EM 알고리즘은 반복적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서 우선 E단계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I_{ik}^{(m)}\}_{k=1}^K$ 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E단계).
$$\pi_{ik}^{(m)} = \frac{I_{ik}^{(m-1)} \ln L_{ik}^{(m-1)}}{\sum_{k=1}^K I_{ik}^{(m-1)} \ln L_{ik}^{(m-1)}}$$

$$I_{ik}^{(m)} = \frac{1}{N} \sum_{i=1}^N \pi_{ik}^{(m)}$$
 여기서 $\ln L_{ik}^{(m-1)}$ 은 m-1 번째 단계에서 구해진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구한, 관찰값 i 의 로그우도함수값이다. 또한 π_{ik} 는 관찰값 i 가 v_k 로부터 생성되었을 사후적 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베이즈 규칙(Bayes rule)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어진 $\{I_{ik}^{(m)}\}_{k=1}^K$ 에 대해서 로그우도함수
$$\mathcal{L}^{(m)} = \sum_{i=1}^N \sum_{k=1}^K \ln L_{ik}(v_{ik}, \theta_1, \theta_2, \mu_1, \mu_2) \pi_{ik}^{(m)}$$
를 구성하여 이를 최대화하는 나머지 파라미터 $\{v_{ik}\}_{k=1}^K, \theta_1, \theta_2, \mu_1, \mu_2$ 를 구할 수 있다(M단계). EM 알고리즘은 이렇게 E단계와 M단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본래 모형의 최우추정량을 구하는 과정이다.

〈표 5〉 개인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

IV.				
	첫 번째 출산		두 번째 출산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δ	1.151	0.045	-1.271	0.066
γ	1.351	0.024	1.671	0.034
β				
남성 월급여 총액	0.005	0.003	0.005	0.003
여성 시간당 임금	-0.089	0.013	-0.088	0.016
대도시 거주 여부	-0.111	0.030	-0.158	0.037
첫 자녀 딸 여부			0.091	0.036
코호트2	0.016	0.038	0.113	0.045
코호트3	-0.082	0.045	-0.142	0.055
코호트4	-0.267	0.070	-0.178	0.118
코호트5	0.033	0.221	-0.725	0.477
μ	-4.295	0.133	-2.414	0.062
출산중단확률	0.013		0.082	
no of support in m(v)	10			
log likelihood	-10281.614			

출산중단 확률의 변화는 양효과에, 출산 위험률 변화는 대체로 속도효과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출산중단의 결정요인 분석

지금까지는 출산중단 확률이 설명변수에 의해 변화하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다만 각 출산단계별로 고정된 출산중단 확률을 직접 추정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여 출산중단 확률이 남성 월급여, 여성임금, 첫 자녀 성별 등의 설명변수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보다 확장된 모형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 사용된 설명 변수는 두 가지 다른 효과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앞서 고려한 바와 같이 출산 위험률을 변화시키는 효과이고, 추가적으로 출산을 중단할 확률을 변화시키는 효과이다. 도입부에서 인구학자들이 출산율의 변화를 양(quantum)효과와 속도(tempo)효과로 구분한다고 설명하였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출산중단 확률의 변화는 양효과에, 출산 위험률 변화는 대체로 속도효과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산중단이 설명변수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모형화하기 위하여 출산중단 확률 p_j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다만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추정계수의 부호가 출산중단 확률의 변화방향과 일치하도록 부호를 조정하였다. 따라서 추정계수 α 가 양(+)의 부호를 갖는 경우, 이는 해당 설명변수가 출산중단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_j = \frac{1}{1 + \exp(-\mu_j - Z_j\alpha_j)}, \quad j=1,2 \quad (3')$$



여성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효과가 출산을 지연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일부 부인에 대해서 아예 출산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효과가 존재한다.

앞의 분석에서와 같이 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위험함수 (1') 이 포함된 모형을 E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 월급여의 경우 위험함수에 미치는 효과 및 출산중단 확률에 미치는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임금이 출산 위험함수에 미치는 효과는 각각 -0.074와 -0.056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출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크기 또한 이전의 분석에서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여성임금이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 모두에서 출산중단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효과가 출산을 지연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일부 부인에 대해서 아예 출산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추정된 계수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표본의 평균적인 설명변수 값에서 평가한 여성임금의 한계효과를 식 (5)에 따라서 계산하면, 그 크기가 각각 0.0074와 0.0180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1,000원 증가하였을 때, 다음 출산을 중단하는 비율이 결혼 후 자녀가 없는 부인의 경우 0.74% 증가하고, 자녀가 하나 있는 부인의 경우에는 1.80%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rac{\partial p_j}{\partial Z_j} = \frac{\exp(-\mu_j - Z_j\alpha_j)}{\{1 + \exp(-\mu_j - Z_j\alpha_j)\}^2} \alpha_j, \quad j=1, 2 \quad (5)$$

첫 자녀의 성별이 두 번째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변수 첫 자녀의 딸 여부에 대한 추정계수가 위험함수에 대해서는 0.0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출산중단 확률에 대해서는 -0.899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가 아들인 경우가 딸인 경우에 비해 출산을 지연하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출산을 중단하는 효과는 유의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첫 자녀의 성별이 두 번째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대부분 양(quantum)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출산중단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표본의 평균적인 설명변수 값에서 평가하면, 첫 자녀가 아들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두 번째 출산을 중단할 확률이 7.0%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6〉 출산지연과 출산중단을 결정하는 요인을 동시에 추정한 결과

IV.				
	첫 번째 출산		두 번째 출산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δ	1.123	0.045	-1.325	0.067
γ	1.371	0.025	1.697	0.034
β				
남성 월급여 총액	0.005	0.003	0.005	0.003
여성 시간당 임금	-0.074	0.013	-0.056	0.017
대도시 거주 여부	-0.108	0.030	-0.167	0.037
첫 자녀 딸 여부			0.033	0.037
코호트2	-0.001	0.038	0.086	0.045
코호트3	-0.084	0.045	-0.170	0.055
코호트4	-0.095	0.072	0.044	0.127
코호트5	0.145	0.230	-0.788	0.483
α				
남성 월급여 총액	0.020	0.012	-0.006	0.014
여성 시간당 임금	0.425	0.076	0.231	0.050
대도시 거주 여부	0.099	0.207	-0.032	0.121
첫 자녀 딸 여부			-0.899	0.130
코호트2	-0.386	0.321	-0.303	0.145
코호트3	0.120	0.307	-0.263	0.184
코호트4	1.602	0.315	0.783	0.299
코호트5	1.457	0.842	-0.607	2.026
μ	-5.815	0.362	-2.590	0.181
no of support in m(v)	10			
log likelihood	-10278.626			

출산중단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표본의 평균적인 설명변수 값에서 평가하면, 첫 자녀가 아들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두 번째 출산을 중단할 확률이 7.0%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모형하에서 여성의 시간당 임금의 증가가 출산간격 및 출산중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이용한 가상적인 실험을 구성하였다.

우선 표본에서 2000년에 결혼한 부인 총 164명을 대상으로 하여 〈표 6〉에서 추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생존함수를 각각 계산하고, 그 평균을 [그림 3]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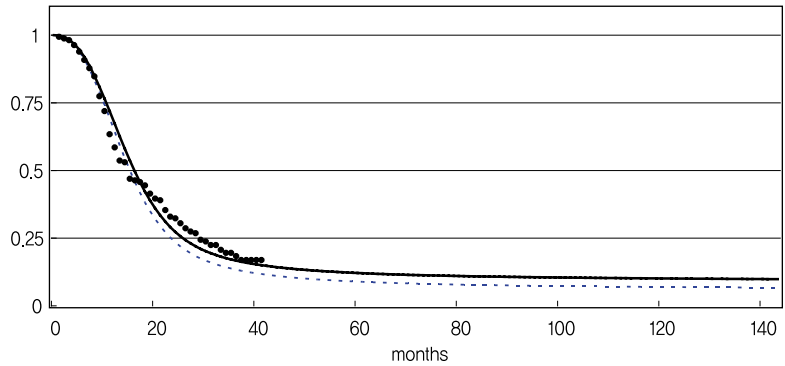
점선으로 그려진 곡선이 2000년에 결혼한 부인 164명에 대해서 추정된 모형이 의미하는 평균적인 생존함수이다. 그리고 가상적으로 2000년 여성의 임금이 20% 증가하였을 때, 변화한 생존함수를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선정된 164명의 부인에 해당하는



생존함수가 5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14.5개월과 15.5개월로서 50%의 부인이 출산을 완료하는 데 약 1개월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도 평균임금은 5,100원으로 20% 증가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평균 약 1,000원 정도 증가한 실험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2000년에 결혼한 여성이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주 : before: 추정된 모형이 의미하는 생존함수
 after: 여성임금 20% 상승 후 생존함수
 KM: Kaplan-Meier 생존함수

생존함수가 5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14.5개월과 15.5개월로서 50%의 부인이 출산을 완료하는 데 약 1개월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출산을 중단하는 평균적인 확률은 5.5%에서 8.3%로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전체 표본의 평균적 설명변수에 대해서 한계효과를 계산한 것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온 것은 2000년에 결혼한 부인이 비교적 최근 코호트에 해당한다는 것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일정액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로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높은 여성의 경우 낮은 여성에 비해서 임금 증가액수가 더 크도록 실험이 설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V. 결과요약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출산력 자료와 1979년 이후 매월노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수들이 첫 출산간격과 두 번째 출산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간격에 관한 종전 연구들이 살펴보지 못했던 여성임금 및 남성소득의 효과에 대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여성임금의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 모두를 지연시키며 동시에 출산중단의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남성의 소득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변수를 포함하였을 경우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으로 첫 자녀의 성별이 두 번째 자녀의 출산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효과는 출산지연보다는 출산중단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임금과 남성소득 외에 첫 자녀의 여아 여부, 남편과 부인의 형제·자매 수, 거주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수 역시 출산간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과제로서는 우선 다수의 미혼여성의 결혼 결정과 3번째 이후의 출산도 포함하는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전체 인구에서 각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설명변수 또는 정책변수의 변화가 합계출산율의 추이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집계치를 사용하고 있는 임금 및 소득자료의 문제점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결정모형을 추정하고, 그 추정된 모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듀레이션 분석에 의한 출산간격 모형은 여성의 의사결정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축약형 모형(reduced form)으로 출산 결정과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의 상호관계를 직접 연구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주요한 경제적 변수의 변화에 출산 결정이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면, 그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의 추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IPF**

여성임금과 남성소득 외에 첫 자녀의 여아 여부, 남편과 부인의 형제·자매 수, 거주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수 역시 출산간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은기수,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35집 6호, 2001.
- 이삼식 외,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연구보고서 2005-30(2), 2005.
- Bongaarts, John and Griffith Feeney,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1998.
- Heckman, J. and B. Singer, "The Identification Problem in Econometric Models of Longitudinal Data," in W. Hildenbrand(ed). *Advances in Econometrics*, 1982.
- Heckman, J. and J. Walker, "Relationship between Wages and Income and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 Evidence from Swedish Longitudinal Data,” *Econometrica* 58, 1990.

Lancaster, Tony, *The Econometric Analysis of Transition Data*, 1990.

Sobotka, T, “Is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Explained by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 2004.

Wooldridge, M.,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2002.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국세청(청장 : 전군표)은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 쓴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는 최근 단편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으로 인해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똑같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면서도 병역의무를 면탈한 경우에는 냉엄한 사회적 단죄를 하면서도 탈세에 대해서는 유독 온정적인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책은 현행 조세제도나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일반국민들이 오해하기 쉽거나, 부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주제와 이슈를 망라한 16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포럼』에서는 이 책자의 주요 내용 중 일부분을 발췌 게재한다. <편집자 주>

프롤로그 세금, 고귀한 의무이자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 세금의 중요성과 성실한 세금납부의 소중함을 쉽게 설명

제1편 여러분의 세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조세체계, 세금의 기능, 세금이 우리경제에 기여한 역할 등 세금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도록 구성

제2편 우리나라 조세부담, 과연 높은 것일까요?

- 1인당 조세부담액의 한계와 대안,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조세부담 수준과 미래 재정 수요에 대한 국민적 선택의 필요성

제3편 부동산투기, 결코 방지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투기의 폐해와 투기억제를 위한 대응 조치, 성과 및 향후계획

제4편 8·31 대책, 부동산시장의 항구적 안정을 지향합니다

- 8·31대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대책을 추진한 배경과 현재 추진 중인 핵심정책의 세부 내용을 설명

제5편 종합부동산세, 아름다운 되돌림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배경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타당성

제6편 상속세 과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입니다

- 최근의 상속세 폐지논쟁 등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의 필요성과 상속세 부담의 실상

제7편 은행대출 이용하면 증여세 줄일 수 있다?

- 부담부 증여, 분산증여 등을 통한 증여세 회피행위는 올바른 절세방법이 될 수 없음을 사례를 통해 설명

제8편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자영업자·근로소득자의 실질적인 세부담 현황 및 자영업자 소득과약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계획

제9편 부가가치세 사업자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

제10편 외국계펀드 세무조사, 글로벌 기준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입니다

- 외국계기업의 인식도등을 통해 본 세무조사와 외국인투자와의 관계
- 제3차 OECD국세청장회의의 성과인 『서울 선언』의 의의 등

제11편 세무조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선정방식, 조사비용 및 외국과의 비교, 조사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 혁신방향 등

제12편 홈택스(Hometax), 세계초일류 국세청의 다른 이름입니다

- 홈택스서비스의 전개과정, 외국과 비교한 우리의 전자세정 수준 홈택스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내용 등을 안내

제13편 현금영수증 생활화, 투명사회를 앞당깁니다

- 현금영수증 도입배경,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

제14편 체납세금정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 체납의 규모와 추세, 정리방식, 체납정리 인프라 구축내용 등 체납세금 정리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

에필로그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가겠습니다

- 국세행정의 역할과 기능, 세입징수기관으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한 그동안의 자체구조조정 노력, 「따뜻한 세정」을 펼쳐가기 위한 최근의 추진사항 등

제 1 편

우리가 내는 세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I. 다양한 세금, 어떤 것이 있을까요
- II. 세금은 오늘의 경제를 이룩한 원동력입니다.
- III. 세금납부, 고귀한 의무이자 선진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입니다.

I 다양한 세금,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세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사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주역 중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라며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 다양합니다.

세금은 국가에서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국세란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국가가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하여 걷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에게서 걷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는 국세 15개, 지방세 16개로 총 31개가 있으며, 이 중 국세청에서 걷는 세금은 국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14개 세목입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세금은 정치·사회제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도 많습니다.

- ◆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모두가 과세를 둘러싼 갈등이 도화선이 되었고,
- ◆ 우리나라 조선후기 田政(전정), 軍政(군정), 還穀(환곡)의 삼정(三政)의 문란은 잇단 민란과 사회해체로 이어졌습니다.
- ◆ 그래서 論語에도 어느 여인이 세금을 뜯어가고 백성을 못살게 구는 악질관리를 피해 호랑이가 득실대는 산속에 산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문稅와 수염稅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양식도 변화시키곤 했습니다.

- ◆ 17세기 영국 왕 윌리엄 3세 때는 벽난로가 있는 주택을 호화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벽난로가 있는지를 정부가 일일이 조사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집 외부에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창문의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 영국 국민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문을 폐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 러시아의 표트르(Pyotr) 대제는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남자들의 긴 수염을 깎도록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기르는 남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 그토록 반발하던 남자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너도 나도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도 전기세·수도세라고 말씀하시나요?

세금은 정부에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대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전기나 수도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며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II 세금은 오늘의 경제를 이룩한 원동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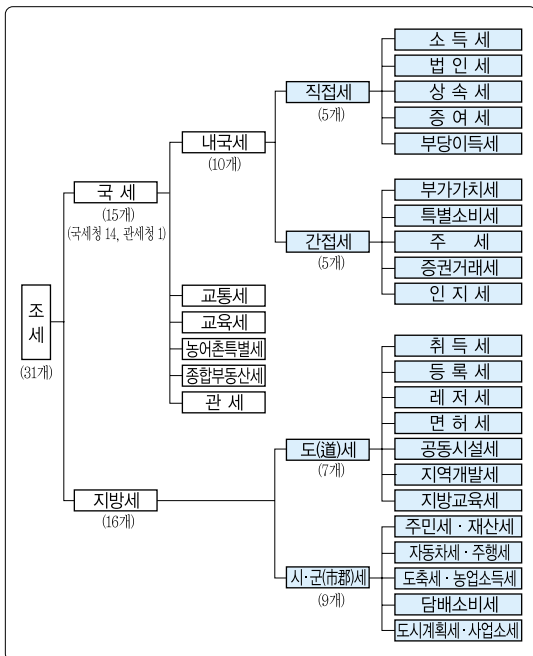
1.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청이 책임집니다.

국세청이 개청된 첫 해인 1966년에 700억원의 내국세 수입을 달성한 이래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금규모는 1975년 1조원, 1995년 5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05년에는 120조 4천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세입에서 국세청이 거두는 세금 비중은 1966년 45.5%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85.1% 수준으로 크게 늘어 국가 재정수입면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인한 세원증대, 즉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그리고 국세행정의 효율화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실한 납세를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2. 세금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정부는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그 밖에 보유 자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하여

[표 1] 우리나라 조세체계도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과 함께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재원을 골고루 배분합니다.

그동안 재정지출은 사회간접자본 개발, 전략산업의 육성 등 생산성이 높은 경제분야에 집중 투자되어 왔습니다.

[표 2] 연도별 세입 및 국세청 세입규모 추이

연도	세입 합계	국세청 세입	
	금액(억원)	금액(억원)	비중(%)
1966	1,538	700	45.5
1975	16,320	10,442	64.0
1980	66,352	42,177	63.6
1985	126,496	89,416	70.7
1990	304,534	226,778	74.5
1995	592,710	517,487	87.3
2000	1,035,523	866,013	83.6
2004	1,292,713	1,102,172	85.3
2005	1,415,332	1,204,237	85.1

※ 세입 합계는 국세총액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합한 것임. 국세청 세입은 세입에서 관세, 수입세분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및 기타수입을 제외한 금액임

[표 3] 전체지출 중 경제분야 지출비중(%)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04년	OECD('00년)
27.0	20.7	23.2	22.8	9.5

이는 1970년대 이후 전체 재정지출 중 경제분야 지출 비중이 지난 40년간 20%를 상회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오면서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환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성장동력 확충, 남북협력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경제발전 성과는 국민들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정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숫자로 보는 경제 60년

▶ GDP 규모는 606배 확대, 세계 12위

1953년의 GDP는 겨우 13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606배 늘어난 7,875억달러로 급증했습니다.

▶ 수출은 1만 2,928배 증가, 세계 12위

1948년 2,200만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2005년 2,844억 2천만달러로 무려 1만 2,928배로 급증했습니다.

1960년 우리의 수출대상국은 59개국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227개국으로, 수입상대국도 50개국에서 222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자동차 생산량 5위

선박은 2005년에 1,023만 7천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생산,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자동차생산량은 2005년 370여만대를 기록, 세계 5위 생산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은 각각 371억 9천만달러, 299억 9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메모리분야에서 최근 10년간 세계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투자 7.5배 늘어

1967년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는 0.38%에 불과했으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연구개발비의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04년에는 2.85%로 높아졌습니다.

III

세금납부, 고귀한 의무이자 선진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입니다.

1. 세금납부는 고귀한 헌법상 의무입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더불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8조).

즉, 성실하고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인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탈세행위를 통하여 본인의 소중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면서 국가와 사회에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우리가 내는 세금,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조금이라도 축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이 보통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살림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살림살이를 원만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금이 꼭 필요합니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빚을 내서 필요한 곳에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나라의 빚이 많아지면 결국은 모두 국민의 빚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은 국민들이 나누어 내야 하므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탈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성실한 사람들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납세의식을 가지고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 성실한 세금납부, 선진국민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세금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세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인들의 봉급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장사하는 사람의 이익이 약간 늘어나겠죠. 그럼 더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느끼기 못할 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정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많은 혜택을 보면서 삽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업자를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줍니다.

소득불평등이 너무 심화되어 사회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세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신의 소득에 맞게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애국자로 대접받고 있으며 사회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100억달러 이상의 거액의 기부금을 낸 이유를 “나라에서 규정한 저작권법 등으로 개발한 프로그램(Windows)이 보호받아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어야 한다”고 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납세의식은 국가와 국민관계의 기본이자, 국가라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조세제도를 공정하게 설계하고, 국세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한편, 거두어 들인 세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자기 능력에 맞게 기꺼이 분담하려는 납세의식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KIPF**

제 7 편

은행대출 이용하면 증여세 줄일 수 있다?

- I. 시중에 떠도는 증여세 절세방법
- II.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 III. 잘못된 증여세 상식 몇 가지
- 〈참고〉 우리나라의 증여세 개요

I 시중에 떠도는 증여세 절세방법

“전업주부 판교당첨시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에는 남편과 아내가 절반씩 받는 게 유리”

최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역 아파트 당첨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다양한 증여세 절세방법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금융기관 채무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여러번 나누어서 증여하면 증여세 피할 수 있어...”, “부모가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절약가능” 등 여러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정말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일까요?

II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1. 재산의 무상이전에 붙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

우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지난 2004년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민법상 증여와 세법에 예시된 증여 유형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이면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모두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증여 유형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하게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증여를 통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교육비, 그리고 혼수용품, 부의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

우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백만원, 기타친족의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의 10%부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50%까지 총 5단계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면 내야 할 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표 1] 증여세 세율구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과세표준이 6억원일 때 증여세 산출세액 : 6억원×0.3 - 6천만원 = 1억 2천만원

2. 상속세를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해 단계별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억제하고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여 기회균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므로써 생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속세를 보완하는 세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III 잘못된 증여세 상식 몇 가지

1.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아버지로부터 시가 5억원(담보대출 2억원 포함)짜리 주택을 증여받은 딸이 3억원(시가 5억원 - 대출금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향후 대출금과 이자를 딸 대신 아버지가 갚아주면 대출금 2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채무 상당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담부증여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그 부동산과 관련된 보증금이나 담보대출 등 채무를 포함해서 증여함으로써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등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된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 때(무신고의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조사 때) 부채로 신고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채내역과 채무만기일 등을 전산 관리하여 매년 변제기일이 지난 부채에 대해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부채 상환 여부를 조회하여 그 변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합니다.

상환내역을 파악한 결과 부채상환금액이 본인의 경제

적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환된 자금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 결과, 본인 스스로 변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조사를 통해 당초에 부담해야 할 증여세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여 증여세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므로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1년 후 부모가 대신 부채를 갚아준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51,528천원으로, 5억원 전부를 당초 증여재산으로 신고·납부했을 때보다 15,528천원(②+③-①)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표 2] 부담부증여시 납부할 세금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정상 신고	당초 신고	추가 결정
증여재산가액	500,000	500,000	200,000
재차증여재산가액	-	-	300,000
채무액	-	200,000	-
증여재산공제	30,000	30,000	30,000
과세표준	470,000	270,000	470,000
산출세액 (세율 20% 적용)	84,000	44,000	84,000
세액공제 (기납부+신고세액)	8,400	4,400	44,000
가산세	-	-	11,528
납부할 세액	75,600①	39,600②	51,528③
비고		대출금 2억원을 본인 부채로 신고	대출금 2억원을 부모가 갚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부모 등 제3자의 경제력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부모 또는 남편의 자산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없는 아들이 부모로부터 분양대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그 원금과 이자를 부모에게 상환한 것처럼 기록을 남겨 놓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재산취득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요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①취득재산가액, ②채무상환금액 또는 ③10년 이내의 그 합계액(①+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표 3] 증여추정 배제기준

과세표준	①취득재산		②채무상환	③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천만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고액자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

는 경우,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취득 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 억원을 넘으면)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다른 사람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의 담보자산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부모·자식 간 금전거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고,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까요?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담보제공행위 등 「배우자의 자산을 대출에 활용하는 것」은 용역의 무상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부모·자식 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또는 아주 낮은 이율 또는 대가로 빌리는 경우」에는 정기에금이자액에 상당하는 금액(현재 9%)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체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 방법으로 취득자금출처를 인정받았다 할 지라도 자금출처로 인정된 부채는 전산 관리되어 부채상환시 자력변제 여부를 또다시 검증받게 되므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방법도 일시적인 회피수단이 될 뿐 결국에는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분산증여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부모가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한꺼번에 분양대금 6억원을 증여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각각 3억원씩 주고, 며느리는 다시 남편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한 사람에게 증여할 것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

면 증여재산가액이 그만큼 작아지고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져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간 증여가 3억원까지 공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모가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며느리를 통하여 우회증여를 한다면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명백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2④). 또한, 향후 10년 이내에 며느리가 남편에게 또다시 증여할 경우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되는 3억원을 다시 공제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절세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부모가 아들에게 직접 전액(6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로 1억원을 내야 하지만, 며느리를 통한 우회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하면 증여세 1억 7백만원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표 4] 분산증여시 납부할 세금 비교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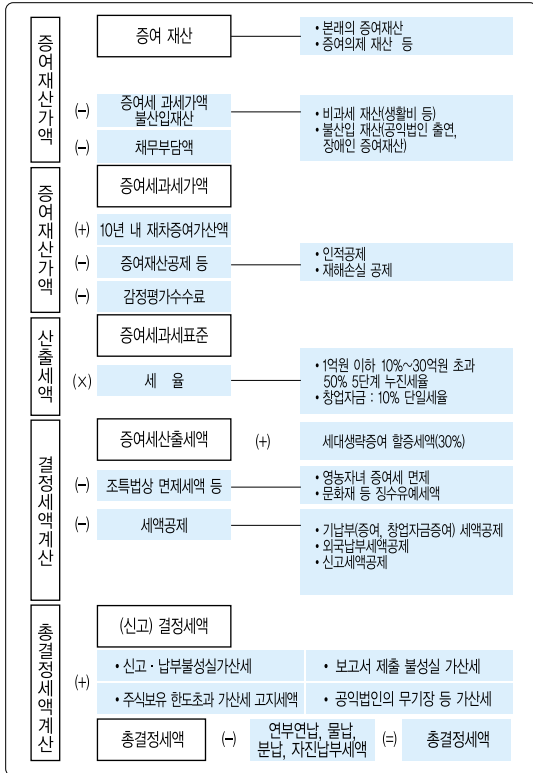
구분	납부할 세액			
	자(子)	자부(子婦)	계	
전부 증여시	(父 → 子)	100	-	100
분산 증여시	①(父 → 子, 子婦)	40	44	-
	②(子婦 → 子)			
실질 증여로 결정시	(①, ②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결정)	107	-	107+가산세

결국, 증여세 절세방안으로 제시된 앞의 3가지 사례들도 2004년 이후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로는 올바른 절세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유형의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은 엄격히 검증되고, 결국 과세되므로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주고 떳떳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KIF

<참고> 우리나라의 증여세 개요

■ 증여세 계산 흐름도



■ 증여재산공제액

관계	공제금액
배우자	3억원('02. 12. 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

■ 증여세 가산세

종류	계산방법
신고불성실	미달세액 × 10% (또는 20%) ※미달세액 = 산출세액 × $\frac{\text{미달한 과세표준액}}{\text{정한 과세표준}}$
납부불성실	미납세액 × 미납기간 일수 × 0.03%

제 8 편

근로자와 자영업자 세금부담, 사실은 이렇습니다.

- I.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얼마나 되나?
- II. 공평한 세부담을 위해 조세당국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 III.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I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 얼마나 되나?

1.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현황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가중,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 세부담 많아”

세금부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흔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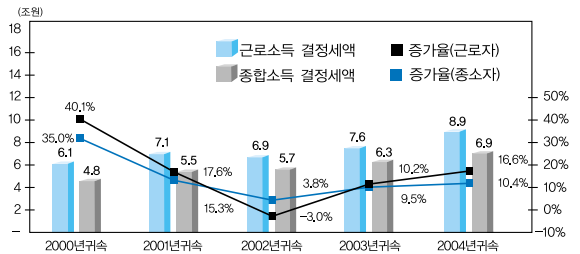
‘유리지갑’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터무니없이 적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정확한 것인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 현황과 공평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규모

2004년 귀속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8.9조원인 반면, 주로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6.9조원이었습니다. 즉, 근로자 전체의 납부세금이 자영업자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림 1]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결정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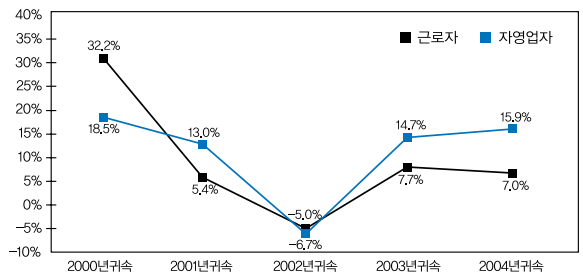


* 2004년 귀속 : 2004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근로자는 2005년 2월 연말정산, 자영업자는 200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임

* 결정세액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것으로,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

[그림 2] 근로자·자영업자의 1인당 세부담 증가율



또한, 1인당 세부담의 증가율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가 자영업자에 비해 높습니다. 이렇듯 근로자 세부담의 절대액이 크고, 세부담의 증가 추이도 근로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자영업자보다 과중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의 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변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경기상황에 따라 소득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1인당 세부담 증가율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내에서 누가 얼마만큼 세금을 부담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세부담 실상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는 세금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앞의 자료를 보면 외견상 근로자 전체의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담의 증가 여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전체 근로자 1,162만명 중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가 536만명(46.1%)에 이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표 1] 근로소득세 과세자현황

(단위 : 천명, %)

귀속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근로자 총인원	11,102	11,555	12,017	11,547	11,624
과세자(비율)	5,934(53.4)	6,446(55.8)	6,188(51.5)	6,258(54.2)	6,268(53.9)
과세미달자(비율)	5,168(46.6)	5,109(44.2)	5,829(48.5)	5,289(45.8)	5,356(46.1)

3.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고소득 근로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는 고소득 연봉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범한 샐러리맨의 세금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IMF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별로 임금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근로자 간의 차이가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의 지급이 확대되어 고액 연봉자가 급증하였는데, 연봉 1억원 이상자가 2001년까지는 3만명에 미치지 못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7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곧 근로소득세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표 2] 연도별 1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

(단위 : 천명, %)

귀속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근로자(증가율)	23(35.2)	27(17.4)	40(48.1)	48(20.0)	70(45.8)

2000년 귀속과 2004년 귀속의 근로자의 세금부담 추이를 비교해 보면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중 누가 더 많이 세금을 부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 3]과 같이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2000년 귀속 13.7%에서 2004년 귀속 7.0%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과세표준 4천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30.1%에서 40.3%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명목임금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금경감 조치로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자의 납부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표 3] 근로자의 세금부담 추이

(단위 : 천명, 억원, %)

과세표준	2000년 귀속		2004년 귀속	
	인원	결정세액	인원	결정세액
1천만원 이하	4,056(68.3)	8,333(13.7)	3,777(60.2)	6,186(7.0)
1천만~4천만원	1,767(29.8)	3조 4,174(56.2)	2,242(35.8)	4조 6,984(52.7)
4천만~8천만원	90(1.5)	8,907(14.7)	208(3.3)	1조 8,729(21.0)
8천만원 초과	21(0.4)	9,356(15.4)	41(0.7)	1조 7,232(19.3)
합 계	5,934(100.0)	6조 770(100.0)	6,268(100.0)	8조 9,131(100.0)

※ () 는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자영업자의 세부담 실상

■ 자영업자의 과세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436만명 가운데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207만명(47.5%)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과세자 비율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과세자 비율은 매년 증가('00년 46.9% → '04년 52.5%)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인프라 구축 등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입니다.

[표 4] 종합소득세 과세자 현황

(단위 : 천명, %)

귀속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사업자 총인원	3,480	3,808	4,161	4,227	4,363
과세재(비율)	1,631(46.9)	1,806(47.4)	2,046(49.2)	2,168(51.3)	2,292(52.5)
과세미달자(비율)	1,849(53.1)	2,002(52.6)	2,115(50.8)	2,059(48.7)	2,071(47.5)

※ 과세자 및 과세미달자에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포함

■ 자영업자의 세부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2000년 귀속 4.8조원에서 2004년 귀속 6.9조원으로 5년간 4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소득계정상의 개인 영업잉여가 같은 기간에 0.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민소득계정 : 국민경제를 하나의 거대기업으로 보고 국민 소득을 기업회계에 준해 나타낸 것으로 생산·소비·자본형성의 3분야로 구분
- 영업잉여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로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금융자산·토지·기타유형의 비생산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개인사업소득이 포함됨

[표 5] 종합소득세 및 개인 영업잉여 현황

(단위 : 조원, %)

귀속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세액(증가율)	4.8(35.0)	5.5(15.3)	5.7(3.8)	6.3(9.5)	6.9(10.4)
개인영업잉여	82.9	87.4	87.4	79.7	79.0

물론, 전체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폭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과세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 대부분의 세금은 고소득 자영업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함께 변호사, 의사 등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도 대부분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살펴보면, 계층별로는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계층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 보아도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감소한 반면,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 세부담은 51.4%에서 63%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 6] 자영업자의 세금부담 추이

(단위: 천명, 억원, %)

과세표준	2000년 귀속		2004년 귀속	
	인원	산출세	인원	산출세
1천만원 이하	970(63.5)	3,416(6.3)	1,257(64.7)	3,956(5.0)
1천만~4천만원	427(27.9)	1조 3,019(23.9)	490(25.2)	1조 3,114(16.5)
1천만~8천만원	88(5.7)	9,993(18.4)	118(6.1)	1조 2,275(15.5)
8천만원 초과	44(2.9)	2조 8,020(51.4)	78(4.0)	4조 9,914(63.0)
합 계	1,529(100.0)	5조 4,448(100.0)	1,943(100.0)	7조 9,259(100.0)

※ ()는 전체 종합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8] 세제지원에 따른 근로자 세부담 경감규모

(단위: 조원)

귀속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세부담 경감액	1.5	0.3	1.3	0.9	1.2

그 결과 '05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1,364만원)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근로자의 면세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표 9] 근로소득 면세점(4인가족 기준)

귀속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면세점 (월급여)	1,318만원 (월 110만원)	1,455만원 (월 121만원)	1,505만원 (월 125만원)	1,535만원 (월 128만원)	1,582만원 (월 132만원)

II

공평한 세부담을 위해 조세당국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1.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각종 소득공제의 신설과 확대, 세율의 인하 등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부담 경감조치를 취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규모는 연평균 1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표 7] 근로자에 대한 최근의 세제지원 내용

'05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04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세율 1%P 인하 : 9%~36% ⇒ 8%~35% 장애인추가공제 확대 : 100만원 ⇒ 200만원 표준공제 확대 : 60만원 ⇒ 1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교육비공제 확대 : 500만원 ⇒ 7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확대 : 600만원 ⇒ 1,000만원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 1,500만원 이하 47.5% ⇒ 50% 결혼비·이사비·장례비 각 100만원 공제(신설)

2.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도록 2000년부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카드 복권추첨 및 가맹점 가입확대를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용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표 10]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점유비율

(단위: 십억원, %)

연 도	'90	'94	'00	'02	'03	'04	'05
신용카드	5,323	18,875	79,592	174,023	170,529	167,096	190,463
민간소비지출	93,505	175,969	312,300	381,063	389,177	400,696	424,630
비 율	5.7	10.7	25.5	45.7	43.8	41.7	44.9

※ 자료 :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액현금거래를 양성화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05년은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동시 가두 캠페인,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기피사업자에 대한 행정 지도 등의 노력과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 발급금액 18.6조원, 발급건수 4.5억 건, 가맹점 113만개에 달하였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 18조원 달성('94년)에 10년 이상 걸린 것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6년에도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학원, 집단상가 등 취약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주부·직장인·대학생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과세 포착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05년 민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대상 215조원의 약 75% 정도(161조원)가 신용카드·현금영수

[표 11] 민간소비지출의 과세포착률

(단위 : 조원)

연도		2005	2004
민간소비지출 중 대상금액	①	215.3	203.2
신용카드 중 해당금액	②	143.4	125.0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③	17.8	-
인프라포착금액 계	②+③	161.2	125.0
인프라포착 비율	(②+③)/①	74.9%	61.5%

증 사용에 의하여 과세표준으로 자동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공공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2005년 12월 말 현재 1,900여 개 공공기관으로부터 86종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과세자료는 국세통합시스템(TIS)과 연계하여 수입금액 검증, 세적 확인 등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성실신고 담보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기장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간편장부 홍보, 기장신고 지도와 함께 무기장 가산세율을 상향조정('04년 귀속부터, 10% → 20%)하는 등 기장신고를 유도해 왔습니다.

특히, '02년 귀속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여 증빙수취 관행을 확립하고, 장부기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장신고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12] 연도별 기장신고율

(단위 : 천명, %)

귀속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기장대상인원	1,536	1,741	1,942	2,031	2,133
기장신고인원	680	790	919	1,018	1,144
기장신고율	44.3	45.4	47.3	50.1	53.6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 비보험병과 중심의 일부 의료업, 학원 등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신고성실도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과표현실화를 위한 세원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원관리 노력으로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불균형

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3. 세부담 형평과 국민개납(國民皆納), 소득과약 수준을 높여야 가능합니다.

그간 조세당국은 소득이 100% 노출되는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수준이 높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각종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인프라 확충·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등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수준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공평을 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혜택 확대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근로자 비율이 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소득이 있는 경우 누구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의 유지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국민개납(國民皆納)' 원칙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국민개납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 수준을 더욱 높여 가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 수준이 높아져야 소득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상화할 수 있고 성실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도 적정수준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III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1. 과세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및 과세자료제출법 등 기존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별도의 세무간섭 없이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소득과약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세금경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소득전문직, 집단상가 등 취약 업종의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현금영수증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도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거부를 신고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포상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벌과금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는 세부담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청에서는 '05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세금탈루가 심한 대표적인 업종·유형에 속하는 사업자를 엄선하여 매분기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06년부터는 취약업종 대표사업자 약 10만명(1차로 전문직, 유흥업소 등 4만여 명 관리대상 선정)에 대해 신고내용·사업실상 등을 전산 관리하여,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는 일회성 접근이 아닌,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 14 편

체납세금 정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 I. 체납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 II. 체납세금 규모, 보다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 III. 세금체납, 그 오해와 진실
- IV. 체납처분에서도 '따뜻한 세정'을 펼쳐갑니다.

I 체납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언론에 비친 체납세금

“작년 체납국세 사상최대 19조...”
“고액체납자가 고급빌라에 살면서 호화생활...”

우리가 언론을 통하여 종종 접하게 되는 체납에 대한 보도내용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보도를 접하면 “누구는 세금 안 내고도 잘 사는데, 나만 바보같이 성실하게 세금 내는 것 아냐? 도대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체납세금이 이렇게 많아?”하는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체납세금은 어떻게 발생하며, 체납자는 어떠한 납세자들인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 체납자는 모두 부도덕한 납세자들인가?

일부 납세자들이 세무서에서 보낸 ‘언제까지 얼마를 은행 등에 납부하십시오’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고도 해당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방송되는 TV프로그램이나 보도내용을 보면 체

납자의 대부분이 매우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방송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체납자처럼 재산을 빼돌려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하고는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부도덕한 체납자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체납은 영업부진·부도·폐업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경색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제 전체의 경기가 좋으나 나쁘냐(경기변동), 어떤 업종의 마진폭이나 판매량이 어떠한가(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영업부진·부도·폐업 등이 발생하고, 개별 납세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세금체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부도덕한 납세자라고 곧바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량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체납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노력과 함께,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II 체납세금 규모, 보다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1. 체납세금, 과연 그렇게 많을까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입는 옷도 비례하여 커지게 되듯이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세수입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체납국세의 절대규모도 비례하여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 등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체납세금이 무려 19조원이나 되는 것이 사실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체납규모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2. 체납국세 규모에 대한 합리적 인식

‘홍길동 씨, 당신의 부채(빚)는 얼마나 되지요’ 하고 물어 보았을 때, 홍길동 씨는 현재 시점에서 자신이 갚아야 할 부채 액수를 대답할 것입니다. 홍길동 씨에게 과거에 빌렸다가 이미 갚아 버린 빚도 부채 규모에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한다면, 과연 홍길동 씨가 동의할까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체납발생총액’은 체납규모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체납국세 규모라고 보도하는 19조원은, 「전년도에 현금징수 등 체납정리가 되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과 「당해연도 중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발생한 국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금액을 ‘체납발생총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연도말 등의 특정 시점에 남아 있는 체납국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혹은 당해연도에 체납이 발생하였지만 연도 중에 현금납부

한 국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무재산 등으로 인하여 이미 결손처분된 체납국세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앞의 홍길동 씨의 예에 비추어 보면 ‘지난 1년 동안 빌렸던 돈 모두를 합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갚아버린 돈’도 포함되어 있어서 부채 규모를 나타내기에는 부적당한 것이지요.

■ 체납규모는 ‘미정리체납액’으로 파악해야 합리적입니다.

체납발생총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체납정리의 대상이 되는 전체 모수(母數)를 확정함으로써 연간 체납액 현황, 정리실적에 관한 관리·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즉, 체납이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대상을 분명하게 확정해야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개념이 체납발생총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납발생총액 중 약 70~80% 정도는 현금징수, 결손처분 등의 방법으로 연도 중에 정리되고, 사업부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약 20~30% 정도가 계속 정리대상 체납액으로 남게 됩니다.

체납국세의 규모가 얼마인지 올바르게 파악하는 방법은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체납액, 즉 ‘미정리체납액’을 특정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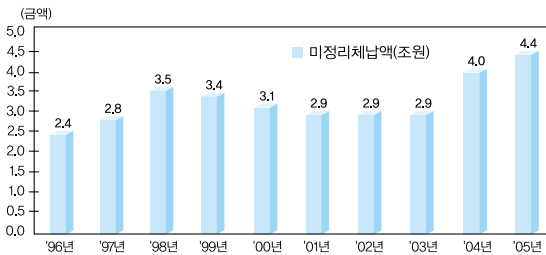
앞의 홍길동 씨의 예에 비추어 보면, ‘빌렸다가 아직 갚지 못한 돈’을 특정 시점에서 산정하는 경우 부채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되겠지요. 여기에는 ‘이미 갚아 버린 돈’은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채의 규모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 미정리체납액은 체납발생총액의 23% 수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국세 세입규모의 증가에 비례하여 체납국세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5년말 현재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미정리체납액 규모는 4.4조원이며 이는 체납발생총액의 22.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림] 연도말 미정리체납액 규모



III 세금체납, 그 오해와 진실

1. 체납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는가?

■ 독촉장 발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15일 이내에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이 발부되며, 독촉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철저한 재산조사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각종 권리, 매출채권, 금융자산 등 체납자가 보유하는 모든 소유재산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발생소득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체납정리를 위하여 구축된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부도덕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추적조사 전담팀'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 재산 압류

재산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로 인하여 납세자는 당해 자산에 대한 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 매각절차

압류 이후에도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자산,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고,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공매를 통한 매각절차를 집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매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한편, 철저한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손처분 후에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세금체납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국세를 체납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므로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무재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납자의 보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각종 전산인프라를 개발하여 재산 추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본점에 대한 일괄조회*, 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 등 다양한 체납 정리인프라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유무를 금융기관 본점에 한꺼번에 조회하여 예금·주식압류 등 체납정리에 활용

* 이자·배당 소득자료 활용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이자·배당 소득자료에 의하여 금융자산을 확인하여 예금·주식 압류 등 체납정리에 활용

이처럼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철저히 파악되고 있으므로 세금납부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결코 회피할 수 없습니다.

■ 재산을 타인명으로 은닉하면 추적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부도덕한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체납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05년 중에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1,04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2,666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06년 4월부터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건전한 고발의식을 기반으로 은닉재산의 포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 국세를 체납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째,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최고 60개월 동안 총 72%의 증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둘째,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게 되어 귀중한 자산이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실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일정액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제공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신규대출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영업허가 취소, 출국 규제 등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관보 등에 명단이 공개되어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 결손처분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재산보유 여부 등을 검색하고, 확인된 재산·소득이 없을 경우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소멸시효(5년) 경과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재산·소득 변동 여부에 대하여 각종 체납정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계속하게 되며, 재산·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여 체납국세 납부 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수한 체납세금은 최근 5년간 3조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IV 체납처분에서도 ‘따뜻한 세정’을 펼쳐갑니다.

1. 탄력적인 체납처분으로 서민경제 회복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공매과정에서 체납자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매대상 물건의 종류, 체납자의 경제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합니다”, “공매중지는 곤란 합니다” 등의 획일적인 체납처분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의 탄력적 운영 주요 내용

- 체납자의 실상을 확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의 탄력적 운영
- 소액예금 등에 대한 압류해제 적극 검토
- 3개월 이하 생계비 해당 예금잔액, 자녀교육비·의료비 등
- 질병·재해 등에 대비한 소액불입 보장성보험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잔액
- 중소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긴급한 자금

그러나,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상을 파악하고 ‘국세징수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상 압류금지재산 관련규정을 최대한 넓게 해석하여 소액예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하는 등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체납자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공매를 유예함으로써 주거를 보호하고 사회 공동체 기본단위인 가정의 존립을

가능케 하여 “기본생활은 유지하면서 체납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공매를 유예하여 서민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류물건 공매유예 확대 주요 내용

- 공매유예 확대 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실제 거주 주택,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 공매유예 확대 기준
- 유예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 분납계획제출 및 공매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공매유예 후 사후 관리
- 유예 후 새로운 체납발생시 유예취소 및 즉시 공매속행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승인변경 가능

앞으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납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체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IPF**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정책 ·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경제적 영향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12년 만에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회복하고 주지사도 과반수를 장악. 전문가들은 집권 공화당의 패인으로 이라크戰 장기화, 복핵사태 등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지적

경제정책에 있어 민주당은 노조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저 임금 인상, FTA를 통한 일자리 유출 반대, 감세 영구화 저지, 석유 및 제약업계에 대한 보조금 철폐, 기업규제 완화 반대 등을 주장해 공화당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평가

그러나 민주당의 반기업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줄속정책 견제, 양당의 상호 감시 등으로 경제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 다만, 2007년 7월에 만료되는 통상촉진권한(TPA)의 연장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한미 FTA협상 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제기

1. 중간선거 결과

- 11월 7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과 주지사 선거 모두에서 승리하였으며 12년 만에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

1946년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상·하원 구성

	1946	51	56	61	66	71	
대통령	D	D	R	R	D	R	
상원	D	R	D	D	D	D	
하원	R	R	D	D	D	D	
	1976	81	86	91	96	2001	06
대통령	R	D	R	R	D	D	R
상원	D	D	R	R	D	R	D
하원	D	D	D	D	D	R	R

주: D 민주당 대통령, 의회 다수당 R 공화당 대통령, 의회 다수당

-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의원 전체 435명과 상원의원 100명 중 33명 및 주지사 36명을 선출했으며, 민주당은 하원의원 201명 → 232명(+31), 상원의원 44명 → 49명(+5)으로 늘어났고* 주지사도 22명 → 28명(+6)으로 과반수를 장악

*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51석이 필요하며 현재 48을 확보했고 무소속 2석도 민주당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어 재검표 중인 1석의 향방에 따라 다수당이 결정

하원의 경우 현재 10석이 개표중이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

- 이에 따라 미국은 2000년 이후 6년 만에 행정부와 의회가 다른 당에 의해 지배

각 정당별 의석변화

	기 존			선거후			증 감	
	민주당	공화당	기타	민주당	공화당	기타	민주당	공화당
상 원 (100석)	44	55	무소속:1	49 ¹⁾	49	무소속:2 ²⁾	+5	-6
하 원 (435석)	201	229	무소속:1 공 석:4	232 ³⁾	203	-	+31	-26
주지사 (50개주)	22	28	-	28	22	-	+6	-6

주: 1) 재검표 중 1석을 민주당에 포함 2)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
3) 10석이 개표중이나 민주당 3석, 공화당 7석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 결과

■ 집권 공화당의 패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라크戰 장기화, 북핵사태 등 공화당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공화당 폴리 의원의 성추문 등의 악재가 겹친 데다 소득격차 확대와 같은 경제적 요인도 가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선거 前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유권자들은 이라크戰(49%), 테러예방(46%), 경제문제(33%), 불법이민(29%) 등의 순으로 응답

• 경제적 요인으로는 부시 행정부가 고성장을 유지했음에도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등 소득격차 확대로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점이 부각

* 2001년 이후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 지속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2001년 10월 64% → 06년 10월 38%, NY Times)

2. 양당의 경제정책 비교

■ 노조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FTA를 통한 일자리 유출을 반대하는 반면 보수층과 대기업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은 감세, 규제완화, 자유무역 등을 지지

■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당은 이미 소득세, 상속세 등의 한시적 감면을 시행한 데 이어 이를 영구화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감세 영구화에 반대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입장

- 또한 민주당은 공화당이 무리한 감세, 군비지출 확대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확대시킨 점을 지적하고 재정건전화화를 위한 pay-as-you-go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공약

* 새로운 세출 확대는 다른 세출의 감소 또는 증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적자 확대를 억제

■ 기업정책의 경우 민주당은 대형 석유회사, 제약회사 등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축소하는 등 공화당에 비해 반기업적인 정책을 제시

- 석유업계에 대해서는 가격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석유의 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에너지, 하이브리드 기술 등의 개발을 지원하며, 제약업계에 대해서는 Medicare 프로그램에 가입된 노약자에게 공급되는 약값을 정부가 직접 협상하고 복제약(generic drug)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실시하여 제약업계의 경쟁을 유도

- 또한 공화당이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완화, 집단소송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해 왔으나 민주당은 동 규제의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

* 엔론사태 이후 기업의 금융사기와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공화당과 부시 행정부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동법의 완화를 추진



- 최저임금* 인상안은 올해 6월과 8월중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으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인상이 재추진될 전망

*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시간당 5.15달러를 유지함에 따라 실질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

■ 대외경제정책의 경우 부시행정부와 공화당은 2004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타결하고 현재 한국, 말레이시아 등과 FTA를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에 적극적인 반면 민주당은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는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

* CAFTA 비준에 찬성한 민주당 하원의원은 15명에 불과하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Sherrod Brown, Bob Casey, Jim Webb 등)도 FTA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존 협정(NAFTA, CAFTA 등)의 재검토를 주장

■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어느 정도의 수정은 불가피하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대폭적인 경제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부시 행정부의 보수 성향이 완화되면서 중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였으나 공화당은 의도적인 의사진행 방해(filibuster*) 등의 전략을 이용하여 의안 처리를 막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 소수당이 합법적인 방법(정시간의 질의,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의안 처리를 연기시켜 회기 내 투표를 저지하는 전략

• 다수당 의석이 60%를 상회할 경우에만 의사진행 방해를 무시하고 즉시 투표로 결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거부한 의안을 입법화하려면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민주당 지지 법안의 단독 통과 불가

- 따라서 민주·공화 양당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감세 영구화, 최저임금 인상 등은 입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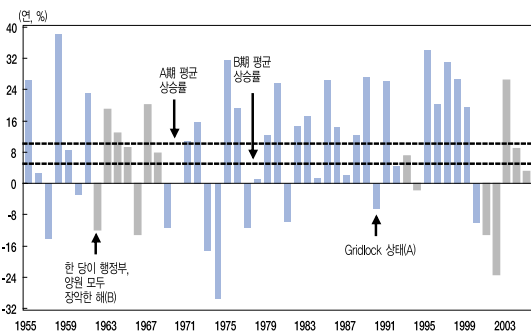
민주당과 공화당 경제정책의 주요 차이점

	민주당	공화당 및 부시행정부
감 세	·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폐지 · 기존 감세정책 영구화 반대	· 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세 실현 · 기존 감세정책 영구화 추진
재정균형	· 재정건전화 원칙(pay-as-you-go) 도입	· 감세, 군비지출 확대 (재정적자 지속적 확대)
에너지정책	· 대형 석유회사에 대한 보조금 폐지로 확보된 재원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 석유업체의 가격담합 감시 강화	· 알래스카 등 국내유전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추진
규 제	· 기업규제 완화 반대	· 기업회계기준 완화, 집단소송 요건 강화 등 추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5.15달러 → 7.25달러)	· 최저임금 인상 반대
대외무역	· FTA 반대	· 각국과의 FTA 적극 추진

3.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민주당의 반기업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줄속정책 견제 및 양당의 상호 감시로 큰 폭의 정책변화가 어려워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
-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한 정당이 행정부와 양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보다 3곳 중 한 곳을 다른 정당이 장악한 경우(gridlock) 주식시장이 더 높은 수익을 실현
-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gridlock 상황에서는 규제법안의 입법화가 어려워 제도권의 간섭 감소로 금융시장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Merrill Lynch에 따르면 1955년 이후 gridlock 상황에서는 주가(S&P500)가 연평균 10% 상승한 반면 한당이 행정부와 양원을 모두 장악한 시기에는 4.9% 상승에 그침

행정부 및 의회 구성에 따른 S&P500 지수 상승률 비교



-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채권금리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 달러화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1955년 이후 gridlock 상황에서는 10년만기 국채금리

가 연평균 20bp 하락한 반면 한 당이 행정부와 양원을 장악한 시기에는 50bp 상승을 기록

- 또한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의 행정부 견제로 중동에 유화적인 정책이 기대되고 이는 미국내 석유소비 감축 정책과 더불어 유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WSJ의 경제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65.7%(23/35명)가 현재와 같이 공화당이 행정부와 양원을 지배하는 상황보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경우 미국경제에 더 유리한 것으로 응답

■ 산업별로는 민주당의 승리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전망

- 방위산업의 경우 민주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군을 주장하는 등 국방비 감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가 악재로 작용
- 에너지산업은 민주당의 공약인 보조금 지급 중단, 환경 보존과 석유의존도 감소를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등이 진전될 경우 타격을 입을 가능성
- 제약업계도 보조금 폐지, 복제약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되면 거대 제약업체는 현재보다 경영환경 악화 예상
-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 높은 소매업의 경우 노조에 우호적인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 FTA 반대 등으로 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소지
- 일반 제조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호무역 강화, 해외 생산기지 이전 반대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예상

■ 한편 의회 다수당의 교체는 한미 FTA협상, 북핵문제 대처방식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FTA의 경우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2007년 7월 만료



되는 통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의 연장이 불투명*하며 이는 향후 FTA협상 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

* 2008년 대선을 고려한다면 노조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상촉진권한을 연장시켜 줄 가능성이 낮아 의회 비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한국과의 FTA협상 및 도하라운드 등에 제한적인 TPA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Financial Times, 2006. 11. 6)

- 북핵문제의 경우 전문가들은 북·미 양자협상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득세, 부시 행정부의 국방장관 경질 등에 비추어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이 다소 후퇴할 것으로 전망

[연합인포맥스 2006-11-09]

민주당 승리 후 7~8일 금융시장에서 채권 가격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은 이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었다. 정부 지출에 제동이 걸린다면 국제 발행 수요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고 이는 곧 채권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변화는 공화당 정부가 추진해온 감세정책이다. 공화당은 대부분 2010년에 종료되는 현재 감세정책을 이후에도 영구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는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

세금인하 카드는 더 이상 없다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받는 석유업계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려 폭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석유업계 감세 폐기법을 다시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이 기대를 걸 대목은 민주당의 민생 우선 경제정책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내정자는 지난 7일 투표에 앞서 의회를 장악하면 처음 펼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의료복지 개선, 교육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저 임금은 97년 이래 시간당 5.15달러에 머물고 있는 기본봉을 시간당 6.85달러까지 3년 내에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의회에 이미 상정해 놓고 있다. 명실공히 다수당을 장악한 상·하원에서 통과시키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의료복지 개선과 관련해 민주당은 약품가격 인하를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내걸었다. 특히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과 관련해 제약업체가 비협조적이라며 공세를 퍼 제약업체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美 감세정책 제동 · 보호무역주의로 선회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은 경제정책에도 무게중심 이동을 예고한다.

공화당의 확대 지향적 재정 운용과 감세정책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부를 공화당이 계속 지배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만으로 경제정책 방향이 일거에 선회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에 의회 견제가 보다 강력해져 이전보다 균형을 잡아 가는 변화 정도로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가.

◆ 재정지출 축소 지향

민주당 경제정책은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여 재정적자 구조를 해소해 나가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지출 억제는 이런 차원에서 나온 카드다.

◆ 보호주의의 무역 정책 전면 등장

대의 경제정책에서 민주당 보호주의의 색채는 전통적인 특징으로 이미 각인돼 있다.

보호주의의 정책은 대미 최대 무역흑자국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와 개별 국가간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 제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으로 유력한 찰스 랭글 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무역을 위해 중국 환율과 통상정책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벌써 못을 박고 있다. 필요하다면 현재 계류돼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법안을 언제든지 통과시켜 압박하려는 태세다.

다자무역체제나 양자무역협정 등으로 추진돼온 자유무역 기류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의회가 백악관에 부여하고 있는 ‘무역협상 신속처리권한(TPA)’이 내년 7월까지만 유효한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 의회는 이를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 들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대외무역협상에서 국내 노동시장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일단 결렬된 도하라운드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이런 전제를 내세우면 다자무역체제 구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뻔하다.

말레이시아나 한국 등 개별 국가와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후 많은 전문가가 한·미 FTA 협상에 암운이 드리워졌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보호주의 경향은 자동차업체처럼 고전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는 낭보가 될 수 있다. 외국 자동차 공세에 찢쩍대고 있는 미국 자동차업체를 대놓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산업 허브인 미시간주 카를 레빈 상원의원은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외국 업체들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며 그 배후에는 그 나라 정부들도 도사리고 있다”며 “이런 지원이 결국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주장했다.

한쪽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창해왔던 미국이 내심으로는 이 같은 국수주의적 보호무역정책에 깊숙이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매일경제 2006-11-10]

日, 4조원 규모 기업 감세 추진

일본 정부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덜어 주는 감세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성장을 중시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감가상각제도를 기업에 보다 유리하게 고치는 것이다. 기계류 등 각종 설비 장치의 감가상각비를 95%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세제를 내년부터 전액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감가상각비가 높게 인정되면 기업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그만큼 감세 효과를 얻게 된다.

일본 정부는 5,000억엔 규모의 감세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5% 증가분에 대해서는 5~7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는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일본 재계에서는 “미국, 유럽과 같이 감가상각비를 100%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밖에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 대대적인 기업 감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연구개발 비용 및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7,000억엔 규모의 감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감세 정책이 정부 재정 악화와 개인 납세자의 반발 등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눈덩이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는 2002~2006년 간의 증세 정책으로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3조 9,000억엔의



세금을 더 부과했다. 또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현행 5%인 소비세율의 대폭 인상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2006-11-07]

영국 블레어 총리,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촉구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즉각적인 대처를 촉구했음.

앞서,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텐卿은 700페이지의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경우 그로 인해 세계 경제는 20% 가량 축소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대처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만으로도 그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레어 총리는 “스텐卿의 검토 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이미 과도한 수준에 달했으며 그 결과가 매우 비극적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다”고 논평했음.

또한, 스텐卿의 보고서 발표와 같은 시기에 유엔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도 “영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음.

[국회 일일해외신문 BBC 2006-10-31]

英 법인세 인하 고민

유럽연합(EU)에서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영국 세무당국이 법인세 인하경쟁에 동참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최근 영국내 다국적 기업 가운데 보험업체 2개가 주소를 법인세가 낮은 버뮤다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영국의 대기업 중 하나인 GUS는 영업활동의 대부분을 아일랜드로 옮겼다. 아일랜드의 법인세가 영국의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2년 동안 조세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에 유럽 지주회사 주소지로 영국을 선택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EU 내 법인세율은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회원국별로 천차만별이다.

독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3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 37.3%, 스페인 및 몰타 각 35.0%, 영국 30% 순인 반면 키프로스 10.0%, 아일랜드 12.5%,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가 15.0% 등의 순으로 낮다.

영국이 법인세를 현 30%에서 EU 평균인 25% 수준으로 내릴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인하폭은 다국적 기업의 이탈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 분명하고, 대폭 인하하자니 당장 세수에 구멍이 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의 조세정책 수석자문위원을 지낸 크리스 웨일스는 EU 회원국들의 법인세가 앞으로 평균 15%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영국 세무당국의 입장에서 지난달 유럽법원의 새 판결로 다국적기업들이 유럽에서 법인세가 낮은 국가들에 지사를 설립해 절세하는 방안이 한결 쉬워진 점도 큰 부담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거대 음료회사 캐드버리 슈웨프스가 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럽내 세금이 낮은 국가들에 지사 등을 설치하더라도 실제 경제활동을 수반할 경우 세금 회피 행위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EU 법원 판결로 영국이 기업의 해외 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세무당국이 해외 이윤 과세를 폐기할 경우 기업들에 영국에서 돈을 빌려 해외로 투자하는 행위를 촉발할 것이고 이는 금리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금리 세금공제 폐지는 다국적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로부터도 엄청난 반발을 살 것으로 영국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선 EU 내에서 우려하는 만큼 법인세 인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EU 내 법인세 인하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도한 인하경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영국을 보다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며, 영국 정부가 이를 외면할 경우 기업들도 영국을 외면할 것이란 점에서 영국 세무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2006-10-16]



재정 정책 ·

뉴욕채권 국채가, 재정지출 축소 전망 상승

-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줄었다. -

미국 국채가격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재정 지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상승했다.

10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만기 국채가격은 전날보다 13/32포인트 오른 100 13 /32,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은 5bp 가까이 떨어진 연 4.58%에 마감됐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전날보다 3bp 가까이 내린 연 4.72%에 끝났다.

뉴욕 채권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국채발행 감소 예상 속에 해외투자자들의 국채입질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외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강한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국채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기금(FF) 금리선물은 내년 1월 기준금리가 연 5.00%로 25bp 인하될 가능성을 제로(0)퍼센트, 내년 3월 인하될 가능성을 34% 각각 가격에 반영했다.

한 시장관계자는 “12년 만에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재정지출 규모를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재정지출이 민주당에 의해 재동이 걸릴 것”이라면서 “이는 국채발행 물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고위인사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국채가격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전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 등으로 민주당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해외투자자들의 달러표시 자산 이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국채를 급격히 매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올들어 9월까지 중국의 대(對) 미국 무역흑자가 1,663억달러를 나타내 작년의 최고 수준인 2,020억달러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점이 민주당의 대 중국 압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격화로 국채와 달러화를 매도할 경우 국채시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향후 국채시장의 움직임은 국내 달러들보다는 중국에 의해 컨트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합인포맥스 2006-11-11]

일본, 고용보험의 국고부담금 폐지 방침

재정제도심의회는 31일의 회의에서 실업수당 등에 충당하는 고용보험 재원 중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국고부담금에 대하여 전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치함.

보험료의 적립금 잔고가 금년도 예산에서 3조 3,800억 엔에 이르는 등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11월 하순에 마련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건의에 전폐방침을 명기할 예정임.

국고부담액은 2006년도예산에서 3,939억엔이고, 나머

지 4분의 3 정도는 노사의 보험료로 조달하고 있음. 회의에서는 “고용된 자만이 대상인 보험에 국고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속출했음.

니시무로 회장은 회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고용 보험회계는 매우 건전하다. 노사각출만으로 조달한다. 국고 부담은 전폐해도 좋다”고 명언함. 심각한 불황시에는 국고부담을 재개하는 제도개정을 한 다음 내년도 예산부터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냄.

적립금을 소자녀화 대책 등 다른 재원으로 전용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는 “여유가 있으면 노사부담도 줄여야 한다. 다른 목적에 사용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썰기를 박았음.

[국회 일일해외신문 니혼게이지 2006-11-01]

中 연금개혁 칼 빼들었다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주식 10%를 연금펀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필요한 연금을 확보하면서 국유기업의 비유통주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펀드 개혁안인 셈이다.

FT는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국유기업 주식 10%를 연금펀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해당 부서와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이미 3년 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국유기업 주식이 대규모 유통될 것을 염려해 물량 부담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증시가 활황을 보이자 연금펀드 편입안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상하이 증시는 지난해 중반 이후 76% 상승했으며 이달 27일 홍콩과 상하이 증권시장에 동시 상장하는 공상은행의 기업공개(IPO) 규모가 220억달러(약 22조원)로 중국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중국 증시가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FT는 국유기업 지분을 연금펀드에 편입시킬 경우 중국 국유기업의 비유통주식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현재 국유기업 주식이 주식시장 전체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중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금펀드가 주가에 민감한 점을 고려할 때 국유기업 경영진들이 시장원리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신문은 최근 중국이 국유기업 배당금 지급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는 국유자산 개혁 조치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도 연금펀드 개혁안을 가속화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FT는 중국사회보장기금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중국 전체 인구 가운데 11%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약 1억 4,300만명) 비율이 2030년이 되면 28%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도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별도의 기금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 자산을 늘리고 국유기업을 시장 메커니즘 체계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국유기업도 다른 자산을 연금 부문으로 이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006-10-25]



유로지역 성장확대 배경과 향후 전망

유로지역은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8%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중에도 0.9%로 6년 만의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역내 성장을 주도

최근의 성장확대는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기업수익 개선과 더불어 투자가 확대된 데다 노동시장 개혁에 따른 실업률 하락과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민간소비도 증가한 데 주로 기인

IMF 등 주요기관들은 금년중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2.4% 내외로 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겠으나 내년에는 미국경제 둔화, 유로화 강세, 독일과 이탈리아의 재정긴축 등으로 2% 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1. 최근 경제동향

- 유로지역은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8%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중에도 0.9%로 6년 만의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미국(0.6%)과 영국(0.7%)을 상회하는 강한 성장세 지속

- 이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한 가운데 고정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소비 증가세도 확대된 데 주로 기인

유로지역 실질GDP 성장률 추이(전기대비)

(단위 : %)

	2004	2005					2006	
		연간	1/4	2/4	3/4	4/4	1/4	2/4
GDP성장률	1.9	1.4	0.4	0.4	0.6	0.3	0.8	0.9
민간소비	1.5	1.3	0.0	0.4	0.7	0.1	0.7	0.3
고정투자	2.1	2.7	0.5	1.2	1.2	0.4	0.9	2.1
정부지출	1.2	1.4	0.1	0.6	0.7	0.2	0.8	0.4
수출	6.8	4.2	-0.5	1.9	2.6	0.9	3.9	1.3

자료 : EU 통계청

- 국가별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

- 독일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실업률 하락과 월드컵 개최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9%로 2000년 이후 최고치 기록

- 프랑스도 고정투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민간소비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1.2%로 5년 만의 최고치 기록

유로지역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전기대비)

(단위 : %)

	2004	2005					2006	
		연간	1/4	2/4	3/4	4/4	1/4	2/4
독 일	1.2	0.9	0.6	0.3	0.5	0.3	0.7	0.9
프랑스	2.3	1.2	0.1	0.0	0.7	0.3	0.4	1.2
이탈리아	1.1	0.0	-0.4	0.6	0.3	0.0	0.7	0.5
스페인	3.2	3.5	0.9	0.8	0.8	1.0	0.9	0.9
네덜란드	2.0	1.5	0.2	0.7	0.7	0.6	0.3	1.0
벨기에	2.6	1.2	0.1	0.3	0.5	0.6	0.9	0.8
포르투갈	1.2	0.4	0.2	1.2	-0.9	0.5	0.3	0.9

자료 : EU 통계청

2. 성장세 확대 배경

1)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에 따른 수출 호조

- 2006년 상반기중 세계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유로지역의 수출이 1·4분기중 전기대비 3.9%, 2·4분기중 1.3% 확대되면서 유로지역의 성장을 견인

- 덴마크의 Danske Bank는 상반기중 세계경제 성장이 유로지역 성장에 미친 기여도가 0.6%p로 금리, 환율 및 유로지역의 재정정책보다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

유로지역의 요인별 경제성장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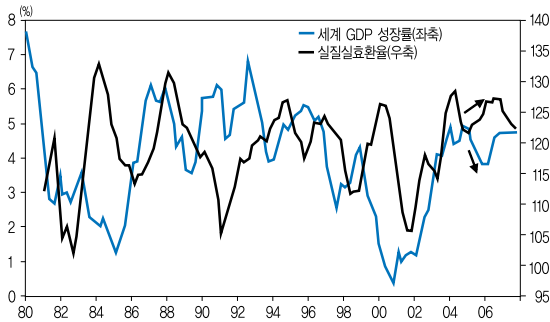
(단위 : %, p)

	2005년 상반기(A)	2006년 상반기(B)	B-A
세계경제성장	0.0	0.6	0.6
실질금리	0.0	0.3	0.3
환율	-0.5	0.1	0.6
재정정책	-0.5	0.1	0.6
유가	-0.4	-0.7	-0.3

자료: Danske Bank

- Barclays Capital도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와 유로화 약세를 최근 유로지역 경제 호조의 주요인으로 지적

세계경제 성장률과 유로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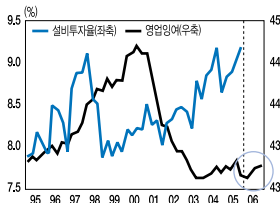


자료: Barclays Capital

2) 기업수의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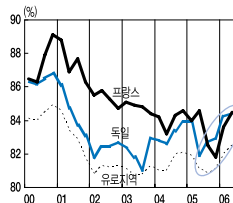
■ 유로지역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설비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설비투자가 점차 확대

유로지역 기업수의 및 설비투자율 추이



자료: INSEE

유로지역 설비가동률 추이



자료: Bloomberg

3) 독일 건설투자 회복세

■ 그동안 부진상을 보였던 독일의 건설투자가 금년 1·4분기 전기대비 -2.9%에서 2·4분기중 전기대비 4.6%로 크게 확대

- WestLB은행은 금년중 독일의 건설투자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

• 이는 주택소유보조금* 폐지(2006. 1) 이전에 주택허가 및 신규수주가 크게 늘어난 데다 부가가치세율 인상(2007. 1)을 앞두고 하반기중 건설비 절감을 위한 주택건축이 증가하는 데 주로 기인

* 연소득이 일정액(독신가구 : 7만유로, 부부가구 : 14만유로, 자녀 1인당 3만유로 추가)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주택 구입시에 1,250유로(자녀 1인당 800유로 추가)를 한도로 주택구매금액의 약 1%를 보조

독일 건설투자 추이



자료: WestLB

독일 주택허가 및 신규수주 추이



자료: HVB

4) 노동시장 개혁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

■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 확대

- 독일은 2005년부터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hartz IV법*을 시행한 데 이어 2005년 11월 취임한 Merkel 총리는 기업주가 신규 채용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인턴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장기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유인, 실업수당 제도 개선, 저임금 일자리 확대 등을 포함

- 프랑스는 2005년 3월 의회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신고용계약제(CNE: contrat nouvelles embauches)**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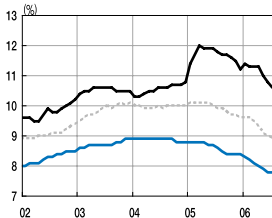
* 주 35시간 근로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13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

** 종업원 20인 이하 기업의 신규 채용자를 2년 내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

• Le Monde紙(8.3)는 CNE 시행 1년 만에 동 방식에 의한 고용자수가 55만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인 이하 기업 신규채용의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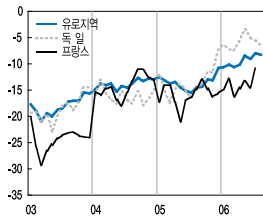
■ 노동시장 개혁으로 유로지역 실업률은 2004년 4월부터 꾸준히 하락하여 2006년 7월에 7.8%로 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 추세를 지속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자료: EU통계청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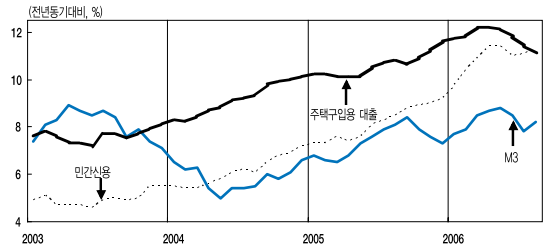
자료: EU집행위

5) 민간신용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로 인한 민간신용 확대로 민간 소비 증가

- 최근 통화량(M3)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7~8%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비금융기업 및 주택대출 확대로 민간신용 증가율이 금년 2월부터 7개월 연속 10%를 상회

유로지역의 통화 증가율 추이



자료: ECB

3. 향후 전망

1)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6년 만의 최고치 예상

■ IMF 등 주요기관들은 금년중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수출 호조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6년 만의 최고치인 2.4%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ECB는 8월 31일 금년중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6월)인 2.1%에서 2.5%로 상향 수정하였으며, IMF는 9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4%로 예상

- 상당수 투자은행들도 금년중 유로지역이 2.4~2.6% 성장할 것으로 예상

2) 2007년에는 성장세 둔화 전망

■ 그러나 2007년중에는 GDP 성장률이 2%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ECB와 IMF는 각각 2.1%, 2.0%로 전망하였으며, 상당수 투자은행들도 1.6~2.1%로 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

유로지역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

전망기관	전망일	2005	2006	2007
ECB	8.31	1.4	2.5	2.1
OECD	9.6		2.7	2.1 ^h
IMF	9.14		2.4	2.0
Deutsche Bank	9.25		2.6	1.6
Barclays Capital	9.21		2.6	2.1
Danske Bank	9.6		2.5	1.8

주: 1) 5. 23일 전망치

- 주택경기 냉각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미국경제가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의 영향이 유로지역 경제에도 파급될 것으로 예상

* Barclays Capital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지면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하고, 미국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질 경우 유로지역은 0.2%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세계경제 불균형 조정이 진전되고 금리인상에 따른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유로지역 수출 증가세 둔화 예상

• ECB는 금년중 수출이 7.4% 증가하겠으나 내년에는 유로화 강세 등으로 5.0%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

주요 투자은행의 유로화 환율 전망

	2006.12월말	2007.3월말	6월말	9월말
달러/유로 환율	1.3020	1.3146	1.3213	1.3169

주: 15개 투자은행의 9월 중순 전망치 평균

- 성장확대, 고유가,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ECB의 금리인상 기초가 이어지는 것도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

• 대다수 투자은행들의 전망도 금년말까지 ECB가 기준금리를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25bp인상하여 3.5%에 이르고 2007년중에는 3.5~3.7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주요 투자은행의 ECB 기준금리 전망 (응답 투자은행 수)

기준금리(%)	3.0(현수준)	3.25	3.5	3.75	4.0 이상	계
2006.4/4	0	4	12	0	0	16
2007.1/4	0	1	13	2	2	16
2/4	0	1	9	6	0	16
3/4	0	0	8	5	2	15

주: 2006. 9. 11~9. 20일중 16개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 Bloomberg

- 독일과 이탈리아의 재정긴축도 내년중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IMF는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독일 경제성장률을 내년중 0.5%p를 낮출 것으로 전망

• 이탈리아의 경우도 재정 적자/GDP 비율이 4.3%(2005년)에 달해 재정긴축 강화가 불가피

[한국은행 주간해외 2006-10-17]



| 정책 흐름 |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외
- 사회보험 적용 · 징수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 이 자료는 2006년 11월 15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전문입니다.

I. 최근 부동산 시장 진단

- ◇ 최근 집값 상승은 공급정책의 시차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고분양가 등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된 데 기인

1. 수요측면

◎ '9월 이후 발생한 전세난이 소형 주택에 대한 매수세 촉발

- (전세난 원인) 계절적 요인, 강북재개발 이주수요 등 일시적 요인과 전세의 월세전환 등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되면서 강북 및 수도권 전역의 소형 주택 매수세 증가

◎ 은평·과주 등의 고분양가 논란이 불안심리 및 先매수 수요 확산

- (고분양가 원인) 도시 쾌적성 강조에 따른 저밀도 개발, 과도한 녹지비율 규제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양가 전가 등에 기인
- ⇒ 은평뉴타운 및 과주신도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및 선매수 수요가 급속히 확산

◎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 대출 취급이 매수 수요를 측면 지원

- 주택담보대출은 6월 이후 다소 진정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9월 들어 증가세가 확대
-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조원)
: ('06.4월) 3.1 → (5월) 3.1 → (6월) 2.2 → (7월) 2.3 → (8월) 1.3 → (9월) 2.6 → (10월) 2.8

2. 공급측면

◎ (공공택지) 개발밀도 감소 및 공급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 존재

- (공급물량 축소 원인) 선계획·후개발 체제 도입에 따른 택지 규제 강화 및 친환경적 개발에 따른 개발밀도 저하 등
- * (1기 신도시): 분당 199인/ha, 평촌 329/ha, → (2기 신도시) 판교 95/ha, 김포 130/ha

- (공급 시차) '04년 이후 수도권택지개발이 본격 추진되었으나, 현재 택지확보에서 주택건설까지 약 4~5년의 시차가 존재

◎ (민간택지) 계획관리지역 및 다세대·다가구 규제 강화로 공급 위축

- 계획관리지역(舊 준농림지역) 내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적률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건설실적이 크게 감소

* 준도시지역 용적률 200%,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50%

- '90년대 전국 연평균 6만호 → '03년 이후 연평균 1만호 수준

-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일조권 및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면적비율 확대 등 규제강화로 공급 위축

* 다세대 주택 건설실적(수도권) : 47,472호(03년) → 8,674호(05년)

오피스텔 건설실적(전국) : 42,999호(03년) → 32,679호(05년)

⇒ 수도권 연평균 주택수요는 30만호 수준이나, '00~'05년중 연평균 27만호 공급, '05년 19,8만호, '06년 1~9월중 9.5만호 공급

II.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 공급물량을 조기에 충분히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여 주택가격 안정기반을 공고히 확립

◇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투기억제 시스템의 차질 없는 운용·집행 등을 통해 수요측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1. 공급확대

- 공공택지 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
 -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 추진
 -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 밀도 상향조정 ⇒ 8.9만호 추가 공급
 - 택지개발 기간단축 ⇒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 → 5~6.5년
-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 기존 도시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 유도
 - 계획관리지역 내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 다세대·다가구,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 상기 제도개선으로 '06~'10년중 공공택지 내 공급물량이 당초 74.2만호 → 86.7만호로 12.5만호 증가

2. 분양가 인하

- 택지조성비 절감 : 택지구 밖 기반시설비의 합리적 분담 등

- 중소형(25.7평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 상기 제도개선으로 택지공급가격 인하(10% 내외),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8% 내외) 등으로 약 25%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

3. 수요관리 방안 :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4. 서민주거 안정방안

- 장기 임대주택 비축·공급 확대

- 서민 주택금융 지원강화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확대 등

III.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방안

◇ 시장수급 균형을 통하여 근본적인 집값 안정기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빨리” 공급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

1. 수도권 주택소요 및 공급현황

1. 수도권 주택소요

- '06~'10년까지 수도권에서 필요한 주택은 年 30만호
- 기본소요 年 26만호(가구증가 15만, 소득증가 5만, 멸실 6만)에, 주택보급률을 제고('04년 93% → '12년 112%)하기 위한 소요 年 4만호를 포함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06.7) '00~'05년중 일반가구 증가는 연평균 19.1만호, 이 중 1인가구는 연평균 8.9만호 증가(1인가

구의 특성(보통가구에 비해 영속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택 이외 오피스텔 등에도 거주)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이 실주택 소요로 판단됨

- 1인가구 증가추이 및 수요특성, 주택매실, 현 주택재고의 세부구성(예 : 다가구를 거주호수로 감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택소요 재산정(update)작업을 지속할 계획

◆ 주거수요 및 실태조사('06.12 완료예정), 통계청 인구전망(전국 '06.11월말, 지역별 '07.5월 발표예정) 결과 등을 토대로,

- 주택종합계획(~'12년)을 수정('06.10착수, '07.6완료)하여 총량 및 지역별·유형별·규모별 소요 및 공급 계획 조정

* 통계청 가구전망('07.11월 예정)의 분석·활용도 추진

2.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

- '00년 ~'05년중 年平均 27만호가 공급되었으나, '02년 37.6만호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05년에는 19.8만호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0~05평균
수도권	240,985	304,396	376,248	297,289	205,719	197,901	270,423
(서울)	(96,936)	(116,590)	(159,767)	(115,755)	(58,122)	(51,797)	(99,828)

- 도심 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건축규제 강화, 先계획~後개발 체계('03.1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등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감소한 데 기인
-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과 非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의 민간주택 건설이 큰 폭으로 감소

- 참여정부는 민간부문 공급위축에 대처하여 공공택지 개발 확대, 기존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등을 통한 공급 확대정책을 추진

〈참여정부의 주요 공급확대 정책〉

'03년 10.29대책	- 판교·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주택 19만호 공급 - 광명·아산 등 역세권 주변을 주거단지로 개발 - 국민임대 100만호 등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추진
'05년 8·31정책	- 송파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1,500만평 추가확보 - 강북 등의 광역적 재정비 추진
'06년 8·31정책 1주년 회의	- '06~'12년까지 총 116.8천호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비축하여 전체 주택수의 12% 수준으로 확충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면적 확대	- 150만평('00) → 801('01) → 268('02) → 303('03) → 1,363('04) → 696('05) → 1,300('06추정)

- 그러나, 공공택지 확보부터 주택건설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여 아직까지 연 30만호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택지지구 지정에서 실제 주택건설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4~5년

* 도시기본계획변경 →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택지공급 → 주택건설

- '00~'03년('01년 제외)까지 공공택지 지정면적이 적어 '04년 이후의 주택건설 감소요인으로 작용

- 토지이용·건축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건설 위축에 대비, '04년 이후 공공택지 지정면적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아직 주택건설로 이어지는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상태

* 150만평('00) → 801('01) → 268('02) → 303('03) → 1,363('04) → 696('05) → 1,300('06추정)

- 또한, 친환경적 개발 강조에 따라 개발밀도가 감소하여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에 애로

-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비해 2기 신도시의 밀도가 크게 낮아지는 추세

* (1기) 분당 199인/ha, 평촌 329 → (2기) 판교 95, 김포 130, 파주 143

◆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가격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 공공택지 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을 확대하고
- 친환경적 국토·도시관리를 전제로 도시 건축규제 및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2. 주택공급 확대방안

- ◇ 개발밀도 상향, 개발절차 개선 → 공급물량 조기 확대
- ◇ 도시·건축규제 합리적 개선 → 민간 주택건설 촉진

1. 공공택지 물량의 조기확대

가.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 추진

- 8·31정책에 의한 추가소요 택지(1,500만평)의 확보와 장기 주택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신도시 개발 추진
- 현재까지 송파(205만평), 김포(+203만평), 양주(+134만평), 파주(+212만평), 검단(340만평) 개발을 통해 1,094만평 확보
- 나머지 택지(약 400만평)의 확보와 함께, - 민간택지 위축 가능성 및 '2011년 이후의 소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07 상반기부터 분당급 신도시 등을 순차적으로 계속 확보

나. 신도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밀도 상향조정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수도권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나 친환경 개발이 강조되면서 개발밀도가 낮아 지는 추세
- 주택공급 효과 및 신도시의 자족성이 떨어지고,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한 추가 택지개발이 불가피해지는 문제 발생
- * 1인당 주택수 : 수도권 254(전국 280), 일본 423, 미국 427, 독일 445
- * 개발밀도 : 282인/ha(1기 신도시) → 115인/ha(2기 신도시)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이유로 중밀도로 개발
- * 용적률 150%, 층고 최고 15층, 녹지율 25±5%

개선방안

-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지

역여건과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고, 녹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43천호 추가 공급(367천호 → 410천호)

◆ 조정안(김포·파주·광교·양주·송파·검단 신도시 평균)

- 개발밀도 : 118인/ha → 136인/ha (↑18인)
- 용적률 : 175% → 191% (↑16%p)
- 녹지율 : 31.6% → 27.2% (↓4.4%p)
- * 개별지구별로 실정에 맞게 녹지율 등을 조정할 계획
- * 밀도비교(인/ha) : 199(분당), 329(명춘) vs. 95(판교), 130(김포), 143(파주)
- * 英國도 최근 밀도제고 추세(런던 : '97년 120인/ha → '03년 168인/ha)

- 개발밀도를 높더라도 분당 수준의 쾌적성 등 친환경적 주거여건 확보가 가능하며, 오히려 자족성 증진에 기여
- (※ 분당 : 개발밀도 199인/ha, 용적률 184%, 녹지율 20%)
- 주택단지내 근접 생활공간에 생태면적을 늘려 체감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 포장 확대 등)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남양주 별내 등 28개 지구)의 용적률을 높여 46천호 추가 공급(191천호 → 238천호)
- 대도시 인접지역에 임대 및 분양주택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직주근접성을 갖춘 주거공간 확충
- * 용적률을 현행 150 → 180%(서울은 190~200%)로 상향하고 획일적 층고제한을 폐지하여 인근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을 도모

다. 녹지면적의 합리적 조정

현황 및 문제점

- 신도시별 여건에 따른 적정 녹지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환경부와 개발사업별 협의에 의해 결정
- * 공원녹지법령상 녹지확보 최소기준으로 100만평 이상은 20% 이상, 신도시계획기준상 녹지율은 24~28% 이상으로만 규정
- * 1기 신도시 12.5~25%(평균 18.7%) → 2기 24~44%(평균 33.5%)

- 녹지율 충족을 위해 불필요한 인근 임야 등을 매입하여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사례 발생

* 판교 : 인근 보존임야(60만평)를 추가 포함 (보상비 1,950억원)

* 송파 : 인근의 보존임야 12만평을 포함하여 지구지정

개선방안

- 신도시 공원·녹지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녹지율을 현행 24~28% 이상 → 20~25% 이상으로 설정하되, 주위여건을 감안하여 가감이 가능토록 함 (신도시계획기준 개정)
- 지구 인근에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구 내 녹지율의 합리적인 하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신도시계획기준 개정)

라. 택지개발 기간단축을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

(1) 신도시 등 추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제

- (현황) 신도시 등 국가정책사업의 추진시 도시기본계획(지자체장이 수립·승인)에必先영 필요
-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약 1년 내외 소요
- (개선방안)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법 개정
- 先계획-後개발 원칙은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므로, 신도시 등 국가계획 사업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
- 향후 도시기본계획 정비시 국가계획의 내용을 반영
 - * 국회 계류중인 국토계획법 개정안('06.3.3)의 일부 수정 추진
-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

(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 조정

- (현황)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면적 100만㎡ 이상, 인구 2만명 이상)의 경우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 지자체의 과도한 교통시설투자 요구 사례가 빈번하여 협의기간이 장기화되고 택지비 상승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 신도시 등 국가 정책적인 사업과 광역교통망 체계간의 연계성 제고 가능

* 광역교통개선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06.5.9) 계류중

(3) 택지개발절차 단축

- (현황) 현재 택지개발은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의 3단계로 추진
- 지구지정시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개발계획 승인시 광역교통대책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절차가 중복

- (개선방안) 개발계획을 지구지정과 동시 수립하여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실시계획 승인의 2단계로 단축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추진

- 지구지정·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협의를 일괄 처리

* 현행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단지, 산업단지 개발도 2단계 절차

-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의 동시수립 추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도 지구지정 전후에 앞당겨 본격 착수토록 개선

*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까지 약 1~1.6년 소요되므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통합할 경우 약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

(4)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중복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택지개발과 같이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일련의 절차로 추진되는 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지구지정시)와 환경영향평가(실시계획시)의 검토범위가 중복

될 소지

- * 사전환경성 검토 : 개발사업의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
- *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

■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에 전략환경평가방식을 도입('06.5)하여 평가기간이 장기화되고 평가업무 부담이 증가

- * 전략환경평가방식 : 입지의 적정성 외에 사업의 대안 등 계획의 적정성도 검토, 스코핑(scoping),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 시행 등
- * 스코핑(scoping) : 환경전문가 등으로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이슈를 파악,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절차

■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등의 조사에 4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1년 이상 소요

- * 현재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1년 5개월) : 평가서 작성(1년 : 4개월평가 등), 주민의견수렴(70~105일), 행정기관 협의(45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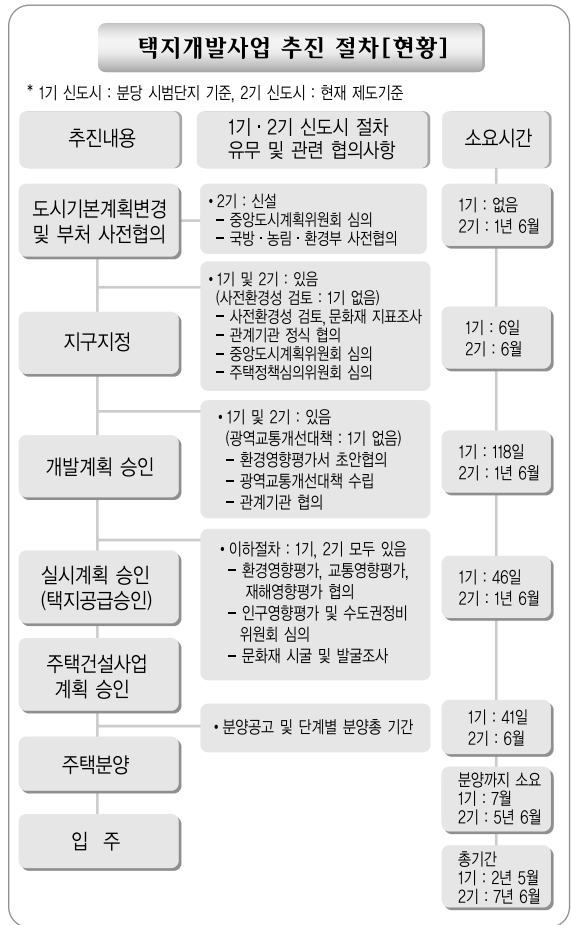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연계 강화
 - 사전환경성 검토 후 계획에 큰 변경이 없는 경우, 既 제출서류, 조사결과 등을 환경영향평가서 인정
 - 사전환경성 검토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스코핑을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를 면제
 - 사전환경성 검토시 실시한 주민의견수렴이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영향평가에서는 생략

- 환경DB(환경조사 자료, 국가환경측정망 등)를 평가자에게 제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 단축
- 4개월 평가는 기존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진중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9.28일 입법예고)」에 반영 추진

◆ 도시기본계획 의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통합 등 개발 절차 간소화를 통해

- 새로 지정되는 신도시는 최종 주택입주에 이르기까지의 소요시간이 약 1~2.5년 단축(현재 7.5년)
- 진행중인 지구는 개별사업별 진행 정도와 여건에 따라 3~9개월 정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2.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량 확대

가.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 유도

- 수도권 기존 도심의 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 뉴타운에서 '12년까지 총 36만호(임대주택 54천호 포함)의 주

택을 건설

- 서울 강북에 지정('06.10)된 17곳의 재정비촉진지구(3개 시범지구 포함)와 17곳의 뉴타운지구 (총 257천호)
- '06~'07년중 경기·인천의 기존 도심에도 15곳의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예정 (경기 67천, 인천 36천호)

〈'06~'12년 수도권 기존도심 재정비사업 주택공급〉
(사업시행인가 기준)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주택호수	9,693	34,165	45,903	49,106	69,028	69,865	81,886	359,646
(임대주택)	(1,454)	(5,125)	(6,885)	(7,366)	(10,354)	(10,480)	(12,283)	(53,947)

* 서울 17개 재정비촉진지구, 17개 뉴타운
 * 경기 10개, 인천 5개의 재정비촉진지구(추진예정) 포함
 *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미확정상태이므로 주택순증 물량은 산정곤란

- 세입자 등 원주민의 재정착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체 물량의 약 15%인 5.4만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
- 저소득층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지구별 재정비촉진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
 - * 재정비촉진사업시행시 임대주택건설 의무 : 인센티브로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단계적인 순환개발방식을 통해 전세난 등 주거문제 최소화
- 사업지 인근에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시기주시설로 활용

나. 계획관리지역 내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 (현황)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150% 이내로 규제
-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므로, 현행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부족
 - * 非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舊 준농림지역)의 주택건설실적(전국)이 90년대 年 6만호 → '03년 1만호 수준으로 급감
- (개선방안) 친환경적·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도시화가 예정된 非도시지역 내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건설 촉진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용적률을 현행 150% → 180%까지 허용(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 *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중 개발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지역이고,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절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

다.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축규제 개선

- (현황) 주차장 및 일조권 기준이 강화되면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설물량 급감
- 특히, 다세대주택은 '05년 8.7천호가 건설되어 '02년(16.8만호)의 5.2% 수준에 불과
 - * '02.10 서울시 조례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호당 0.7대 → 1대로 강화('04.5. 주차장법령 개정)
 - * '06. 1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 강화(건축법시행령)
 - 민법상 50cm → 건축물 이격거리를 높이의 1/4 이상으로 제한
- (개선방안) 일조권 기준 등을 도시·환경측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
- 일조권 기준은 주택소요·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완화
 - * (개선안)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통상 10m 높이의 다세대는 양쪽으로 2.5m) 띄우도록 하던 것을, 일정거리(예:1m)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함
- 주차장 기준은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유지하되, 피로티 구조로 된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하여 추가건축 허용
 - * (개선안) 현재 다세대·다가구는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에만 층수에서 제외 →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도 층수에서 제외하여 주택부분만으로 3개층 허용

라.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 (현황) 도심 내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주상복합·오피스텔의 규제 강화로 건설물량이 크게 감소
- (주상복합) 주택비율 축소로 '03년을 정점으로 감소
 - * 주택면적 비율을 90% → 70% 미만으로 축소(서울시조례, '03년), 300세대 이상 사업을 건축허가 → 사업승인 대상('03.6. 주택법)
 - * ('00년)7,526호 → ('02)15,578 → ('03)16,815 → ('04)6,837

→ ('05)1,735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강화 등으로 '04년 이후 대폭 감소
* 건축기준('04.6) : 업무용 면적 50% 이상→ 70% 이상, 바닥난방 금지 등
* ('01년)3,463호 → ('02)16,630 → ('03)42,999 → ('04)68,449 → ('05)32,679

- (개선방안) 1인가구 증가, 재택근무 등 신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도심 내 거주공간 확충을 위해 관련규제 개선
-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향 조정 검토 (지자체 조례 개정사항)
* 현행 서울시 조례상 70%(4대문밖)→90%(국토계획법상 허용상한)
- 오피스텔은 소규모(예: 전용 15평 이하)에 한해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독신자 등의 사무·주거겸용 사용상의 편의 개선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
* 고가의 중대형 오피스텔은 규제 완화시 투기수요 유입 우려

3. 분양가 인허방안

1. 분양가 제도현황

-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공택지'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05.3)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제도('06.2) 시행 중
- 주택 중산층 이상이 주로 청약하는 중대형 주택(25.7평 초과)은 채권입찰제가 함께 시행되어 實주택 구입비용이 주변 평균시세의 최대 90% 수준
* 공공택지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국민임대특별법), 산업단지 내 주택지조성사업(산업입지법) 등
* 공개항목(7개) : 택지비, 직접·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단, 25.7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비, 택지매입원가만 공개)
- 민간이 매수·조성하는 택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택지종류별 택지공급가격 및 주택분양가〉

구 분	택지공급 가격	주택분양 가격
공공택지	- 규제시행('06.7 개편) · 18평 이하: 원가의 80~95%	- 분양가 규제 · 25.7평 이하 : 분양가상한제
	· 18~25.7평 이하 : 원가의 90~110%	· 25.7평 초과 :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
	· 25.7평 초과 : 감정가격	- 분양가공개 시행 : 7개항목
민간택지 등	- 자율	- 자율

* '77~'99년 분양가규제, '99년 분양가 자율화, '05년 분양가 규제 재도입

2. 문제점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나,
* 화성 동탄('05.11)은 10% 이상, 판교 중소형('06.3)은 30% 이상 저렴
- 택지비 상승 및 중대형에 대한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체감하는 분양가 인하효과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 제기
* 택지비는 보상·기반시설비용 부담 및 개발밀도 감소 등으로 상승
- 공공수용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은평 뉴타운 등), 경제자유구역(인천청라)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음
-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민간환지방식이라는 점, 경제자유구역은 특례지역이라는 이유로 입법과정에서 제외
* 은평뉴타운 분양가 1,151~1,501만원/평(인근 불광동 800~1,100만원)
- 민간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고분양가 문제로 분양가가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3. 개선방안

- ◇ 합리적·객관적인분양가가 공개확대방안과 함께 분양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 ◇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택지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 제고

☞ 공공택지 내 분양가를 현재보다 20~30% 인하 추진

가. 분양원가 공개확대 및 분양가제도 개선

-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활동 및 전문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공개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 *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학계, 시민단체, 업계 참여)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07.2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공개대상 주택의 범위, 공개항목, 원가산정기준, 검증방법, 검증결과에 대한 처리문제 등)
-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부문 공급위축 최소화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채권입찰제의 개선 여부도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을 同위원회에서 검토

◆ 주택건설에서 주공이 담당하는 비중을

- 현재 전국 주택건설물량(연간 50만호)의 10만호(20% 내외) → 18만호(36%)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검토

* '07년 연 15만호, '08년부터 18만호 이상 (임대·분양)

◆ 주공의 도시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를 계기로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종합적인 분양가제도 개선방안 강구
- 분양가 안정화를 위한 諸 방안과 함께, 청약과열·시세차익 등 예상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까지 검토
- 우선 '06년 중에는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주택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 등 : 도시개발사업을 공공택지에 포함)이 국회 계류중 ⇒ 경제자유구역도 추가 포함 추진

나. 택지비 절감방안 검토

◆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는 통제되나, 택지비의 상승에 따라 분양가 인하효과가 불충분
⇒ 택지조성비용 절감,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효과 제고

(1) 택지 조성비의 절감방안

《 개발밀도, 무상공급면적(녹지율)의 합리적 조정 》

- 개발밀도(지구당 수용세대수)를 높여 호당 택지비 인하

《 지구밖 기반시설비용의 합리적 분담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철도 등 지구밖 광역교통시설 비용을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상당부분 부담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중 사업시행자 부담 : 화성 동탄 56.3%(9,600억원), 성남 판교 34.3%(1,5조원), 용인 흥덕 20.3%(2,700억원)
 - * 판교·동탄 등 5개지구의 지구밖 시설비는 택지원가의 평균 23.6%
- 일부의 경우, 중기교통시설계획에 의한 사업이나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
- 신도시 사업시행에 따른 유발교통량 이상의 과다한 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제기

개선방안

- 신도시 인근에 정부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이 확정되어 있거나 설계 등 사업이 추진중인 경우, 우선적으로 재정(국가·지자체)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확보
- 다만, 재정에 의한 적기 투자가 곤란한 경우 민자사업

으로 우선 추진하고, 재정 부담분은 사업시행자가 先 투자 후 정부로부터 장기에 걸쳐 상환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신도시 건설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필요한 광역교통시설의 경우에도 국가·지자체·사업시행자 간의 합리적 분담방안 마련
- 교통시설의 성격, 수익자 부담원칙,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 간 부담원칙 마련

◇ 광역교통시설의 합리적 분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07.2월 완료) 결과를 토대로 부담원칙을 마련하고, - 사업지구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분담방안 결정
(예시) 신도시 건설로 인한 유발교통량 처리를 위해 새로운 광역교통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 유발교통량 예측 등을 기준으로 신·증설 비용을 부담
⇒ 유발교통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시설요구 억제

(2) 택지공급가격 인하 및 조성원가 공개

- 중소형(25.7평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인하('06.7)
- 종전 감정가격 → 조성원가 기준(수도권 110%~지방 90%)으로 변경 ⇒ 약 10%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
* '06.7월 이후 택지공급승인분부터 적용 → '06.11월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처음 적용 예정(내년 상반기 착공)
-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통해 투명성 제고('06.7)
* 공개항목 (7개) :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06.11월 토지공사의 제주 삼화지구 첫 공개 예정

4.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방안

- 분양가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청약과열과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철저히 시행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 금지 등

〈현행 투기억제관련 주택공급제도〉

구분	수도권	지방
무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물량의 75% (25.7평 이하)	
우선공급	* 수도권은 전역(일부 도서지역 제외)	
전매제한	25.7평 이하: 10년	25.7평 이하: 5년
	25.7평 초과: 5년	25.7평 초과: 3년
재당첨금지	전매제한 기간과 동일	

-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주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부양가족 수(자녀 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점제 도입
* '06년 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 '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인터넷청약,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활성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주택분양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적으로 시행
* 노약자 등 인터넷약자 보호를 위해 서류접수를 제한적으로 병행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주택분양을 위해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견본주택도 함께 구축하도록 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혼잡 방지

■ 중소형주택(85㎡ 이하) 주택분양가 인하효과(개략 추정)

(추정의 전제조건)

하단의 시뮬레이션은 향후 새로 공급할 공공택지에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등 모든 제도개선이 완료된 후, 개선된 제도하에서 공급될 주택분양가의 최대 인하효과임

항 목	분양가 인하비율
① 택지공급가 인하 - 감정가→조성원가 90%~110% (’06.7시행, 수도권 110%)	10% 내외
② 사업기간 단축 및 조성비 절감 (지구지정·개발계획 병행 추진,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6% 내외
③ 용적률 조정 및 녹지확보 합리화 - 용적률 : 175%(현행) → 191% - 녹지율 : 31.6%(현행) → 27.2%	8% 내외
④ 광역교통시설설치비 부담	α (지구별 여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부담비용은 유동적)
계	$24\%+\alpha$ 수준(25% 내외)

* 실제 분양가 인하효과는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중대형(85㎡ 초과) 주택은 ②③④에 의한 효과로 분양가 인하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중대형 주택의 경우에는 實구입비용(분양가+채권손실액)에 직접적 변동이 없음)

IV. 주택수요 관리방안

1.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도·감독 강화
- 임점검사 실시(’06.11.6일부터 2주간)를 통해 LTV, DTI 적용의 적정성, 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등을 중점 점검
- 과도한 금리 할인, 유인금리 제시, 경품 제공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및 과당경쟁 억제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지도
-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비율) 규제 강화
- (은행·보험) 투기지역 LTV 규제 예외적용* 대상 폐지(60 → 40%)
- * 만기 10년 초과·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40%를 적용중이나, 거치기간 1년 미만·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경우 60% 예외 적용
- (비은행 금융기관) LTV규제 강화(60~70 → 50%)

-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향후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실태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 시행

V. 서민주거 안정방안

1. 장기 임대주택 건설·비축

- ’06~’12년까지 총 116만 8천호의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매입 등의 방법으로 신규 비축하여, 전체 주택 수의 12% 수준으로 확충(’05년 68만호 → ’12년 184만호, 건설기준)
-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 소형 102만호 : 국민임대 72만호, 10년임대 19.3만호 등
- 중대형 14.8만호 : 전월세형 임대주택 7.5만호 등
- 신규 비축분(116,8만호) 중 95,8만호를 주공에서 건설·비축하고, 소요재원에 대한 다각적 조달방안 강구
- 재무적 투자자와의 공동사업, ABS발행, REITs 등
- ’07년부터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입주물량이 급증하여 전월세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
- 수도권 내 입주자모집물량은 ’07년~’10년까지 총 256천가구
- * 114백호(’06) → 463(’07) → 575(’08) → 597(’09) → 927(’10)
- 수도권에서 ’07~’10년 동안 총 251천가구가 실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전망
- * 157백호(’06) → 356(’07) → 563(’08) → 759(’09) → 829(’10)

《 국민임대주택 공급 실적·계획 》

※ 국민임대단지 및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효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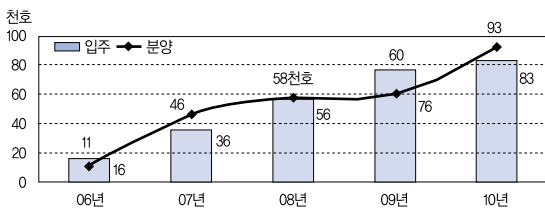
(단위 : 호·세대)

구분		공급실적 (98~'05)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06년소계
공급계획 (주택사업승인)	소 계	365,943	104,259	110,740	127,056	113,534	104,060	200,463	760,112
	수도권	180,823	57,482	54,376	75,816	62,294	52,820	97,983	400,771
	(서울시)	17,119	16,752	32,197	49,276	29,270	29,270	58,540	215,305
	지 방	185,120	46,777	56,364	51,240	51,240	51,240	102,480	359,341
착 공	소 계	168,775	77,075	89,750	105,259	106,540	127,056	451,608	957,288
	수도권	84,879	45,937	42,941	57,443	67,423	89,059	262,801	565,604
	(서울시)	8,265	2,976	1,135	10,209	20,337	44,011	66,265	144,933
	지 방	75,631	31,138	46,809	47,816	39,117	37,997	188,807	391,684
입주자 모집	소 계	108,208	26,303	84,726	102,135	126,286	156,860	521,545	1,017,855
	수도권	50,697	11,401	46,354	57,558	59,730	92,750	323,299	591,092
	(서울시)	2,518	654	9,667	7,379	27,029	44,530	152,883	242,142
	지 방	57,511	14,902	38,372	44,577	66,556	64,110	198,246	426,763
입 주 (준 공)	소 계	76,646	26,580	68,516	94,674	127,188	149,501	555,074	1,021,533
	수도권	33,315	15,732	35,604	56,302	75,940	82,945	351,046	617,569
	(서울시)	2,518	654	9,667	19,615	22,029	44,530	185,189	281,684
	지 방	43,331	10,848	32,912	38,372	51,248	66,556	259,734	459,670

* 분양은 사업승인 후 서울 3년, 수도권 4년, 입주는 서울 3년 수도권 5년 소요, 매입임대 등은 당해 연도로 산정

* 공공택지 외 주거지역, 매입임대·부도임대(지역별 임대비율적용) 포함

[수도권 국민 임대주택 공급전망]



2. 서민 주택금융 지원강화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 서민 주거안정과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추가 확대('06년 2조원 → 2.3조원, '07년 2.7조원)

* '06예산은 당초 1.6조원이었으나 수요증가에 따라 2조로 旣 증액('06.9)

■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임차보증금 보증한도를 확대(현행 8천만원 → 1억원)
- 또한, 신용평가등급(CSS) 상위등급자(1~5등급)에 대하여는 보증한도를 보다 확대(현행 연간소득 → 연간소득의 2배 한도)

※ 현행 보증한도 : i) 8천만원 한도, ii) 연간소득 범위 내 iii)임차보증금의 70%의 3가지 요건 중 작은 금액으로 보증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조정*을 통하여 보증승인율을 80% 수준(현행 72%)으로 제고

* 신용등급 하향 평가기준 조정(예 : 60일 이하 단기 연체정보 제외)을 통해 보증거부 대상자(9~10등급) 중 일부를 승인대상자(1~8등급)로 전환

■ 주택금융공사 장기 모기지론 금리 인하

- 서민층*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 금리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 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인

하**(0.15%p 인하)

* 공사 모기지론의 이용자의 평균 소득수준은 3천만원이며 국민 주택규모 이하가 90%, 구입 주택가격 3억원 이하가 96% 차지

** 현행 금리보다 0.15%p 인하 (예: 20년물 6.5% → 6.35%)

VI. 향후 추진계획

- ◇ 중부세·양도세 등 투기억제 시책과 임대주택 비축·공급 등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급대책 추진상황과 시장상황의 점검·관리를 강화

1. 시장모니터링과 정책 추진상황 점검·보완

- 『부동산 대책반』(반장: 재경부 차관)의 정례적 개최(주 1회 원칙)
- ① 거래동향, 주택가격 추이, 주택담보대출 운용현황 등 시장상황과 금변에 발표된 공급대책의 추진·작동상황 점검
- ② 공급확대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부처간 이견 조정, 부동산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지속적 검토
- 12월 초 부동산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부총리 주재) 개최
 -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과 공급확대정책의 추진상황·계획 점검

2. 금변 대책의 실효성 제고

- (국세청) 투기단속 및 세무조사 실시
 - 현재 강남, 신도시 예정지역 등 주요지역에 대해 감시 활동 중
- (금감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속적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

향후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

1. 수도권 주택건설계획('06~'10년)

- (총괄) '06~'10년중 총 164만호 공급
 -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부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
 -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86.7만호(53%), 민간택지(재건축, 재개발, 비도시지역, 다세대 등)에서 77.3만호(47%) 공급
 - * '04~'05년중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간의 주택공급비율이 43:57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공급비중 증대

<'06~'10년간 수도권 주택건설 물량추정 (단위: 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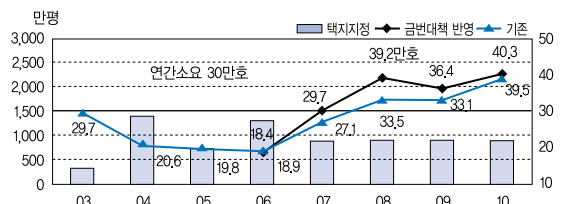
구분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총계	연평균
수도권	합계	184 (26.9)	297 (57.1)	364 (32.8)	403 (8.1)	1,640 (124.9)	328.0 (25)
	공공택지	76 (26.9)	155 (57.1)	229 (32.8)	201 (8.1)	867 (124.9)	173.4 (25)
	민간택지	108	142	163	163	773	154.6

* ()은 이번대책으로 인한 물량증가 효과

* 민간택지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추진 속도와 계획관리지역의 움직임을 조정효과 등에 따라 건설물량 변동 가능

- (연도별) '06년 물량은 주택소요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07~'10년간 연평균 36.4만호를 공급
⇒ 수도권 기본수요(26만호) 및 총소요(30만호)를 크게 상회
- 특히, 당초 공급 부족이 예상되었던 '07년의 물량이 약 2.7만호 증가하여 연간 총주택소요 30만호 수준에 육박하는 29.7만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
- '08년 이후에는 연 36~40만호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어 수급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집값 장기안정세가 정착될 전망

[주택건설 및 택지지정 물량추이]



* 택지지정물량 : '07년 이후는 연 900만평씩으로 계획(8.31정책)

■ (공공택지) 이번 대책에 따른 물량확대 및 기간단축으로 '06~'10년중 공공택지 내 공급물량이 12.5만호 증가(당초 74.2만호 → 86.7만호)

* 용적률 상향 등에 의한 증가(10만호) : 신도시(6개지구, 43천호), 국민임대주택단지(28개지구, 46천호), 일반 공공택지(6개지구, 11천호)

* '11~'13년 물량의 '10년 이전 조기공급 : 2.5만호

• 신도시 건설물량이 당초 367천호 → 410천호로 확대(43천호)되어 양질의 자족적 생활권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

* 확대가능물량 : 송파 3,100호, 검단 10,000호, 광고 9,900호, 파주 5,800호, 김포 6,200호, 양주 8,000호

•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의 건설물량도 당초 191천호 → 238천호 수준으로 확대(46천호)

*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 이외에 일반 분양주택이 50% 가량 혼합 건설되고 있음 (*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이 25%가량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확대가능물량 : 남양주별내 5천호, 고양삼송 6천호, 수원호매실 4천호, 안양관양 900호, 의정부민락 2,800호, 서울(상암·마천·강일·우면·세곡·내곡 등) 총 2,300호, 인천 서창 4,800호 등

■ (민간택지) 재개발 등 도심내 주택건설(다세대, 주상복합 등)도 '07년 이후 점차 늘어날 전망

• 기존 도심의 광역 재정비 등 재개발·재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시 내의 주택건설물량 확대

- 서울 재정비촉진지구 및 뉴타운, 인천·경기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10년까지 20만호 이상 전망 ('12년까지는 36만호)

• 아울러, 이번 대책에 의한 도심내 건축규제 개선, 계획관리지역 내의 용적률 상향 등에 의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 전망치를 상회하는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

■ (경제자유구역)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08~'10년간 약 10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07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작)

2.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계획

【 판교신도시 】

- 용 적 률 : 159%
- 인 구 밀 도 : 95인/ha
- 녹 지 율 : 37.4%
- 주 택 호 수 : 29천호

• 추진일정

- 최초 주택분양 : '06. 3(16천호 분양완료, '07~'09 잔여 13천호)

* 잔여물량 분양계획 : '07년 단독주택 2,078호 / '08년 협의양도 980호, 국제현상 300호, 국민임대 5,784호, 공무원임대 473호 / '09년 주상복합 1,266호, 전세형임대 2,068호

- 최초입주 : '08. 12

【 동탄신도시 】

- 용 적 률 : 173%
- 인 구 밀 도 : 134인/ha
- 녹 지 율 : 24.4%
- 주 택 호 수 : 40천호

• 추진일정

- 최초 주택분양 : '04. 6 (34천호 분양완료, '07~'09 잔여 6천호)

- 최초입주 : '07. 1

【 김포신도시 】

- 용 적 률 : 171% → 190%
- 인 구 밀 도 : 128인/ha → 151인/ha
- 녹 지 율 : 32.4% → 28.0%
- 주 택 호 수 : 52천호 → 59천호

• 추진일정

- 최초 주택분양 : '08. 12 → '08. 6 (6월 단축)

- 최초입주 : '11. 3 → '10. 12

【 파주신도시 】

- 용 적 률 : 166% → 190%(3단계)
- 인 구 밀 도 : 110인/ha → 132인/ha(3단계)
- 녹 지 율 : 28.0% → 25.0%(3단계)

* 1, 2단계는 용적률·밀도·녹지율 변동 없음

• 주택호수 : 46천호(1,2단계), 28천호 → 34천호(3단계)

• 추진일정

- 최초 주택분양 : (1단계) '06.9 (2단계) '07.12 (3단계) '10.3 → '09.6
- 최초입주 : (1단계) '09.6 (2단계) '10.9 (3단계) '12.12 → '12.3

【광교신도시】

- 용 적 륜 : 165% → 185%
- 인구밀도 : 53인/ha → 75인/ha
- 녹 지 율 : 45.5% → 39.4%
- 주택호수 : 24천호 → 34천호
- 추진일정
- 최초 주택분양 : '08. 12 → '08. 9 (3월 단축)
- 최초입주 : '10. 12 → '10. 9

【양주신도시】

- 용 적 륜 : 옥정(177% → 190%), 회천(177% → 190%)
- 인구밀도 : 옥정(130인/ha → 147인/ha), 회천(129인/ha → 159인/ha)
- 녹 지 율 : 옥정(28% → 26%), 회천(31% → 25%)
- 주택호수 : 옥정(27천호 → 30천호), 회천(19천호 → 24천호)
- 추진일정
- 최초 주택분양 : 옥정('09.3 → '08.3), 회천('09.6 → '08.12)
- 최초입주 : 옥정('11.3 → '10.6), 회천('11.6 → '10.12)

【송파 신도시】

- 용 적 륜 : 208% → 214%
- 인구밀도 : 170인/ha → 181인/ha
- 녹 지 율 : 26.0% → 22.0%
- 주택호수 : 46천호 → 49천호
- 추진일정
- 최초 주택분양 : '09. 9
- 최초입주 : '11. 12

【평택국제화계획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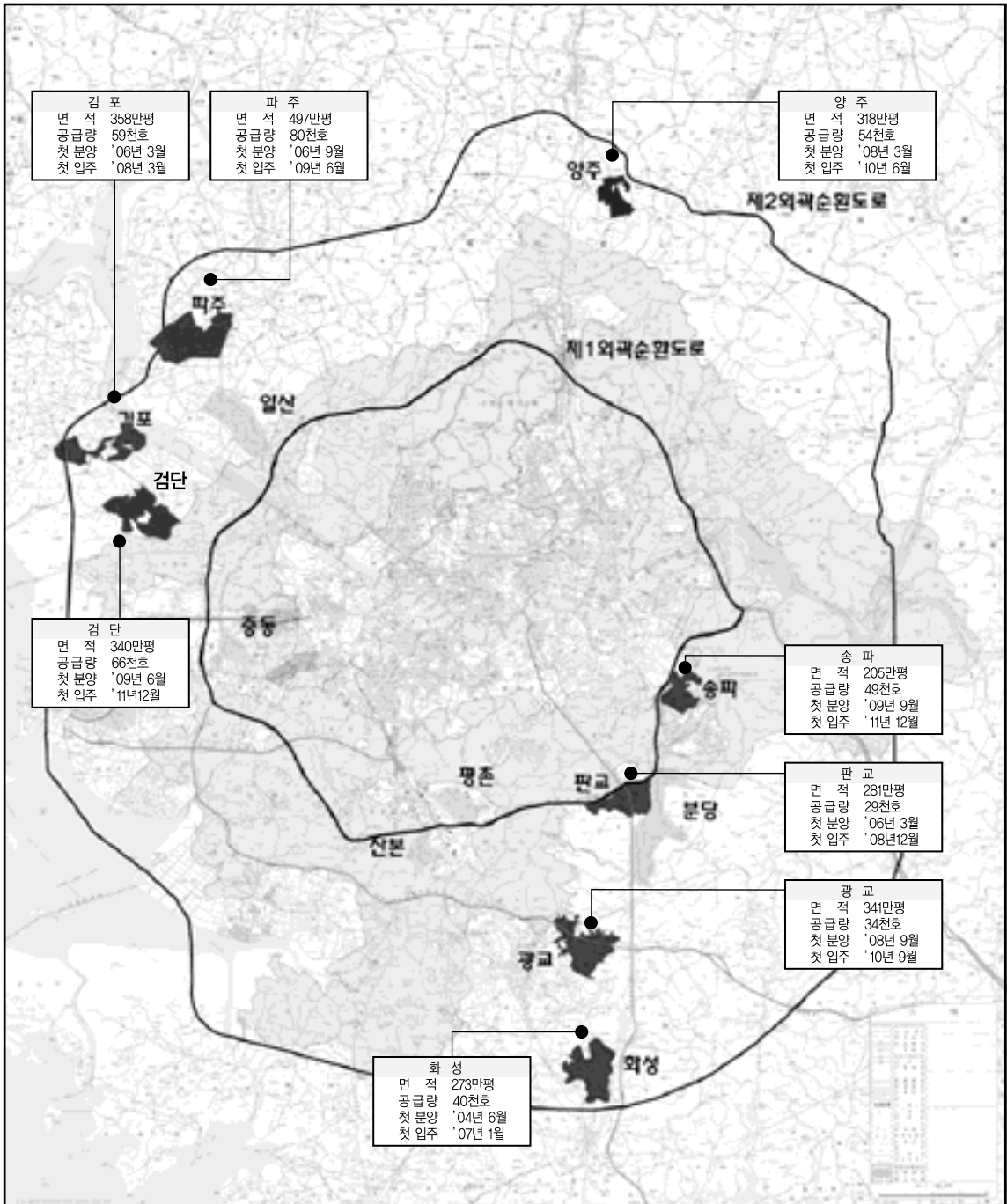
- 용 적 륜 : 165% → 180%
- 인구밀도 : 90인/ha
- 녹 지 율 : 30.0% → 26.0%
- 주택호수 : 63천호
- 추진일정

- 최초 주택분양 : '09. 12 → '09. 6 (6월 단축)
- 최초입주 : '11. 12 → '11. 6

【검단신도시】

- 용 적 륜 : 174% → 185%
- 인구밀도 : 133인/ha → 157인/ha
- 녹 지 율 : 32.1% → 25.0%
- 주택호수 : 56천호 → 66천호
- 추진일정
- 최초 주택분양 : '09. 12 → '09. 6 (6월 단축)
- 최초입주 : '12. 6 → '11. 12

〈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 〉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외

이자료는 2006년 11월 9일에 발표된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계실장의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1.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2. 사회보험료관리등에관한법률제정(안) 관련
3.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등
4.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중 주요대책 추진현황(3)
- 기업과세 합리화 부문 -
5. 韓-아세안 FTA 추진 상황

I.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 지난 11월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4분기 가계수지를 중심으로 최근 소득 및 소득분배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에서는 개선(5.34 → 5.29)되었지만, 전국 가구에서는 감소하였음(7.28 → 7.29)
- 이렇게 도시근로자 가구와 전국 가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에 추석이 4/4분기였던 것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됨
- * 추석일자 변경 : ('05년) 9.18일 → ('06년) 10.6일
- 추석이 4/4분기로 이동하면서 추석으로 인해 자녀·친지 등으로부터의 받는 용돈 등이 4/4분기 통계에 반영되고 3/4분기의 비정상소득 등은 감소하는 결과
- * 추석이 4/4분기에 나타났던 '90년, '98년의 사례에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비정상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음
- ** '06년 3/4분기 비정상 소득 감소 : 전년동기대비 △ 4.7%
- 특히, 전국 가구의 저소득(1분위) 계층에는 고령자 가구, 무직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소득에 더 큰 영향을 줌
- * 전국 가구의 평균연령 : 전체 47.02세, 1분위 계층 54.14세
- *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연령 : 전체 43.63세, 1분위 계층 44.38세

- 바로 전분기(2/4분기)에는 저소득층(1분위)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5.7%)했었다는 점, 경상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 배율보다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하면,
- * 저소득층(1분위)의 소득(전년동기비) : (2/4분기) 5.7% 증가 → (3/4분기) △1.6%
- ** 경상소득 5분위 배율 (3/4분기) 7.60, 소득 5분위 배율 (3/4분기) 7.79
- 이번 3/4분기의 소득분배 약화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4/4분기에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되면 소득분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보다 장기적인 추세 및 구조적인 요인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향후 4/4분기 가계수지 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음으로 소득 측면에서는 근로소득(5.6% 증가), 사업소득(1.7% 증가) 등 주요 소득의 증가율이 회복세를 나타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됨
- * 근로소득(전년동기비) : (2/4분기) 5.3% 증가 → (3/4분기) 5.6% 증가
- ** 사업소득(전년동기비) : (2/4분기) 0.8% 증가 → (3/4분기) 1.7% 증가
- 다만, 앞서 설명한 추석의 이동효과 등으로 비정상 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3.7%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 소비지출이 부진(0.7% 증가)하고 이에 따라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한 것도 마찬가지로 추석의 이동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됨

* 소비자출(전년동기비) : (1/4분기) 3.9% 증가 → (2/4분기) 4.5%증가 → (3/4분기) 0.7% 증가

2. 사회보험료관리등에관한법을 제정(안) 관련

- 사회보험료관리등에관한법을 제정(안)에 대하여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함
- 참여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업무 일원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중인바
 - 4대보험(건강, 국민연금, 산재, 고용)은 제도간 상호유기적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관리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음
 - 또한 앞으로 근로장려세제 도입으로 소득파악 인프라가 확충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가 예상되고
 - '08.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이 도입되고, '08년 완전 노령연금시대의 도래 등으로 신규서비스에 대한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됨
- 이에따라 4대보험의 공통사항인 징수 등 관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징수 등 관리업무 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함
 - 징수공단이 설립되면, 사용자 및 보험가입자는 3개 공단 대신 징수공단에만 소득 등을 신고하고, 징수공단은 매월 보험료를 일괄하여 부과함으로써 가입자의 편리성이 제고될 전망
 - 한편, 징수공단 설립으로 남는 잉여인력 5천명을 신규서비스에 재배치하여 증가하는 인력수요에 대처할 예정이며,
 - 또한, 징수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금융거래조회 등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임

3.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등

- 지난 9월 제정된 「국가지정법」('07.1.1일 시행)에 의해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본격 도입되고 국세감면율 한도제, 조세감면사전제한제 등이 실시될 예정임
 - * 국가지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정기국회에 2011회계연도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2011년 세출예산 심의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통합 평가·분석이 가능해져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무분별한 비과세·감면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국가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되고 연간 20조 원('05년 기준)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지출예산제도)

- 조세지출예산서란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금액에 대한 직전연도 실적과 당해연도 전망 및 다음연도추정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임
- 현재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조세지출보고서*는 조세지출의 관리·통제 수단으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음
 - * 직전 및 당해연도 비과세·감면 실적치만 집계되고 있고 다음연도 조세지출규모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분류방식도 세출예산과 일치하지 않아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예산이 연계된 재정지출 총량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되는 총재정지출(세출+조세지출)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부문별 투자규모의 조정 및 재원배분이 가능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됨

<참고>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통합분석 사례 ('05년 기준)

(단위 : 조원, 비중 %)

구 분	세출예산		조세지출		통합지출	
총 계	173.5		20.0		193.5 순위	
1. 사회복지·보건	49.6	(28.6) ①	7.9	(39.5) ①	57.5	(29.7) ①
2. 교육	27.6	(15.9) ②	0.2	(1.2) ⑦	27.8	(14.4) ②
3.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18.3	(10.5) ④	0.1	(0.6) ⑨	18.4	(9.5) ④
4. 농림·해양·수산	14.1	(8.1) ⑤	3.4	(17.0) ③	17.5	(9.0) ⑥
5. 산업·중소기업	11.9	(6.9) ⑥	5.7	(28.5) ②	17.6	(9.1) ⑤
6. 환경보호	3.6	(2.1) ⑩	0.5	(2.6) ⑥	4.1	(2.1) ⑩
7. 문화·관광	2.6	(1.5) ⑪	0.1	(0.1) ⑪	2.7	(1.4) ⑪
8. 국방·일반회계	21.1	(12.1) ③	0.5	(2.8) ⑤	21.6	(11.1) ③
9. 공공질서·안전·통일·외교	11.4	(6.6) ⑦	0.1	(0.2) ⑩	11.5	(6.0) ⑦
10. 연구개발	7.8	(4.5) ⑧	1.3	(6.6) ④	9.1	(4.7) ⑧
11.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지원	5.5	(3.2) ⑨	0.2	(0.9) ⑧	5.7	(3.0) ⑨

주 : 세출예산-2006 나라살림(기획예산처), 조세지출 : 조세지출보고서(재경부)

* 조세지출을 포함한 통합지출예산의 규모 및 비중을 기준으로 부문별 투자규모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

-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차이
 - (세출예산) 교육·국방·SOC 등 경직성 경비비중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의 지원규모가 큰 반면
 - (조세지출) 산업·중소기업, 연구개발 등 민간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통합지출 분석의 시사점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연구개발 분야 등의 지원순위가 여전히 낮은 상황
 - 적극적 민자유치 등을 통해 수송·교통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후 연구개발 분야의 지원 비중을 높일 필요

- '09년까지 준비기간 동안 조세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구역과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해 조세지출예산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임
- 금년 10월, 조세지출의 포괄범위*와 분류방식, 세출

예산과 연계방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였고

- * 어떤 비교세·감면항목을 조세지출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내년도중 개개 조세지출 항목의 추계방식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임

- '07.1월 가동 예정인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해 조세지출예산의 전산화 작업도 추진할 예정임
- 조세지출예산 사범 운용
 - 조세지출예산제도 정식시행 이전인 '09년에 2010회계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실제 작성하여 국회에 임의 제출하고
 -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2011회계연도 조세지출예산서 정식 시행에 대비해 나갈 계획임
-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 이미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제도와 운용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계획임

<외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 운용 사례>

구 분	도입 시기	임의 재출	강제 재출	제출 빈도	분류 방법	작성 세목	작성 연도
미 국	'68년		○	매년	세목별 기능별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과거 1년, 현재 1년, 미래 5년
영 국	'79년	○		매년	세목별	전세목	
프랑스	'80년		○	매년	세목별 지원목적별, 수혜자별	전세목	과거 1년, 현재 1년
독 일	'67년		○	격년	세목별 산업별	전세목	과거 2년, 현재 1년, 미래 1년
캐나다	'79년	○		매년	세목별 기능별, 감면종류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과거 2년
호 주	'81년	○		매년	세목별 기능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국세감면비율 한도제)

- 국세감면비율 한도제*는 비과세·감면규모를 국세의 일정 비율 내에서 관리해 나가는 제도이며
 - * 국세감면비율(조세감면비율) = 조세지출액/(조세지출액 + 국세)
- 현재 감면비율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 비율의 0 내지 1%p *로 설정할 계획임
 - * 0 내지 1%p 범위 중 한도는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후 국가재정법시행령에 규정할 계획
- 국세감면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03년 이후 14% 대로 상승하였으나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비과세·감면(조원)	13.7	14.7	17.5	18.3	19.9
관련국세(조원)	88.6	96.4	107.5	110.2	118.1
국세대비비율(%)	13.4	13.3	14.0	14.2	14.5

- 한도가 설정될 경우 국세증가 및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감면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때
 - 재원조달 방안 등이 없는 감면을 신설하기 어려워져 급격한 비과세·감면 증가를 억제할 수 있게 되며
 - 정부는 2020년까지 국세감면비율을 13%대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임

(조세감면 사전제한제)

-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감면의 신설을 건의할 경우,
 - 신설로 인한 향후 3년간의 예상 세수효과와 기존 감면의 폐지·축소 등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제도임
 - * 제도 신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 첨부를 의무화
 - 이에 따라 실효성 없는 감면제도 신설·확대가 크게 축소되어 효율적 감면제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 조세지출예산제도, 감면비율한도제, 조세감면 사전제한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 일관된 정비원칙(별첨)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를 장기적·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

<참고>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

(일몰 연장 기준)

-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R & D·설비투자·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
-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폐지·축소 기준)

- 외국에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등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

(일몰 신설 기준)

- 일몰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상시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5년의 범위 내에서 일몰 신설

4.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중 주요대책 추진현황 - 기업과세 합리화 부문 -

- 이번 주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내용 중 '기업과세 합리화' 부문의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고자 함

(1)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소규모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한 유한책임회사제도(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바,

- * 법무부에서 금년 12월중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에 대응한 과세체계 (예 : 파트

너십과세제도)의 정비가 요망됨

- (개선방안) 단기적으로 현행 공동사업자과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상법 개정 추이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파트너십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
- (추진실적) 현재 공동사업자과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06.9.29)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음

(2)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기업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하는 시점에서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즉시 과세됨으로써 연구개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 * 예 : 기술개발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국가가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에게 지급하는 출연금
- (개선방안)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익금불산입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동 출연금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익금 산입하여 사용금액과 상계처리함으로써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
- (추진실적) 현재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06.9.29)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음

(3)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 차원에서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60~100%를 익금 불산입하되,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차입금 이자 상당액은 이중과세조정을 배제하여 익금산입시키고 있어서
 -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게 대여하는 고유업무 수행*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문제점 발생
 - * 금융지주회사법 §15 및 동법 시행령 §11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을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로 규정(2000.10)
- (개선방안)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하도록 함

- 조달금리 미만을 받는 경우에는 부당지원 소지가 있으므로 세제상 불이익을 유지시킬 계획임
- (추진실적)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임

(4) 공동광고선전비 규정의 합리적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매출액비율을 기준으로 손금한도를 안분계산하고 있는바,
 -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 다양한 공동광고 형태에 따른 경비에 대하여 매출액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
 - * 예컨대, 수직적 공급관계(예: 원료공급기업-원제품생산기업)에 있는 기업간의 공동광고의 경우 매출액이 광고의 혜택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소지
- (개선방안)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 공동광고선전비 안분계산기준을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출원가, 종사인원 수 또는 기타 당사자 상호간의 약정에 따른 기준 등으로 다양화하되, 한 번 선택한 기준은 일정기간(예:5년) 변경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임
- (추진현황) 공동광고선전비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임

(5)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1. 장내 거래되는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현재의 거래소시장의 종가라는 재정부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상존하여 납세자 불편의 소지가 큼
 - * 장내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최대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 발생

② 현재 단일한 시가와 차이가 나는 모든 거래를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③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를 획일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국세청장 고시, 현행 9%) 또는 이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예 : 12%)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 (개선방안) ① 장래 거래되는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현재 거래소시장의 종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② 거래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며,

③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토록 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을 계산 대상에서 제외

** 차입금이 없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만 존재하는 경우

- (추진현황)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임

(6)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

- (현황 및 문제점) ① 리스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간 구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 괴리가 발생되고,

* 개정 리스회계기준에서는 「범용성 기준」을 추가 ⇒ 범용성이 없는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구분

②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당기비용(지급이자)으로 처리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가 세법과 달라져 수입업체 등의 세무조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04년) 개정내용

구분	기업회계기준 개정	세법
D/A 이자	취득원가 → 지급이자	취득원가
Shipper's Usance 이자	취득원가 → 지급이자	취득원가
Banker's Usance 이자	지급이자	지급이자

* 용어정의

-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 수입상이 어음을 인수하지만 하면,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방식

- (Banker's Usance(은행신용공여방식)

: 수출업자 거래은행이 일정기간 지급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식

- Shipper's Usance(공급자 신용공여방식)

: 수출업자가 일정기간 지급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식

- ③ 용역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 불일치

*작업진행률 산정방법

(기업회계) 원가기준법, 생산량기준법 및 투입량기준법 인정

(세무회계) 원가기준법만 인정

- (개선방안) ① 개정 리스회계기준상 리스구분기준 내용을 세법에 반영하고, ② 당기비용(지급이자)으로 처리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에 일치시키며, ③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기업회계에 일치시킬 계획임
- (개선방안) 현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임

(7)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① 현재 경정청구권이 거주자·내국법인에게만 허용되고 있어,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과다 납부된 세액이 있더라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②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조세감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면불가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심판 등은 한계가 있어 구제 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

- (개선방안)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을 허용하도록 하고,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 전에 소명기회 및 재검토 절차를 부여할 계획

- (추진상황)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해서 경정청구

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이 국회에 제출('06.9.29)되어 심의될 예정에 있고,

②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판정 절차를 개선하는 조세 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임

(8)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 및 절차 단순화·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요건 중 공급자 확인제도의 경우 실효성이 없고 납세자 불편만 야기하는 문제가 있고, ② 재화·용역 공급시 매출할인은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그동안 행정편의상 포함하여 운용되어 왔으며 ③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잔존재화에 대한 폐업시 과세로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있고, ④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자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거래정보를 ERP*로 보관시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며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전 부문에 걸쳐 있는 경영자원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통합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 ② 매출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③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해 폐업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④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과세사업에 전용시 매입세액으로 일부 공제

* 외상매출금을 일정 기일 이전에 지급하였을 경우의 대금 할인액

- (추진실적)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및 절차를 단순·투명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06.9.29)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음

(9)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표준 편차 단축

- (현황 및 문제점) 통관시간조사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수입화물 처리시간 단축 노력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입화물의 평균 처리시간이 9.6일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되었으나

* 통관시간조사시스템(Time Release Survey System) : 수입화물의 입항부터 하역·운송·통관까지의 전체 물류시간을 측정 관리하는 시스템

- 개별 수입신고건별로 통관소요시간에 편차가 커* 수입업체의 예측가능성 저해

* 현재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표준 편차는 13.2일임

- (개선방안) 6시그마 등 민간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표준편차 단축노력 (목표 : 13.2일 ⇒ 7.7일, 금년 목표 11.8일)

- 입항부터 반출까지 화물처리시간을 세분화*한 후 물류단계별 지체요소를 파악하여 문제 해결

*입항 → 하선 → 운송 → 보관 → 수입신고 → 반출

- (추진실적) ① 「고객맞춤형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화물 예상처리시간 정보*를 제공 ('06.9.25) ② 표준편차 단축실적('06.10) : 13.2일 ⇒ 11.1일

* 품목별·업체별·세관별·보세구역별로 수입화물처리 예상 처리 시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정보를 제공

(10) 선진 위험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수입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05년도 수입물품의 검사율은 5% 수준이며 이 중 적발률은 37% 수준인바,

- 문제가 없는 수입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통관이 지체되고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 (개선방안) 고위험 물품의 효율적 선별을 위한 선진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유형의 적발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조합하여 우범기준을 작성할 수 있는 Rule-base에 기반한 우범기준 개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 위험관리 기법의 고도화를 통한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비율축소 및 검사 적발률 제고

* 종전에는 많은 요인을 조합할 수 없어 개개 우범기준별로 선별되는 물품이 많아 적발 비율이 낮았으나, Rule-base에 입

각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요인을 조합한 보다 정교한 우범기준의 작성이 가능하여 기준별로 선별되는 물품의 수를 줄이고 적발 비율을 제고할 수 있음

- (추진실적)Rule-base에 입각한 새로운 우범기준 (3,609개)을 적용하여 검사율 감소 및 적발률 제고*

* 검사율 5% ⇒ 4.2%, 적발률 37% ⇒ 47% ('06.10)

- 금번 대책은 기업의 과세제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 관계부처를 독려하여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앞으로도 기업의 과세제도상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

(5) 韓-아세안 FTA 추진 상황

- 지난해 협상이 있었던 韓-아세안 FTA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차 협상 결과〉

- 지난해(10.30~11.2) 브루나이에서 韓-아세안 FTA 제 15차 협상이 개최되었음
-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 교역과 투자 교류가 대 폭 확대될 수 있도록 자유화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 양측간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방송, 환경, 중소기업 등 분야에서 6개의 교류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기로 합의하였음
- 아울러, 심도 있는 서비스·투자 자유화 논의를 위해 협상 타결시한을 내년 11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음

* 同 방안은 오는 12월 필리핀(세부)에서 개최되는 韓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예정

- 내년에도 총 6회(한국 1회, 아세안 5회)에 걸쳐 서비스·투자 협정문과 양허안에 대한 협상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며,
- 차기(제16차)협상은 '07.1.30~2.2, 미얀마 만달리에서 열릴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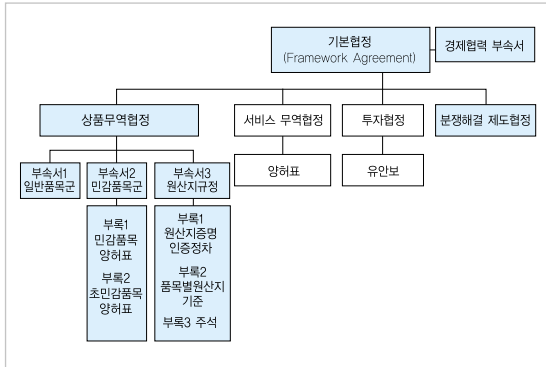
〈상품무역협정 등 비준절차 진행 상황〉

- 지난 8월 韓-아세안 통상장관 간 서명된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음
- 우선, 재경부는 상품무역협정의 관세양허와 원산지관련 내용을 반영한 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외교부에서는 상품무역협정과 함께 이미 서명 완료된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의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협정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11.10 차관회의 및 11.14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

- 韓-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우리가 “거대경제권과 최초로 체결한 FTA”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음
-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어 많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으로의 시장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 특히,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자동차·철강 등 공산품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中 - 아세안 FTA는 '05.7월 발효되었으나, 자동차·철강 등 다수의 핵심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함으로써 자유화 효과가 제한적
** 일본은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2개국 과만 FTA를 체결한 상태

<참고>

[韓-아세안 FTA 협정 구성]



[상품무역협정의 주요 양허내용]

- 일반품목군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90%)
 - 2010년까지 관세 완전 철폐
 - 민감품목군 (품목수 322개, 수입액의 7%)
 - 2016년까지 관세를 0~5%로 인하
 - 초민감품목군 (품목수 200개, 수입액의 3%)
 -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쿼터 설정 등
 - * 우리는 쌀, 닭고기, 미늘, 고추,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양허제 외로 분류
- ※ 개성공단 생산제품 100개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

사회보험 적용 · 징수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09년 1월부터 국세청 산하 신설공단에서 수행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 자료는 2006년 11월 6일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공청회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11.6(월)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사회보험 적용 ·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이는 지난 10.26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가칭)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노동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이 되도록 애써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임
-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공단조직을 신설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 · 징수업무를 '09.1월부터 일원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 · 개정안을 마련하여 10.27일 입법예고한 바 있음

* 4대 사회보험법(개정)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금번 공청회는 김상균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심규범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통합방안을, 채경수 국장(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 · 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통합징수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하였음
- 새로운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 · 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을 신설하여 '09.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 사회보험 관련법을 개정하여, 징수공단이 적용 · 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 ·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됨

- 정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11월중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임
- 동법이 시행되면 '09.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적용 · 징수업무가 통합되어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발제자료 1 : 사회보험 적용 · 징수업무 통합방안(요약)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 검토배경

- 여러 보험공단이 중복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인력비용이 높은 적용 ·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효율화하는 대신 잉여인력을 인력증원이 요청되는 신규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하여 보험공단을 '서비스 기관화' 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 · 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 ※ 3개 공단 정원(18,800여명) 중 적용 · 징수 담당인력은 약 9,700여명 차지
- 제도도입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 · 발전되어,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행정부담 가중에 따른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고, 사회보험의 성숙에 따라 각 공단이 수행해야 할 신규서비스에 대한 인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단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 ※ 수발대상 노인규모('05년 보사연 추계) : '08.7월 85천명, '10.7월 166천명
- ※ '08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매년 20~30만명씩 증가

- 참여정부에서는 '03.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서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국민통합 과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 · 징수업무 일원화」를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05.11월 국무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일원화 방안을 확정 한 바 있다.

2. 주요 내용

1) 국세청 산하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 신설

- 국세청 산하에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여 4대 사회보험의 적용 · 징수업무를 징수공단으로 통합 · 위탁하여 수행하게 된다.
 - 신설 징수공단에서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 징수 및 그에 수반되는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가입자에게 차질 없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징수공단의 자격관리 정보를 보험공단으로 실시간 연계한다.
- 사회보험료의 고지 방법은 시행 여부를 감안하여 선택 할 수 있다.
 - 통합징수에 따라 이제까지 각 사회보험공단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고지업무가 징수공단에 의해 통합되면,
 -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합 · 합산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 ※ 사회보험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부과기준과 징수방법을 과세 소득기준, 고지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05.11.29 국무회의 에서 이미 결정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지 단위(세대, 개인) 및 부과기준이 상이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별건 · 일괄고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효율성 ·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징수공단의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기존 보험공단의 적용 · 징수 인력 중 일부를 징수공단에 재배치

- 현재 약 10,000명으로 추정되는 각 보험공단의 자격 관리 · 징수담당 인력 가운데 일부를 징수공단으로 재 배치한다.
 - ※ 적용 · 징수담당 인력(8,368명), 전산 · 총무 등 지원인력 배분 (약4,400명)
- 징수공단의 효율적인 인력 · 조직설계로 현행 인력 중 약 50%(약 5,000명) 내외를 징수공단에 배치하여 적용 · 징수 효율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다.

3) 또한, 나머지 적용 · 징수 인력을 각 보험공단의 신규 서비스 업무에 재배치하여 사회보험공단을 가입자의 서비스 기관으로 정착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사회보험이 성숙됨에 따라 각 보험공단이 수행할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력 수요의 불가피한 증가를 요구하고 있어, 기존 보험공단의 적용 · 징수인력 중 일부를 징수공단에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을 각 보험공단의 신규 서비스 업무에 재배치하여 사회보험을 효율화함으로써 남은 인력으로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 사회보험별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수발보험, 가입자 보호 서비스, 의료 오남용 사례관리, 의료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입자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 국민연금공단은 안락한 생활을 위한 노후생활설계 서비스, 여가 · 금융 · 주거 등의 상담 서비스, 신속한 급여심사로 수급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요양 관리, 재활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조기 직장복귀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기대 효과

- 중복업무 통합으로 사회적 비용 대폭 절감 및 보험가

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실현

- 그동안 몇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부처간 이견, 노조의 반대 및 주변 여건 미성숙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중단되었던 과제의 해결책이 마련됨에 따라, 중복업무 통합으로 현행 적용·징수 인력의 약 50%를 감축하여 노인복지, 노령연금지급 확대 등 새로운 업무에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여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고,
 - 징수공단의 설립으로 적용·징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할 수 있다.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공단의 서비스를 확충하여 서비스기관으로 전환
- 소득과약 기반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어 사회보험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 ※ 3개 공단이 각기 적용 징수함에도,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들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상존하며 '05.8월 현재 사회보험 직장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64~76%대이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30%대에 불과

발제자료 2 : (가칭)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채경수 사회보험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 국장

I. 목적 및 기본방향

-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표준화·일원화를 위해 적용·징수절차, 방법 등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각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적용·징수업무의 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동 법안을 마련하였다.
- 자격의 취득·변경·상실 신고절차와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통일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부과·징수 절차를 표준화하고, 국세청의 소득자료와의 전산연계, 소득 축소·탈루 자료의 통보의무 신설(국세청 ↔ 징수공단) 등 보험료 징수체계와 세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게 된다.

- 제도 및 정책을 규정한 조항은 사회보험법에,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는 통합징수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일괄 제·개정하여 징수법과 사회보험법의 일관된 법체계 구성을 실현하였다.

II. 제정법률안 :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업무위탁 및 공단에 대한 지휘 감독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사업 관장주체인 복지부·노동부장관이 국세청장에 적용·징수업무를 위탁하고, 국세청장(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공단에 재위탁하는 방식이 된다.
 - 국세청장이 공단의 사업운영계획, 예산, 정관변경, 사업·재산상황 검사, 위법·부당처분 취소권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고, 복지부·노동부장관 및 보험공단은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게 된다.
- 공단설립 및 관리운영 비용 조달
 - 징수공단의 업무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및 이에 수반되는 자격관리업무 등 위탁업무와 기타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하게 된다.
 - 관리운영비는 복지부·노동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수수료로 우선 충당하고 자산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금, 정부의 출연금 등의 순으로 충당하게 된다.

징수공단의 임원

-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국세청장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 상임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장의 제청을 통해 국세청장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각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 비상임 이사 : 3개 보험공단 및 복지부·노동부·국세청이 위촉

보험적용 · 징수

- 보험적용(자격의 취득 · 변경 · 상실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건강보험증 및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한다.
- 사용자 및 보험가입자는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매월 보험료를 부과 · 고지하며 보험료 체납자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체납자에 대한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 고액 · 상습체납자(1년 이상 1억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국세청과 징수공단 간에 소득 축소 · 탈루 자료 송부 의무를 두어 보험료 징수와 세정 간의 연계 강화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법 시행 및 공단설립

- 동법은 2009.1.1.부터 시행하고, 위원 7인 이내로 구성된 공단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국세청 차장)를 설치하여 공단설립에 관한 사무처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Ⅲ. 관련 사회보험법률의 개정

- 국민연금보험법 등 4개 보험법에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의 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징수절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다.
- 고용 · 산재보험료징수법을 폐지한다.
 - ※ 사회보험 관련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재정통계 |



■ OECD 국가의 총조세 세입 변동 추이

0%

〈OECD 국가의 총조세 세입 변동 추이〉

(단위: %)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호주	7.25	10.62	11.76	14.55	11.49	14.25	9.56	27.35	29.28	20.48
오스트리아	11.19	6.04	7.59	10.62	11.95	13.88	15.67	13.89	17.01	7.58
벨기에	14.73	9.34	9.54	11.49	12.53	13.28	11.45	17.29	20.23	18.41
캐나다	15.47	11.74	13.10	18.21	6.66	9.20	14.25	16.63	26.86	10.77
체코	-	-	-	-	-	-	-	-	-	-
덴마크 ¹⁾	19.33	11.73	21.32	12.72	24.95	19.11	13.25	13.38	16.87	4.43
핀란드	11.29	12.73	16.08	9.09	15.64	15.51	18.30	24.69	23.30	25.38
프랑스 ¹⁾	7.62	9.19	9.41	17.12	9.29	9.65	13.07	14.62	16.97	17.11
독일	8.31	1.33	7.73	17.88	9.95	12.75	14.11	16.31	7.82	3.06
그리스	19.76	13.17	12.67	13.68	10.37	10.00	15.02	20.21	20.47	23.30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13.82	11.41	14.58	18.24	17.92	18.52	15.70	21.45	12.27	26.51
이탈리아	7.43	14.19	11.59	7.89	11.48	11.87	9.16	10.05	32.94	15.88
일본 ²⁾	14.08	20.15	19.89	20.56	21.30	11.77	20.44	31.29	21.42	0.26
한국	-	-	-	-	-	-	-	24.92	56.24	51.66
룩셈부르크	4.07	3.14	5.78	16.50	19.59	11.39	15.08	23.23	25.98	10.50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13.56	12.92	13.10	14.20	14.94	18.17	15.50	18.22	15.00	13.61
뉴질랜드	7.62	4.65	3.03	11.36	21.23	18.16	13.21	22.72	19.80	11.90
노르웨이 ¹⁾	12.20	15.63	9.96	13.06	15.43	20.54	16.76	14.77	14.63	14.91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12.78	16.33	10.97	13.99	24.82	10.42	14.99	18.92	23.15	22.34
슬로바키아 ¹⁾	-	-	-	-	-	-	-	-	-	-
스페인 ¹⁾	7.57	40.62	7.27	17.14	13.26	14.75	23.90	24.60	18.44	26.75
스웨덴	11.16	11.48	12.22	11.41	11.79	10.35	13.17	9.08	16.22	20.30
스위스	11.40	7.67	11.65	14.07	12.33	11.91	15.51	22.83	12.64	7.01
터키	19.93	19.17	9.54	19.99	19.54	42.12	21.72	30.65	26.63	46.44
영국	9.15	11.50	12.43	13.07	12.67	5.70	6.48	8.37	24.19	29.21
미국	11.40	12.10	4.82	19.60	5.84	0.73	12.32	11.40	11.68	6.63
OECD TOTAL ³⁾	11.79	12.47	11.13	14.63	14.56	14.09	14.72	19.04	21.25	18.10
OECD AMERICA ³⁾	13.43	11.92	8.96	18.90	6.25	4.97	13.29	14.02	19.27	8.70
OECD PACIFIC ³⁾	9.65	11.81	11.56	15.49	18.01	14.73	14.40	26.57	31.69	21.07
OECD EUROPE ³⁾	11.96	12.65	11.30	14.01	14.91	15.00	14.94	17.92	19.15	18.49
EUROPEAN UNION (15) ³⁾	11.45	12.34	11.48	13.67	14.74	13.02	14.32	16.95	19.39	17.63
EUROPEAN UNION (19) ³⁾	11.45	12.34	11.48	13.67	14.74	13.02	14.32	16.95	19.39	17.63

〈OECD 국가의 총조세 세입 변동 추이〉의 계속

(단위: %)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호주	16.24	8.63	9.05	16.23	17.96	16.18	9.65	9.67	16.86	10.96
오스트리아	10.06	11.59	11.97	8.00	8.76	9.53	4.16	5.69	9.58	7.29
벨기에	14.26	13.46	8.91	8.93	4.46	5.54	11.43	7.71	9.84	6.57
캐나다	12.49	7.04	10.49	13.66	15.92	20.83	4.16	7.90	8.90	7.53
체코	-	-	-	-	-	-	-	-	-	-
덴마크 ¹⁾	16.72	12.10	15.54	14.16	9.86	8.93	11.79	15.29	12.99	11.73
핀란드	24.47	10.24	1.36	11.65	16.24	19.35	9.88	10.49	16.56	13.55
프랑스 ¹⁾	21.61	12.55	13.49	18.61	17.37	13.19	17.13	12.37	11.42	7.47
독일	11.50	10.69	6.68	7.76	7.09	3.08	3.25	4.49	5.31	5.59
그리스	35.19	18.81	21.78	28.63	16.78	20.63	41.95	21.32	27.23	22.06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61.51	58.40	58.56	37.89	29.90
아일랜드	36.03	16.73	12.20	15.75	29.20	25.58	22.95	15.14	13.49	5.18
이탈리아	30.50	23.84	18.33	18.57	42.00	24.48	26.30	23.35	11.54	10.59
일본 ²⁾	16.94	13.70	18.01	9.91	13.45	9.32	6.31	6.32	7.36	8.16
한국	49.34	28.08	38.48	31.15	22.99	23.79	16.56	20.27	8.47	9.37
룩셈부르크	15.70	13.84	11.41	1.94	11.54	9.48	15.79	15.99	6.67	8.90
멕시코	-	-	-	-	-	33.33	62.84	103.58	60.24	56.84
네덜란드	13.72	10.81	9.56	7.28	8.46	3.36	5.07	6.29	1.07	4.32
뉴질랜드	20.38	19.78	8.43	20.04	17.24	24.55	14.97	3.53	13.58	19.05
노르웨이 ¹⁾	18.23	14.72	8.97	9.97	23.10	18.56	8.71	7.89	10.58	14.71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34.97	36.17	21.49	24.27	39.28	26.43	26.42	31.51	19.86	22.76
슬로바키아 ¹⁾	-	-	-	-	-	-	-	-	-	-
스페인 ¹⁾	20.27	39.38	29.93	19.80	18.93	18.35	16.40	22.94	18.45	10.50
스웨덴	24.22	13.90	12.36	9.18	13.17	12.42	7.07	13.74	11.22	9.83
스위스	7.04	3.49	3.76	2.74	6.45	7.69	7.34	5.37	21.28	-7.97
터키	29.93	33.61	45.29	65.29	109.10	60.04	28.61	23.70	31.98	71.84
영국	17.70	14.64	9.90	14.89	27.55	14.45	16.53	4.72	7.72	9.51
미국	8.34	16.88	11.84	12.62	10.29	14.00	4.60	0.16	11.56	9.91
OECD TOTAL ³⁾	21.08	16.86	14.97	16.29	21.13	19.41	17.63	17.62	15.83	14.85
OECD AMERICA ³⁾	10.41	11.96	11.17	13.14	13.10	22.72	23.87	37.22	26.90	24.76
OECD PACIFIC ³⁾	25.73	17.55	18.49	19.33	17.91	18.46	11.87	9.95	11.57	11.88
OECD EUROPE ³⁾	21.23	17.25	14.61	15.97	22.74	19.08	17.85	16.14	14.98	13.91
EUROPEAN UNION (15) ³⁾	21.80	17.25	13.66	13.96	18.05	14.32	15.74	14.07	12.20	10.39
EUROPEAN UNION (19) ³⁾	21.80	17.25	13.66	13.96	18.05	14.32	15.74	14.07	12.20	10.39

〈OECD 국가의 총조세 세입 변동 추이〉의 계속

(단위: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호주	12.86	13.79	12.11	8.78	2.97	-3.30	2.86	6.93	9.79	9.69
오스트리아	5.07	2.85	4.88	4.25	8.42	8.47	9.72	4.31	5.02	2.42
벨기에	4.05	5.54	3.82	3.85	7.18	5.33	3.93	6.57	6.09	3.68
캐나다	7.75	13.39	7.20	10.03	5.46	2.66	1.31	2.56	6.06	4.94
체코	-	-	-	-	-	-	-	-	11.67	12.60
덴마크 ¹⁾	12.52	6.53	4.72	3.04	0.66	2.53	4.60	3.59	9.47	4.55
핀란드	10.72	3.93	22.66	10.86	9.40	-1.01	-3.49	-0.07	10.80	6.16
프랑스 ¹⁾	6.66	6.45	5.98	7.06	5.70	4.58	2.60	1.43	4.74	3.69
독일	4.61	4.02	4.48	7.72	4.55	21.61	10.05	2.93	5.68	3.92
그리스	25.44	14.64	9.79	15.19	32.51	24.00	19.40	14.52	14.53	16.08
헝가리	-	-	-	-	-	-	17.10	22.86	16.34	22.71
아이슬란드	33.38	31.73	34.05	23.63	14.83	9.38	2.64	-0.31	4.73	5.09
아일랜드	8.42	7.50	12.28	1.72	6.36	5.60	7.30	8.00	11.05	4.44
이탈리아	15.67	9.68	12.88	12.75	13.60	10.43	11.71	7.19	0.75	7.61
일본 ²⁾	7.35	9.31	8.56	8.38	5.76	3.57	-3.55	-0.19	-1.99	4.25
한국	13.95	20.07	19.10	19.05	32.20	18.54	13.84	15.86	19.28	17.75
룩셈부르크	4.20	4.59	7.41	11.60	8.68	3.61	7.76	18.40	8.11	4.66
멕시코	59.43	159.62	94.74	36.71	35.58	28.04	21.23	11.83	10.24	25.00
네덜란드	4.63	6.47	4.19	-0.18	5.85	11.18	3.43	3.32	0.41	1.70
뉴질랜드	21.81	23.25	6.01	14.19	-0.71	-3.77	4.32	8.78	8.56	6.54
노르웨이 ¹⁾	7.85	4.73	3.47	2.35	7.17	5.68	0.78	2.87	8.41	7.57
폴란드	-	-	-	-	-	-	46.00	50.47	37.59	34.15
포르투갈	32.39	10.35	27.66	20.64	18.51	19.43	20.54	0.09	11.30	13.37
슬로바키아 ¹⁾	-	-	-	-	-	-	-	-	-	-
스페인 ¹⁾	21.97	18.81	11.85	18.47	10.68	10.60	11.10	0.48	6.46	5.50
스웨덴	14.66	14.01	7.74	11.96	10.59	2.79	-5.37	-1.42	7.32	10.46
스위스	9.21	2.67	7.35	4.82	7.14	3.62	3.94	4.19	4.44	3.65
터키	65.25	56.99	63.62	84.57	85.40	68.01	85.44	83.20	91.49	103.57
영국	9.00	6.29	11.75	8.03	8.75	1.66	1.27	1.78	7.73	9.52
미국	5.43	10.58	6.96	8.52	8.63	2.32	5.13	5.94	7.78	5.88
OECD TOTAL ³⁾	16.32	17.99	15.97	13.77	13.69	10.21	10.91	10.22	11.86	12.45
OECD AMERICA ³⁾	24.20	61.20	36.30	18.42	16.55	11.01	9.22	6.78	8.03	11.94
OECD PACIFIC ³⁾	13.99	16.60	11.45	12.60	10.06	3.76	4.36	7.85	8.91	9.56
OECD EUROPE ³⁾	15.56	11.46	13.71	13.28	14.00	11.45	12.40	11.16	12.91	13.05
EUROPEAN UNION (15) ³⁾	12.00	8.11	10.14	9.13	10.10	8.72	6.97	4.74	7.30	6.52
EUROPEAN UNION (19) ³⁾	12.00	8.11	10.14	9.13	10.10	8.72	9.86	8.50	9.72	9.29

〈OECD 국가의 총조세 세입 변동 추이〉의 계속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호주	7.63	4.96	8.26	7.98	8.93	1.53	9.42	8.04	8.27	-
오스트리아	6.83	5.35	3.96	3.18	2.97	7.22	0.18	1.12	3.60	2.08
벨기에	2.73	5.90	5.31	3.75	5.05	2.90	3.53	1.84	5.80	4.28
캐나다	5.05	7.66	3.61	7.78	6.59	-0.96	2.60	3.67	6.69	6.35
체코	10.02	8.71	5.84	7.07	3.71	8.41	6.70	7.52	10.60	5.95
덴마크 ¹⁾	5.68	4.81	4.12	5.96	5.07	1.30	1.49	2.28	6.66	7.67
핀란드	6.36	6.73	8.37	4.09	11.15	-0.13	2.97	0.00	3.12	4.34
프랑스 ¹⁾	5.64	3.81	4.10	5.50	3.54	3.12	1.88	2.34	4.78	5.11
독일	-0.39	1.17	3.26	4.29	2.73	-0.51	-0.46	1.15	0.08	1.45
그리스	36.43	-6.37	14.82	9.55	11.79	3.83	10.71	5.72	4.41	-
헝가리	17.96	18.78	17.43	13.75	15.41	12.79	12.13	9.26	9.50	4.05
아이슬란드	11.21	7.67	22.96	15.25	8.26	7.40	4.16	7.46	13.54	19.03
아일랜드	10.48	13.30	13.89	16.18	15.96	4.35	6.11	8.99	11.67	9.38
이탈리아	10.47	7.94	0.54	5.23	5.05	4.05	2.23	4.18	2.33	1.69
일본 ²⁾	2.31	2.28	-3.29	-2.59	3.58	-1.18	-4.69	-0.98	3.26	35.18
한국	16.00	14.55	-1.06	11.68	19.79	9.85	11.46	10.01	4.42	7.86
룩셈부르크	5.91	8.87	6.21	11.01	13.06	3.95	4.76	4.73	4.34	7.73
멕시코	38.02	31.27	14.95	24.97	27.38	7.43	3.79	15.99	11.48	10.29
네덜란드	3.26	6.85	1.35	9.30	6.99	3.10	2.10	0.90	4.05	7.91
뉴질랜드	-0.63	3.14	-1.76	6.10	7.29	4.43	9.82	7.32	9.58	6.98
노르웨이 ¹⁾	9.43	10.07	4.13	9.55	19.23	4.47	0.30	2.15	11.78	13.40
폴란드	25.05	18.84	14.73	3.54	9.07	11.25	6.02	2.64	6.80	-
포르투갈	9.35	8.62	9.48	10.32	7.79	4.72	7.06	2.86	2.51	-
슬로바키아 ¹⁾	-	-	-	0.99	5.97	4.58	9.92	5.37	7.03	5.41
스페인 ¹⁾	5.17	9.63	8.19	10.43	8.82	6.67	8.35	7.42	8.89	11.08
스웨덴	6.52	6.61	5.27	6.33	8.37	-0.73	0.26	4.69	5.13	5.29
스위스	2.39	0.08	6.28	2.51	9.61	0.21	2.08	-1.37	1.75	5.54
터키	114.39	114.02	84.43	63.34	66.32	55.75	37.58	36.70	14.10	16.98
영국	5.21	7.79	9.46	6.44	6.83	3.96	0.84	5.26	7.08	7.17
미국	7.39	7.91	7.32	6.48	7.78	-0.44	-5.17	1.68	6.45	11.71
OECD TOTAL ³⁾	13.30	11.76	9.73	9.67	11.14	5.78	5.27	5.63	6.66	-
OECD AMERICA ³⁾	16.82	15.61	8.63	13.08	13.91	2.01	0.41	7.11	8.20	-
OECD PACIFIC ³⁾	6.33	6.23	0.54	5.79	9.90	3.66	6.50	6.10	6.38	-
OECD EUROPE ³⁾	14.09	12.24	11.55	9.89	10.99	6.64	5.69	5.36	6.50	-
EUROPEAN UNION (15) ³⁾	7.97	6.07	6.55	7.44	7.68	3.19	3.47	3.57	4.96	-
EUROPEAN UNION (19) ³⁾	9.59	7.63	7.57	7.21	7.86	4.47	4.57	4.12	5.70	-

주: 1) 덴마크 1990, 프랑스 1992, 노르웨이 2000, 슬로바키아 1998, 스페인 2000년부터 자본이전은 총세입에서 제외

2) 2005년 일본은 중앙정부의 수치만 나타냄. 3) 단순평균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미시적 처방에 쏠린 부동산 대책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 공급물량 확대, 분양 값 20~30% 인하를 뼈대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수요관리 정책에서 사실상 공급확대 정책으로 돌아선 셈이다. 예상했던 대로 백화점식 집값 대책이다. 하지만 핵심 내용을 추려보면 간단하다. 용적률을 끌어올려 분양 값 인하와 공급물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넘쳐나는 돈을 죄려는 방안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40%로 줄이는 선에 그쳤다.

정부가 여전히 미시적인 처방에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거센 파도를 막으려면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판자 쪽을 아무리 많이 이어 붙여 봤자 소용이 없다. 오히려 파도가 지나간 뒤 처참한 잔해만 남길 뿐이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거시경제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위에 올랐

다. 가계 자금이 주택 담보대출에 묶여 민간소비마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과잉 유동성 해소 방안이다. 집값 폭등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2000년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 집값 폭등을 겪었고, 금리 인상과 적극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연 1%에서 5.25%로 올린 뒤 주택경기가 냉각되고 있지만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실업률은 5년래 최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00조원의 부동산자금이 전국의 집값과 땅값을 뒤흔드는 현 상황을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와 은행 창구지도 정도로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세금 부담을 늘리는 조세정책에 지나치게 치중했기 때문이다. 탈출구 없는 양도세 강화가 거래 자체를 실증시켜 집값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이란 뜻은 좋았지만 투기억제 대책 없이 기업도시 6곳, 혁신도시 10곳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의 땅값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나선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적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 없이 공급확대로 돌아서는 정부가 웬지 불안해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총대를 메게 된 재정경제부 담당자들의 현실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국회 답변에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번이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임기 말 현상이 시작된다. 또 실기하지 않게 범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마련돼야 한다.

(한겨레 2006년 11월15일자 '사설')

집값 잡기 불로소득 환수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기존 부동산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분당 신도시 규모의 신도시를 수도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논란이 일고 있다. 서로 다른 시각과 결론이 대립하고 있지만 집값의 상승은 막아야 한다는 정책 목표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옳은 정책 목표일까?

집값은 건물값과 땅값으로 구성된다. 이 중 건물값은 주로 건축비에 의해 결정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집값이 아니라 땅값을 걱정해야 옳다. 그러나 모두들 ‘집값, 집값’ 하니깐 편의상 우리도 땅값 대신 집값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집값은 이자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1990년대에 비해 지금의 이자율은 반 정도이므로 집값이 2배 정도로 올라가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이자율이 연간 10%일 때 5억원을 빌리는 것과 이자율이 5%일 때 10억원을 빌리는 것을 비교하면, 차입 금액은 두 배의 차이가 나지만 차주의 이자 부담은 동일한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도 왜들 집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할까? 그 이유는 위의 예를 뒤집어 생각하면 된다. 이자율 10% 시절에 5억원을 가진 사람의 이자 수입은 연 5천만원이지만, 이자율이 5%로 하락하면 이자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고 만다. 그

러나 5억원으로 집을 사두면, 이자율 하락에 의해 집값이 10억원으로 올라가면서 5억원이라는 자본이득이 생긴다. 그러니 모두들 부동산에, 그 중에서도 상품성이 좋은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기회를 엿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정상가격과 투기가격의 합으로 형성된다. 머지않아 10억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집이라면 현재 가치 5억원의 집이라고 해도 8억원 정도로 거래될 수 있다. 즉, 정상가격 5억원에 투기가격 3억원이 더해진다.

지금까지는 집값에 미치는 이자율의 영향만 고려했는데 집값에는 그 밖에도 미래의 주거가치와 세금도 작용한다. 예를 들어 현 정권이 교체되면 토지세율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투기가격이 더 커진다. 사회에 투기분위기가 조성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그렇다면 정책 목표는 명백해진다. “집값을 잡자”가 아니라 “불로소득부터 없애자”가 되어야 한다. 불로소득이 없으면 투기도 없고 따라서 투기가격도 존재할 수 없다. 시장에는 실수요만 등장하고 주택 공급도 그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집값은 정상적인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되고 투기에 몰리던 자금은 자연스럽게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간다. 따라서 누가 정권을 잡든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토지불로소득 없애기가 되어야 한다.

토지불로소득을 없애는 가장 좋은 수단은 높은 세율의 토지보유세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금을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의 토지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세금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다른 세금을 감면하면 된다. 토지보유세의 우수성은 모든 경제 교과서에 나오므로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싫어서 안 하거나 하고 싶어도 선거에서 표가 떨어질까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욕심을 버리고 상식과 원론으로 돌아가자.

김윤상

(경북대학교수 ·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경향신문 2006년 10월 30일 ‘기고’)

고소득 자영업 탈세 언제쯤 없어지려나

국세청이 4년 전 발표한 ‘아파트 부자들’의 탈세 행각이 한동안 시중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소득은 한 푼도 없다고 돼 있는 주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26채나 구입했는가 하면, 연 평균 소득을 825만원으로 신고하고 역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 10채를 구입한 의사·변호사 부부도 있었다. 탈세 행위를 적발한 세무당국의 노고를 칭찬하고 싶기도 하다. “도대체 우리나라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기에...”라며 분노와 허탈감이 휩싸였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옛그제 국세청이 발표한 의사·변호사·유형음식점 주인 등 고소득 자영업자 362명의 탈세 실태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이들은 3

년간 1조 5,400억원을 벌였으나 신고한 소득은 그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 세금을 떼어먹은 것이다. 특히 서울 어느 병원장의 솜씨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는 비보험분야의 치료비를 모두 현금으로 받고,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연 1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102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50억원을 추징당한 뒤 고발됐다.

탈세 가능성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평소에도 중점적으로 감시관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가차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세무당국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연히 납부했어야 할 세금에다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추징하는 정도라면 “재수없이 걸리면 몇 푼 더 낸다”는 그릇된 인식을 계속 심어줄 뿐이다. 당연히 가산세를 징벌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한편,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 조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탈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재산증식 정도라면 탈세가 적발됐을 때 치를 대가는 ‘빠가망신’의 수준이 돼야 한다는 얘기도. 탈세를 저지른 의사·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탈세에 관대한 나라도 많지 않다. “들키는 사람이 바보”라거나 “들켜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관념이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것이다. 탈세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을 가로챌다는 점에서 실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부

분의 선진국들이 탈세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 2006년 11월 7일 '사설')

국민연금 개혁 미룰 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3년째 잠을 자고 있다. 여야 정당의 정치적 계산이 발목을 잡은 까닭이다.

물론 국민연금 개혁은 어려운 과제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사회보장정책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기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을 할라치면 그 과정에서 논란도 많고 개혁 뒤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찮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과 관련되는 쟁점도 만만찮은 과제들이다. 재정 안정화 문제 말고도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각지대 해소, 전체 국민 계층 사이에 비용 부담과 연금급여 혜택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형평성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개혁이 어렵다고 해서 이 과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는 첫째 이유는 이 제도가 5천만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라.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니 소득은 없고,

부양해 줄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니,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개개인이 금전저축이나 재산을 장만하여 노후를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젊었을 때 여유가 없어서 저축을 못하거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실업·질병·사고·장애·가족사망·사업 실패 등으로 기왕의 저축이나 재산을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국민연금은 이런 위험과 불안을 지니고 있는 인간 생활상의 취약성에 대비하여 국가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만들어 놓은 소득보장제도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사회 안전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재정문제는 점점 더 악화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출발했다. 이런 체계가 그대로 갈 경우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불안정하게 되어 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이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연금급여를 받는 노인 인구증이 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 수준으로 현재 정도의 연금급여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후세대가 보험료를 훨씬 더 부담하든가, 아니면 노인층의 연금액을 크게 줄여야 한다. 어

느 쪽이든 그 영향은 심각하다. 잘못하면 국민연금 제도가 통째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재정 안정화를 고려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한다면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 등 근본 개혁안은 지금부터 신중하게 연구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도 된다. 근본 개혁안은 자칫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두고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낫다.

이런 근본 개혁안을 정치적으로 줄속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재정 안정화 방안과 같이 시급한 개혁과제를 정치적으로 계산하여 뒤로 미루어서도 안 된다. 국회는 시급한 과제인 재정안정화 방안과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할 개혁과제를 나누어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살려야 한다.

차홍봉(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겨레신문 2006년 11월 9일 '기고'〉

안정적 주택공급 확산시켜야

정부가 또다시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주택 가격 안정도 공짜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라는 희생을 수반한다.

문제는 과연 정부가 이런 희생을 감수할 각오를 갖고 있는나이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는 오히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초연해야 한다.

수도권의 높은 집값은 과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낮은 집값은 수도권 과밀을 더욱 조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집값만은 잡아야 말겠다는 선언을 하려면 수도권 과밀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주택가격 안정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인 저층·저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주택가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쾌적한 환경을 원한다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낮은 가격을 원한다면 쾌적성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정권 운명을 결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면 고층·고밀을 감내하면서 쾌적성을 희생시킬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어느 곳을 희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다.

도시 중심지역이나 외곽지역 모두 저층·저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 역시 두 마리 토끼를 공짜로 잡겠다는 지나친 욕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외곽에 고층·고밀의 신

도시를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성 시가지에 고층·고밀의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강남 재건축을 아예 선택 메뉴에서 제외해 버리면, 저층·저밀의 기성 시가지와 고층·고밀의 신도시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보다는 고층·고밀의 기성 시가지와 저층·저밀의 신도시가 선택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훨씬 더 바람직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강남의 재건축 억제도 결코 공짜는 아니며 신도시의 고밀화를 초래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주택가격에 대한 참여정부의 집착은 유독 신규 분양주택 공급원가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기실 주택시장은 대부분 중고주택으로 구성돼 있고 신규 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따라서 신규 주택만 문제삼아 아무리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전체 주택재고 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가격의 한 측면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공급원가를 낮추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이 희소해 이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높아지면 시장가격도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공급가격을 낮출수록 오히려 시장가격과 차이만 커져 신규 분양주택 경쟁률을 높이고 이러한 경쟁을 뚫고 온 좋게 주택을 분양

받은 최초 소비자에게 시세차익을 더욱 크게 몰아줄 뿐이다.

주택가격은 공급원가를 낮춘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다.

공급원가보다는 공급 물량에 초점을 맞춰 주택의 희소성을 줄여야만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이른바 세금폭탄 등 그 동안 참여정부 가 주택수요를 겨냥해 추진해 왔던 정책들은 그것이 앞으로 더욱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택재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매물을 유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고주택을 재배분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정된 주택재고의 파이를 나누는 일보다 신규 공급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너무 빨리 많이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압축성장을 통해 국민 소득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단기간에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이미 20년 전에 지은 중고주택마저도 오늘날 높아지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주택은 여전히 희소해 분양신청 때마다 소비자들끼리 줄을 서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이번에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앞으로 더 좋은 주택이 계속 많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간헐적으로 발표되는 공급대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

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길만이 그러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최막중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
〈매일경제 2006년 11월 13일 '테마진단'〉

통합 사회보험제도 경영효율성이 관건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통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디자인 없이, 그때 그때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되었으며, 도입 후에도 각기 별도의 관리기구에 의해서 고립·분산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각 사회보험제도에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점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200만가구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국민연금제도 역시 450만명 정도 소득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저조한 소득파악률에 따른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특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시켜 연금제도에 가입을 꺼리는 다수의 제도 거부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비효율적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각 보험제 기간 연계가 미흡해 업무중복에 따른 관리운영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가입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근로장려세제(EITC)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안정적인 정착은 커녕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사회보험제도의 부과·징수업무가 통합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변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야기하게 마련이므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신설하여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건강보험제도 체납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체납가구가 발생하면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면접을 실시하여 체납유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이나 면제, 혹은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대납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이 신설

될 경우에는 징수율에 집착하여 경제적 이유로 체납을 하게 되는 가구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징수공단으로 부과·징수업무가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체납가구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각 사회보험관리공단 업무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부과 징수 업무가 징수공단으로 이관할 경우, 사회보험관리공단의 기능이 서비스 중심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에는 노후생활 설계사로서 연금수급자를 상담하고 지도하는 기능, 건강보험관리공단은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 컨설팅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 관리 및 예방업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사회보험관리공단의 서비스 기능은 지금까지 절실하게 필요하였으나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온 사안이었다.

따라서 이번 부과·징수업무의 통합을 계기로 보험 본연의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여야 한다.

셋째, 부과·징수 업무가 통합된다고 해서 현재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기존 인력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신분변동에 따른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관리공단 기능 서비스 중심체제로의 재편은 현재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의 이해와 동의를 전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의 통합을 경영 효율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제대로 된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인력 충원과 재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의 부과·징수 통합은 분명히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 부과·징수의 통합은 첫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둘째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형평성 있는 조세인프라스트럭처 구축, 그리고 셋째 보험행정의 효율화라는 목표 아래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성숙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매일경제 2006년 11월 14일 '기고'〉

부동산정책, 시장을 거스르지 말라

옛 소련에서는 새 승용차 값이 2,000루블, 5년을 사용한 중고차 값은 1만 루블이었다. 새 차 값은 당 간부 등 승용차 배급권을 가진 특권자에게 국가에서 공급하는 가격이다. 중고차 값은 이들이 5년 쓴 차가 암시장에 흘러나와 거래되는 가격이다. 새 차와 중고차의 차익은 분양 받은 자가 챙기고, 비용은 중고차를 사거나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부담하는 셈이다.

사회주의 국가도 이렇게 시장 가격을

좌우할 수 없다.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한국 정부는 주택에 관한 한 공급 가격 통제의 철저한 신봉자다. 경제부총리는 인천 검단신도시와 경기 파주신도시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면서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요구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시중의 아파트 값은 폭등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 같은 지역에서의 아파트 청약 당첨은 복권만큼 어렵고 분양권에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시장과 괴리된 분양가 통제는 새로운 이익 집단과 피해 집단을 만든다. 정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채권입찰, 분양권 전매 금지, 의무보유기간 등 온갖 거래 제약 장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시장 기능의 복구는 외면하고 재정 지원이나 행정력 동원만 고안하니 정책 의도를 알 수 없다.

신도시 기반시설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자문해 보기 바란다. 검단과 파주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돌아갈 이익을 왜 다른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수도권 낙후지역 거주자의 상대적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하나. 한쪽의 재건축 단지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고, 다른 신도시엔 재정지원을 하는 차별을 정부가 과연 해야 하나.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개발 비용을 올리면서 4년 뒤 등장할 변두리 지역은 분양가를 낮춰 주택 가격을 안정시켰다면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믿을 것인가.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의 극단을 보여 준다. 원가 초과분을 일절 인정하지 않겠다면 이는 노동과 원자재 비용을 제외한 모든 것을 '착취(surplus)'로 보는 마르크스 이론을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

자본주의 시장 기업은 자본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생산하고 위험(risk)을 감수한다. 그 대가로 이윤(profit)을 얻고 기업이 과거에 쌓은 평가(상표)나 행운에 따라 특수이익, 곧 지대(rent)를 누린다. 이를 위해 기업은 경쟁하고, 경쟁적 시장과정을 통해 크게 자라기도 하고 생존하기 위해 허덕이기도 하며 도태되기도 한다.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면 잉여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회사마다 다를 것이다. 잉여를 불허하면 실적, 즉 능력을 쌓은 기업부터 차별받는다.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과 위험의 대가가 없는 시장에 누가 머물겠는가. 생산성을 키워 원가를 낮춘 기업, 질 좋은 주택을 지어 경쟁해 보겠다는 기업이 줄어들고, 장래에는 이런 잠재력을 가진 기업가와 경영자 및 기술력과 자원까지 주택시장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서민에게 더 비싸고 질 나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게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서민 주거 공급을 위함이라면 세금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엽가의 국민주택을 지어 특정 계층에만 수혜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서울 강남 집부자의 불로 이득을 흡수하기 위함이라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높이는 일도 옳다. 주택 가격 안정이 목적이면 수요가 물리는 지역의 주택공급 촉진 이상의 대책이

있을 수 없다. 강남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 주택을 마음껏 팔고 신축과 재개발이 장려되도록 조세 기타 제도를 개편함이 가장 유효한 대책이다.

김영봉(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동아일보 2006년 11월 14일 '시론'〉

재정포럼

2006년 11월호 통권 제125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위원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6년 11월 15일 발행 / 제1권 제1호(통권 제12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pub@kipf.re.kr
- 주소: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